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 화장품편 -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제1장 서론	1
1. 분석목적	3
2. 분석대상 품목과 범위	3
3. 분석방법	4
제2장 중국의 화장품 시장개요	5
1. 시장동향	7
2. 중국에서 외국화장품	10
3. 온라인 화장품 시장	13
4. 소비성향	14
5. 중국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17
6.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상표출원 동향	24
7. 중국 화장품 시장 요약	28
제3장 중국의 위조 화장품 동향	31
1. 위조 화장품 관련 판결문 통계분석	33
2. 위조 화장품 언론 동향	46
3. 중국의 위조화장품 시장	61
제4장 위조 화장품 생산과 유통경로	63
1. 생산과 유통경로 파악을 위한 사례	65
2. 분석	81
3. 판매	91

제5장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단속 대응	93
1. 선행요건	95
2. 위조 화장품 단속	98
3. 행정단속 대응 시 필요한 서류	101
 제6장 결론	 105
 붙임자료	 111
1. 중국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불합격한 화장품기업 명단	113
2. 알리바바 발표 100대 위조품 판매기업 중, 위조 화장품관련 판매기업 명단 ..	116
3. 판결문 한글 번역문	119

요 약 문

Ⅰ 분석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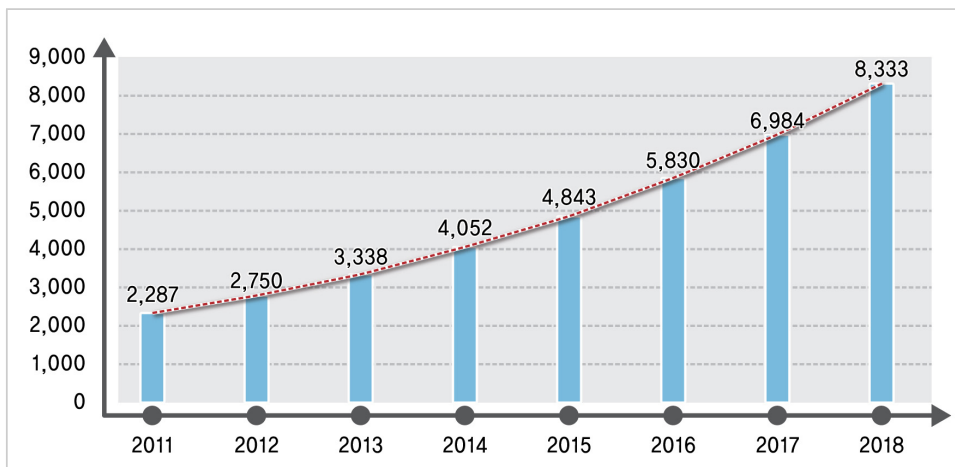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도 증가하게 되었지만, 우리기업들이 위조 화장품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된 이유는 위조 화장품의 유통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이에 대해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는 등 정보 부족이었다.

이번 중국 위조 화장품 유통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였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화장품 기업에 대한 가이드는 물론, 위조 화장품 단속을 위한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중국의 화장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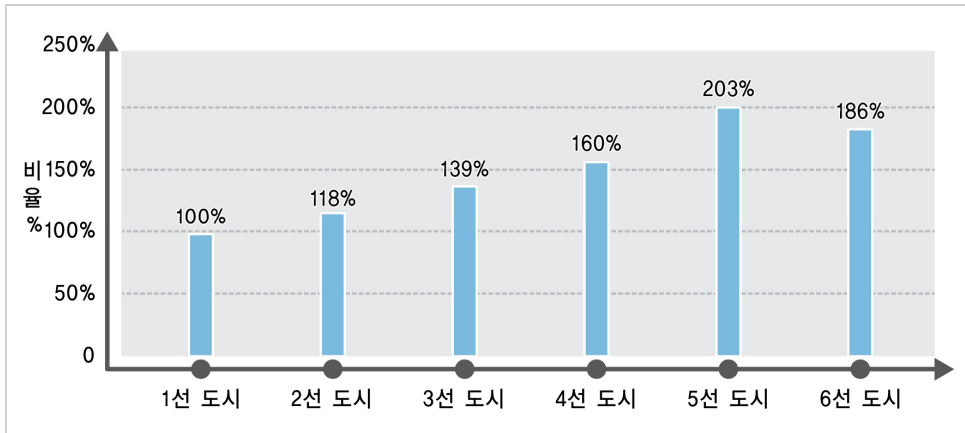
중국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21% 성장하여 증가율 부분에서는 세계1위가 되었고, 시장 규모면에서는 2016년도 말 5,830억 위안(한화 약102조원)으로 세계 2위가 되었다.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변화(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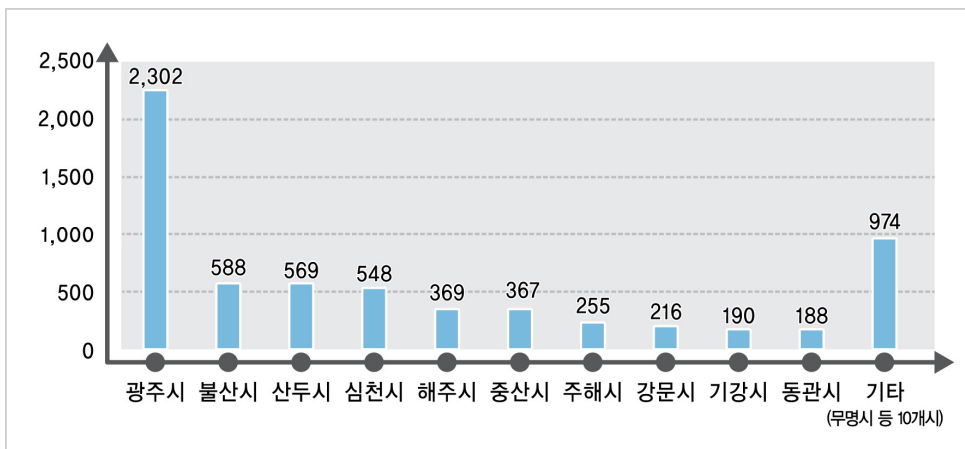
중국 전역에서 화장품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5선(线) 이하 소도시의 화장품 소비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각 도시별 화장품 소비증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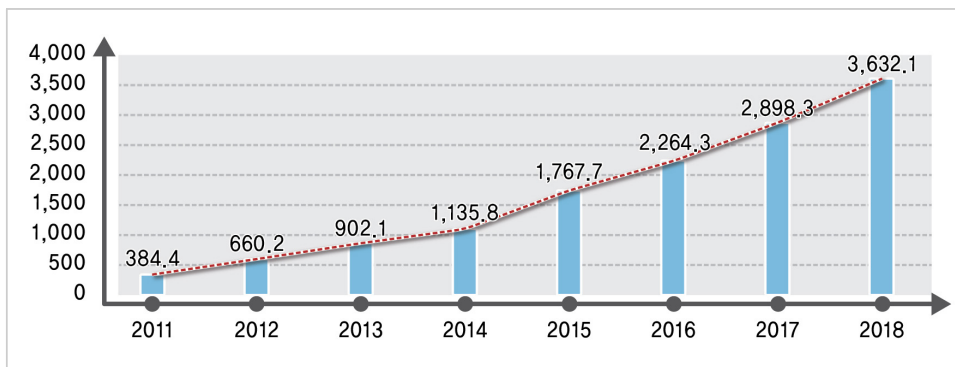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화장품 도매시장은 광둥성, 산둥성, 호북성, 흑룡강성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가장 큰 화장품 도매시장은 광둥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광둥성에 집중되어 있다.

광둥성 소재 화장품기업 숫자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선행조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57%가 외국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외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티몰, 쥘메이, 징둥이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구매비율 중 이들 3개의 쇼핑몰에서 80%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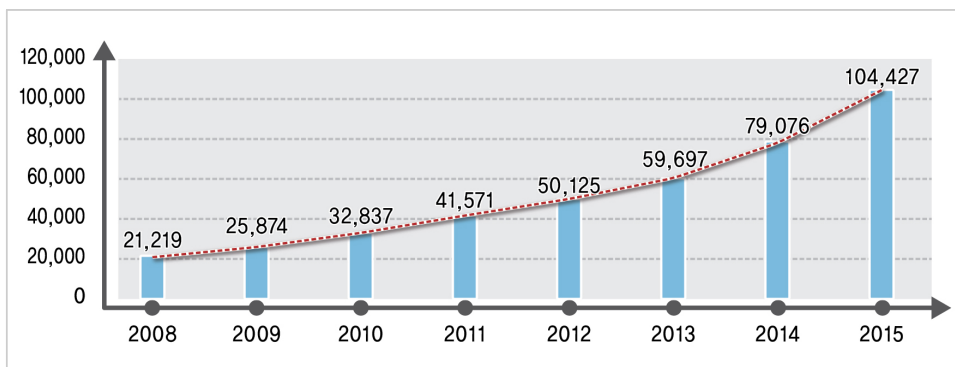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거래규모 추이(억 위안)



중국에서 화장품 상표의 출원 동향

2015년도 중국의 상표 출원은 약 280만 건으로 그 중 화장품 관련 상표 출원은 약 10만 건이다.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상표 출원은 타 업종에 비해 증가율이 높는데, 이는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표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중국화장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



주요 외국 화장품들의 상표는 중문과 영문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우리기업들도 중국에 상표출원은 필수적이다.

Ⅰ 위조 화장품 관련된 판결문 통계분석

최근 5년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민, 형사별, 법원별, 생산지별, 판매지별로 통계를 도출하였다. 이번 통계에서 민사사건은 1,350건이며 형사사건은 159건이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는 광둥성이다. 각 사건의 판매지 통계를 살펴본바, 광둥성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이 호북성과 절강성으로 유통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사건의 위조 화장품 생산지 별 분포

생산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광둥(广东)	32	18	4	3	4	61
강소(江苏)	1	2	1	1	0	5
절강(浙江)	0	1	1	2	0	4

형사사건의 위조 화장품 생산지별 분포

생산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광둥(广东)	0	0	15	40	18	73
상해(上海)	0	0	1	4	0	5
절강(浙江)	1	0	1	0	2	4

민사사건의 위조 화장품 판매지 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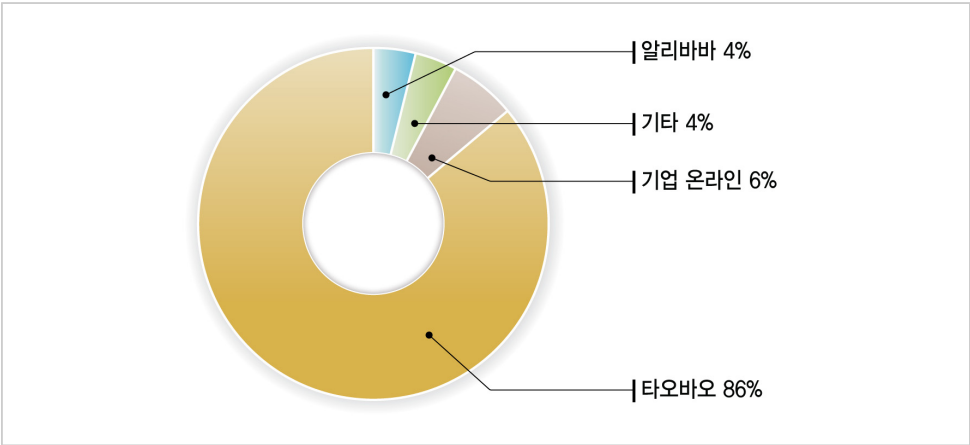
판매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호북(湖北)	0	171	91	11	32	305
절강(浙江)	2	31	86	80	29	228
광둥(广东)	41	26	49	4	7	127

형사사건의 위조 화장품 판매지 별 분포

판매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절강(浙江)	2	2	1	4	1	10
호북(湖北)	0	1	0	1	3	5
강소(江苏)	1	1	1	0	2	5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위조 화장품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진원지는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이다.

온라인 쇼핑몰별, 민사사건 점유율 비교



위조 화장품 동향

최근 중국 내에서 화장품 단속과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중국 식약품 관리감독국은 화장품 관련 기준에 미달한 기업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들 화장품 기업들은 위조 화장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된 기업들로 보여진다.

화장품 기준에 미달된 기업명단	
기업명칭	감독 검사결과
광주 백개려 상업유한공사 (广州百凯丽商业有限公司)	미 허가된 특수화장품 판매 혐의
(광주 오곡생물 과학유한공사 (广州澳谷生物科技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혐의
광주시 희천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喜倩化妆品有限公司)	품질이 떨어지는 화장품 및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화장품 판매혐의
광주성품무역유한공사 (广州成沣贸易有限公司)	미 허가된 수입화장품을 판매한 혐의
광주건백화장품유한공사 (广州健柏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혐의

또한 감소성 공안은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위조 화장품을 단속하였으며, 위조 화장품의 가격은 약 2억 위안(한화 약 350억원)이었다.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면세점”이라는 명칭으로 외국 브랜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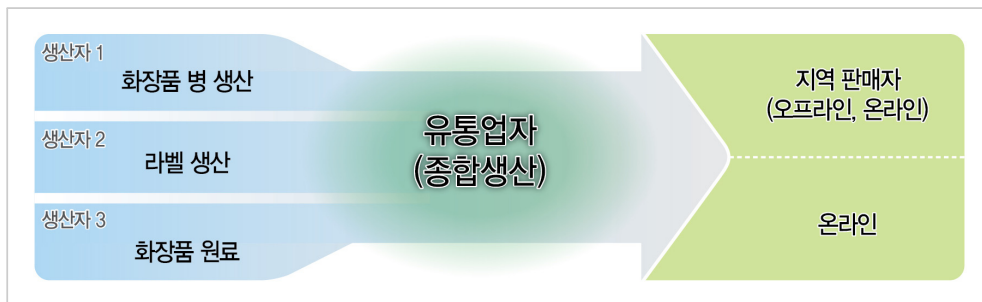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사기 홈페이지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회사는 우리나라 화장품 게리송과 더페이스샵의 화장품을 모방하여 광고하고 있었다.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가 판매하는 마유크림



Ⅰ 유통경로 파악을 위한 사례와 분석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조 화장품의 생산은 화장품 병, 라벨, 화장품 원료 등으로 나눠서 각 품목을 생산하거나 몇 개의 품목을 한군데서 생산해서 유통업 자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품목을 공급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형태이다. 위조 화장품이 생산되면 생산한 자는 그 물품을 지역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일반적인 생산과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살펴본 사례 중 대부분 생산인력은 현지인과 지인들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유통업자는 형제 및 부부관계 또는 지인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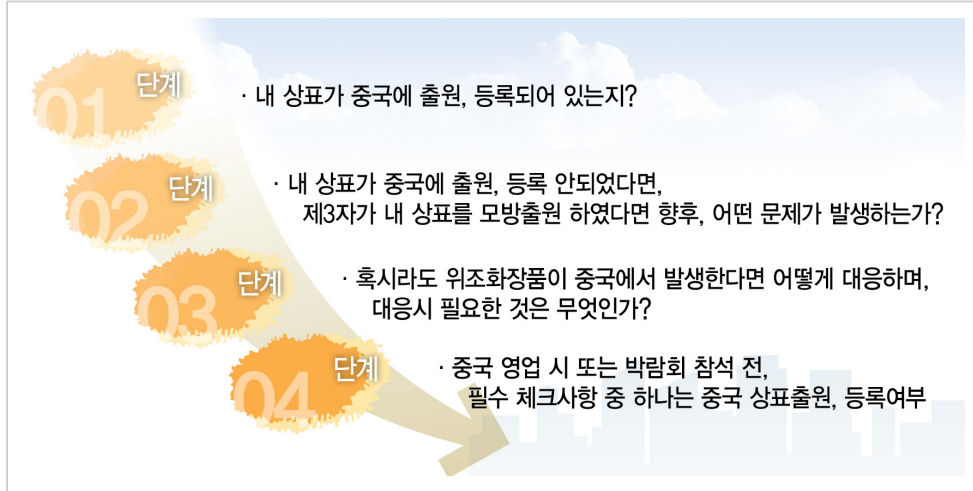
1개 생산 공장에서도 여러 개 브랜드 화장품을 위조생산하며, 광둥성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위조 화장품은 2선(线) 내지 5선(线) 지역에 있는 판매상들을 통해 유통되며,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중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위조 화장품의 생산, 유통업자는 여러 개 창고에 분산해서 보관하며 때로는 정품과 위조품을 섞어 놓아 눈가림하며, 대금은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해서 증거를 없앤다.

Ⅰ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중국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에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체크가 필요하다. 단속 기관에 위조 화장품 단속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 전에 체크사항



위조 화장품을 발견한 경우는 조사원의 정식조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단속기관에 단속을 요청한다. 행정 단속이후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의 침해링크에 대해서는 링크삭제를 요청한다.

위조 화장품 단속 및 해당 침해링크 삭제절차



Ⅰ 결론

첫 번째,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응하는 사전예방으로 관련 상표 출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중소기업들은 내부에 상표를 담당할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자사의 화장품 관련 상표가 도용당하고 있는지, 위조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협회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중국에 관련 기업들의 상표가 출원 혹은 등록되었는지, 중국에서 상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련 기업들의 화장품이 위조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에게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최근 위조 화장품에 대한 언론 동향과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 형태를 살펴본바, 중국에서 화장품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전이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의 발견과 단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이 발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관련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표 문제 대응, 위조 화장품의 조사와 행정단속,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위조 화장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정부와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우리기업들이 영업을 위해 중국 업체 또는 대리상과 접촉 시에는, 사전에 그들이 화장품 관련 상표권 분쟁이나 민사소송 등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대리상일 경우, 위조 화장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협회는 중국의 화장품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서 내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중국에서 발생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상표나 상품이 도용당할 때,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비밀로 그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동종업종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유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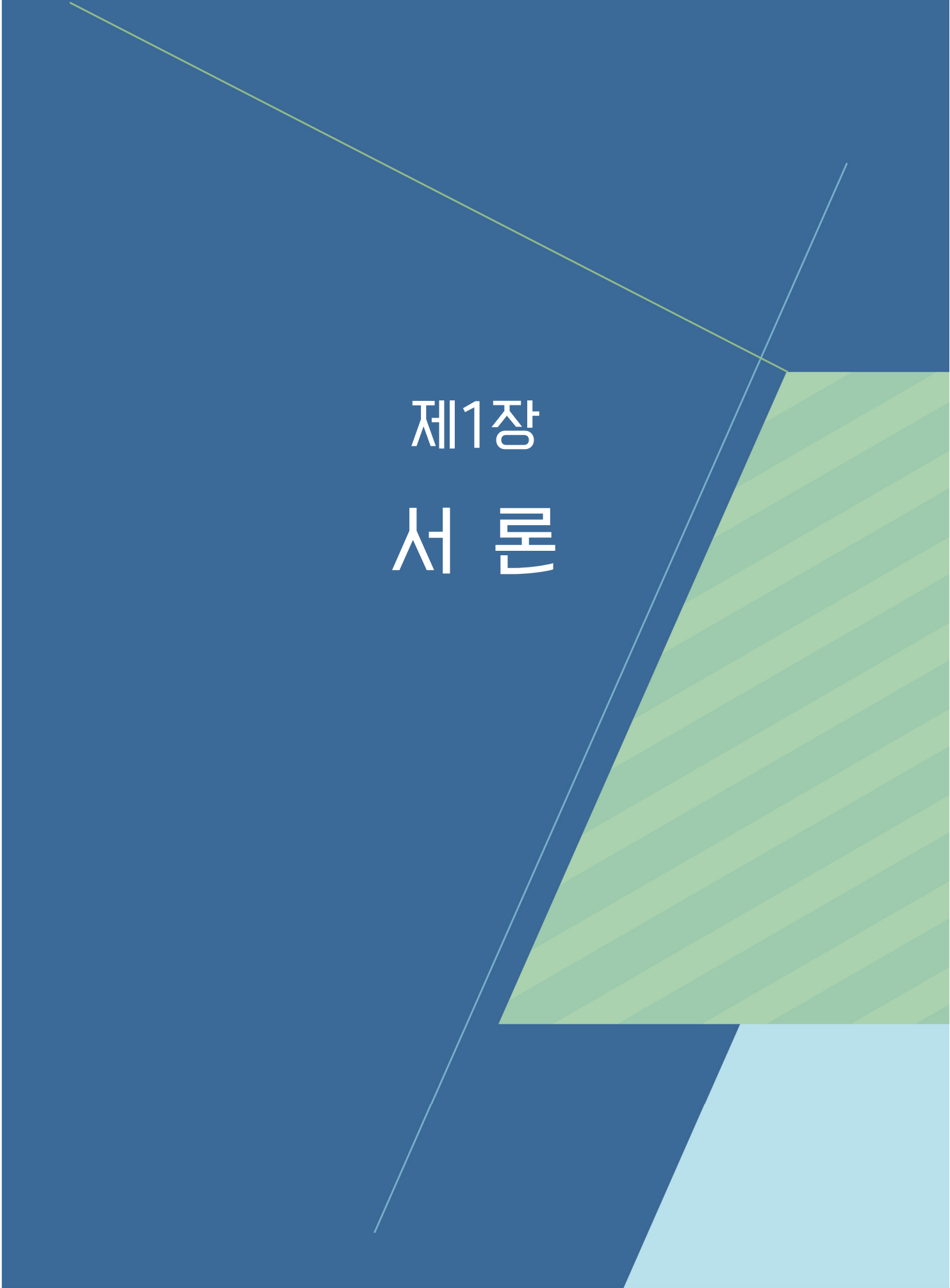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기업과 정부, 기업과 협회 간에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최근 사드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관련 단속기관이나 해당 부서도 우리기업들에 대해 이전보다는 비우호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협회는 해당 기관과 부서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위조 화장품의 생산지는 특히 광둥성이기 때문에 광둥성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위조 화장품의 증가와도 비례한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 문제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나아가 위조 화장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기업이 입는 손해는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대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정부와 관련 협회에서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분석목적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정보의 부족이었고, 정보의 부족은 대응하는데 한계를 초래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의 판매자는 누구에게 상품을 공급받고, 그 공급자는 다시 어디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지, 즉 위조 화장품의 유통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이에 대해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었다. 이는 중국에서 우리기업들이 위조 화장품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분석은 중국에서 화장품 영업을 하는 우리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위조 화장품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보호를 위한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였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화장품 기업에 대한 가이드는 물론, 위조 화장품 단속을 위한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분석대상 품목과 범위

중국 위조 화장품 유통 분석을 위한 품목은 화장품에 한정한다.

첫 번째, 분석 범위는 먼저 중국의 화장품 시장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국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에 따라 위조 화장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문헌과 판례, 그리고 중국 위조 화장품 조사전문 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위조 화장품의 판매지역,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위조 화장품에 대응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향후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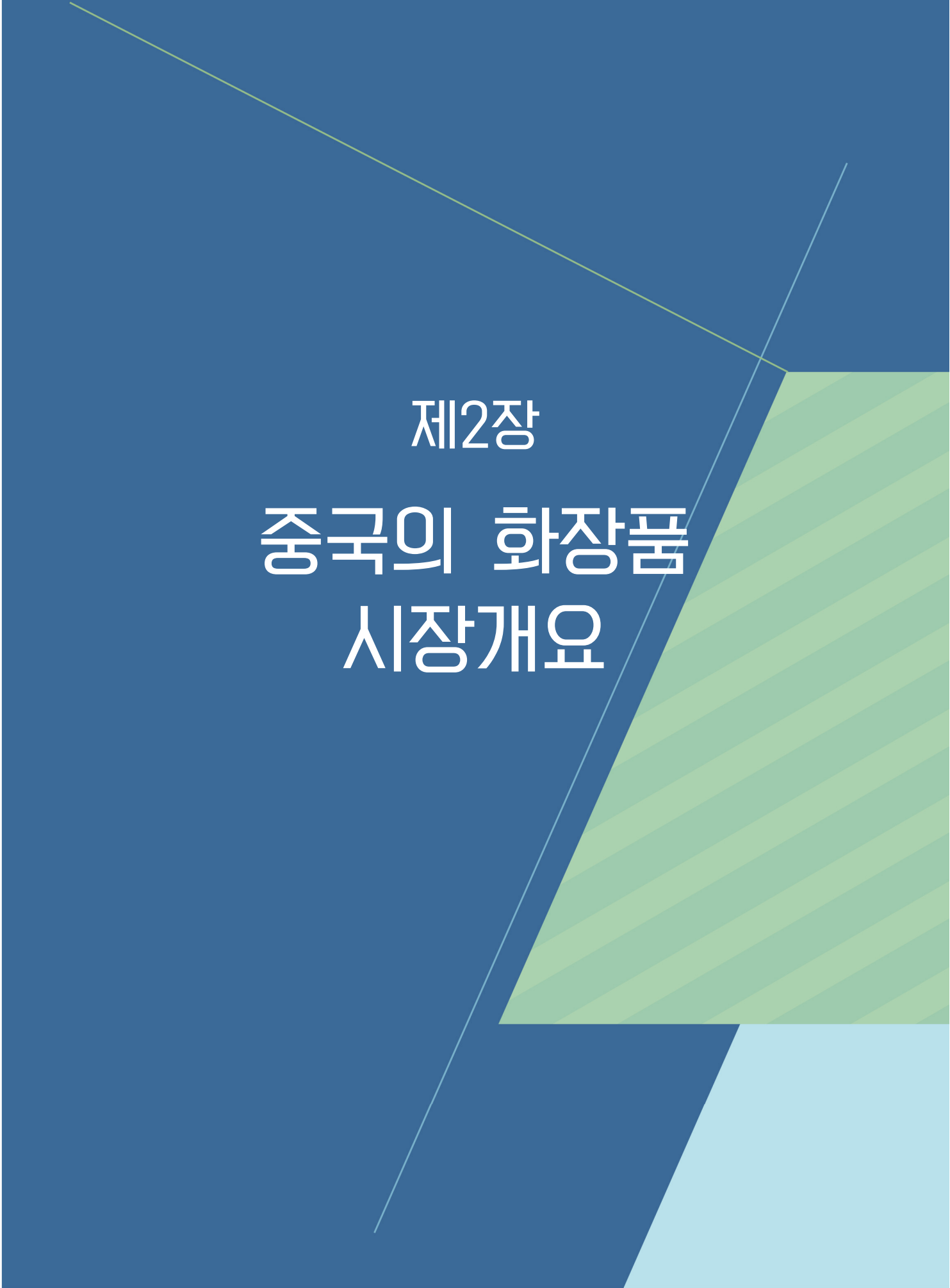
3. 분석방법

본 유통 분석을 위해, 먼저 중국에서 발간된 화장품업계 관련 자료나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8월 코트라 중국 IP DESK에서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중국 판례를 통해 분석을 하고 중국에서의 위조 화장품 유통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 판례 통계분석은 중국 사무소 IP HOUSE와 협력해서 분석하였는데,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관련 민, 형사사건 판결문을 법원별로, 위조 화장품 생산지와 판매지 별로 통계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위조 화장품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참고로 이번 통계분석은 중국 사무소 IP HOUSE에 내부에 구축된 중국 판결문만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판결문이 공개 안 되었거나 또는 IP HOUSE에 저장되지 아니한 판결문은 본 통계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세 번째, 한국에 소재한 우리기업들과 중국에 소재한 우리기업 및 중국 위조 화장품 조사전문 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국에서 기 단속하였던 자료와 중국에서 발생한 위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위조 화장품 유통 분석 발간을 위해 관련 중국 자료는 직접 번역하였고, 붙임에 있는 위조 화장품 관련 중국 판결문은 중국재판서망(中国裁判文书网<http://wenshu.court.gov.cn>)에서 수집하여 번역하였다.



제2장

중국의 화장품 시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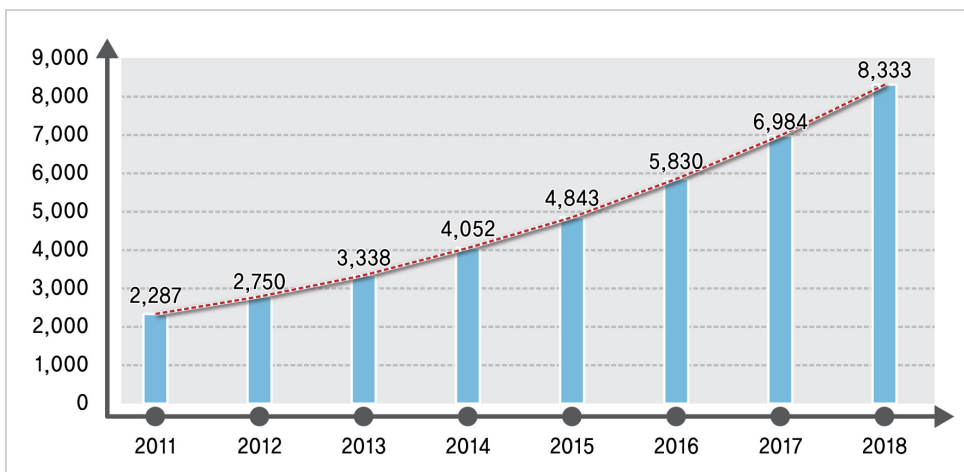
제2장 중국의 화장품 시장개요

1. 시장동향

가. 화장품 시장규모¹⁾²⁾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21% 성장하여 증가율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³⁾ 중국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6년도 말에 5,830억 위안(한화 약 102조원)에 달하였고, 세계 2위의 화장품시장이 되었다.

그림1. 중국화장품 소비시장 규모변화(단위: 억 위안)



1) <http://www.chyxx.com/industry/201510/349208.html>

2) <http://www.chyxx.com/industry/201605/412590.html>

3) 2016年中国化妆品行业现状及未来发展趋势及行业发展前景分析, 中国行业信息

나. 지역별 화장품 소비현황⁴⁾

중국 지역별로 화장품의 소비성장 속도가 다르다. 서장(西藏), 내몽고(内蒙), 운남(云南), 복건(福建), 길림(吉林), 요녕(辽宁), 중경(重庆), 절강(浙江) 지역은 스킨케어 제품의 소비 성장이 색조화장품의 소비 성장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서(广西), 강서(江西), 흑룡강(黑龙江), 청해(青海), 하북(河北), 천진(天津) 지역은 색조화장품의 소비 성장이 스킨케어 제품의 소비 성장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시들에서 화장품 소비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도시 소비액 증가지수에서 5선(线)도시의 화장품 소비 증가지수는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즉, 소도시로 갈수록 화장품 소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 각 도시별 화장품 소비증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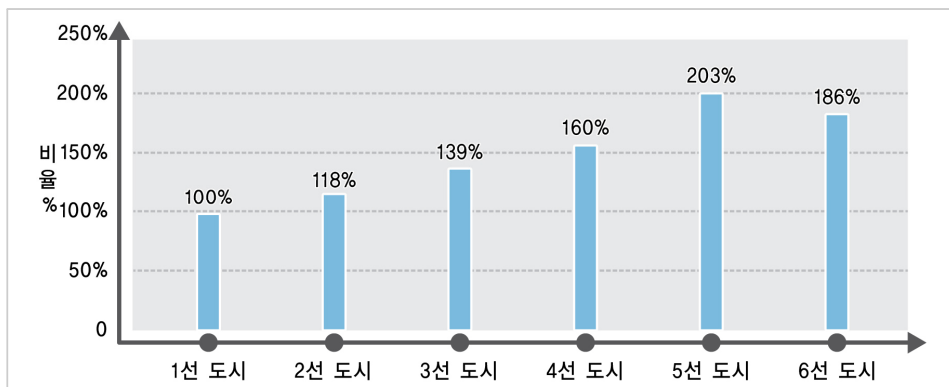


표1. 1선(线) 내지 6선(线) 도시 구분⁵⁾

구분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5선 도시	6선 도시
도시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주(广州), 심천(深圳), 천진(天津)	항주(杭州), 서안(西安), 장춘(长春), 남경(南京), 중경(重庆), 청도(青岛), 심양(沈阳), 하얼빈(哈尔滨) 등	이우(义乌), 길림(吉林), 귀양(贵阳), 낙양(洛阳), 염성(盐城), 우루무치(乌鲁木齐) 등	단둥(丹东), 평정산(平顶山), 계림(桂林), 산두(汕头) 등	라싸(拉萨), 단양(丹阳) 등	그 외 현(县)

4) <http://www.ebrun.com/20170615/235542.shtml>

5) <http://www.mafengwo.cn/travel-news/542672.html>

다. 지역별 화장품 시장 현황

중국의 주요 화장품 도매시장⁶⁾은 남쪽으로는 광둥성, 운남성, 동쪽으로는 산둥성, 내륙으로는 호북성, 북쪽으로는 흑룡강성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화장품 관련 기업은 광둥성에 집중하고 있다.⁷⁾

표2. 주요화장품 도매시장 지역과 명칭

순 번	지 역	시 장 명 칭
1	광둥성	광주 백운 도매시장
2	절강성	이우시장
3	안휘성	안휘 합비장강 도매시장, 안휘 대시장
4	요녕성	심양 오애도매시장
5	하북성	석가장 남산3가 도매시장
6	호남성	장사 고교 도매시장
7	호북성	무한 정가도매시장
8	하남성	정주 중육세화성 도매시장
9	산둥성	임근 소상공 도매시장
10	섬서성	서안국향 도매시장
11	사천성	성도화화지 도매시장
12	운남성	신화품 도매시장
13	흑룡강성	하얼빈 남극시장, 톈룽가 도매시장
14	광서성	남영 대화평 도매시장
15	귀주성	귀양 삼교 도매시장
16	강소성	남경 금교 도매시장, 부자묘 도매시장
17	강서성	남창홍성 대시장
18	감숙성	난주 이우상모성, 지중해 도매시장

그림3. 중국의 화장품 도매시장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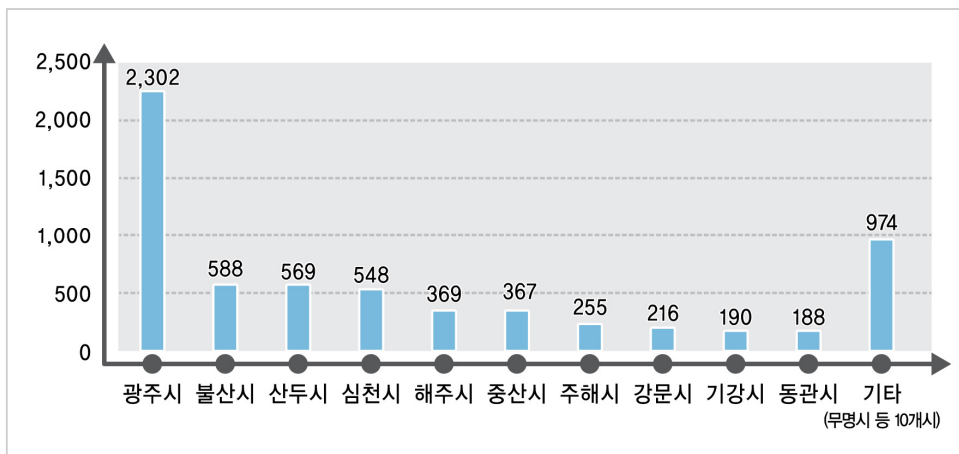
6) 중국 위조 상품 단속 전문사무소 자료

7) 中国产品网, <http://guangzhou.pe168.com/sort/240/>

라. 광둥성에 화장품 관련 기업 집중

화장품 관련 기업은 광둥성에 집중하고 있는데⁸⁾, 이곳에 소재하는 화장품 관련 기업은 약 6,566개이다. 그중 광둥성 광주시에 2,302개, 그 다음은 불산시(佛山市)에 588개, 산두시(汕头市)에 569개, 심천시에 548개로, 이들 4개 시에 존재하는 화장품 관련기업이 61%를 차지한다.

그림4. 광둥성 소재 화장품기업 숫자



2. 중국에서 외국화장품

가. 화장품 수입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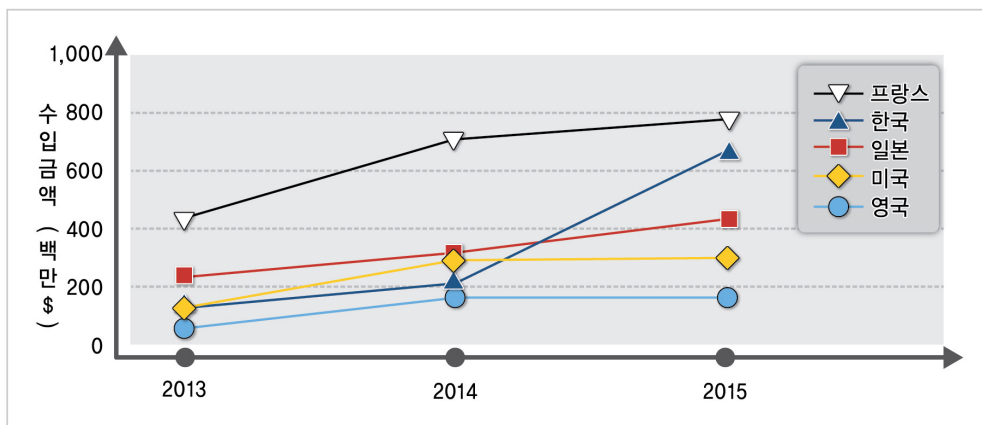
중국 소비자들의 외국 화장품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의 기초화장품 수입금액을 보면, 프랑스 화장품이 제일 많이 수입되었고,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입은 2014년 4위에서 2015년 2위로 상승하였다.

8) 中国产品网, <http://guangzhou.pe168.com/sort/240/>

표3. 연도별 중국의 화장품 수입금액⁹⁾, 단위: 백만\$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2013년	431	127	231	128	56
2014년	708	205	314	289	162
2015년	776	667	438	301	165

그림5. 중국의 국가별 기초화장품류 수입금액 추이(2013~2015)



나. 외국 화장품 선호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에 대해 선행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57%가 외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화장품에 비해 외국 화장품을 좀 더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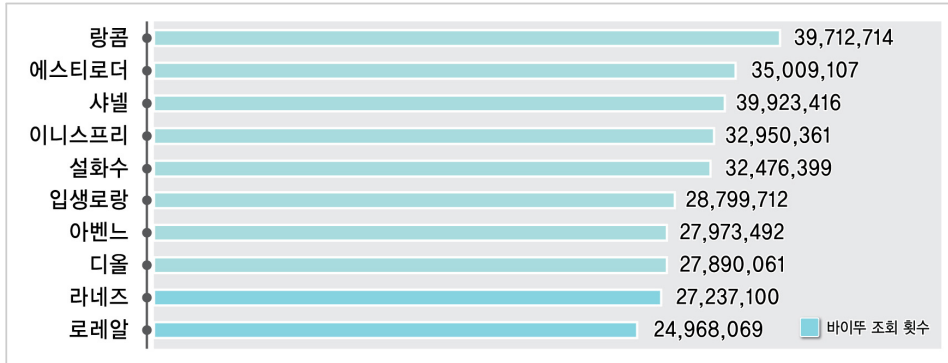
2016년 바이두 검색 횟수를 가지고 외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조사한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장품 Top10 브랜드 중, 랑콤과 에스티로더는 이미 2014년부터 연속 3년간 1위와 2위를 지켰다.¹¹⁾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Top 10 화장품 브랜드는 모두다 외국 브랜드였다.

9) Global Trade Atlas,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경쟁력조사

10) 中国化妆品市场国外化妆品占据主导地位原因浅析/http://www.dooland.com/magazine/article_733205.html/2015년 8월 28일

11) 2016년 Top10 화장품 브랜드 순위, 哪个国货受关注/www.ebrun.com/20170207/213260.shtml/2017년 2월 7일

그림6. 바이두 검색결과 외국 화장품 선호도



다. 지역별 외국 화장품 선호

징둥(京东)이 2017년 발표한 ‘2017년도 화장품소비자 보고’¹²⁾에 따르면, 중국소비자들의 외국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인기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는 외국 화장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북경, 광둥, 상해, 강소, 사천 등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외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이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징둥(京东)에서 외국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 외국브랜드 화장품 소비 Top10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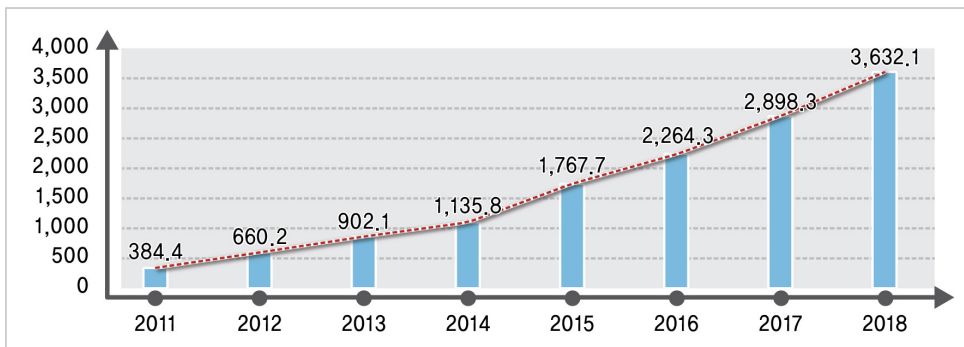


12) <http://www.ebrun.com/20170615/235542.shtml>

3. 온라인 화장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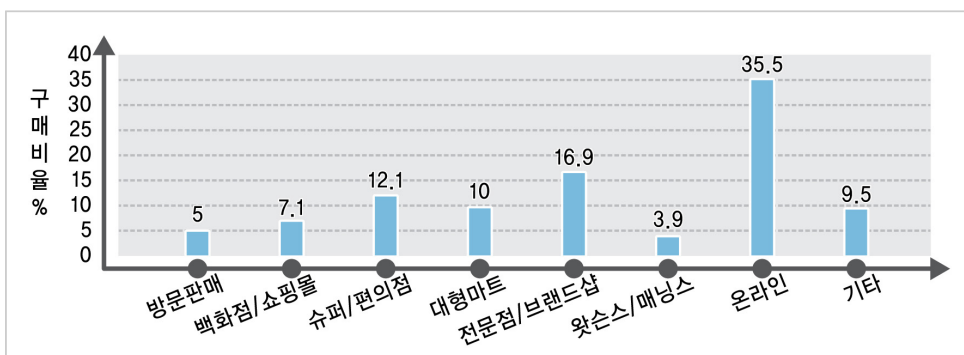
화장품 판매는 주로 마트, 오프라인 전문 매장,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이루어진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화장품의 온라인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도 중국에서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된 액수는 약 2,264억 위안(한화 약 39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8.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거래규모 추이(단위: 억 위안)



2016년 화장품 구매 채널 이용 현황을 보면 온라인 구매율이 35.5%를 차지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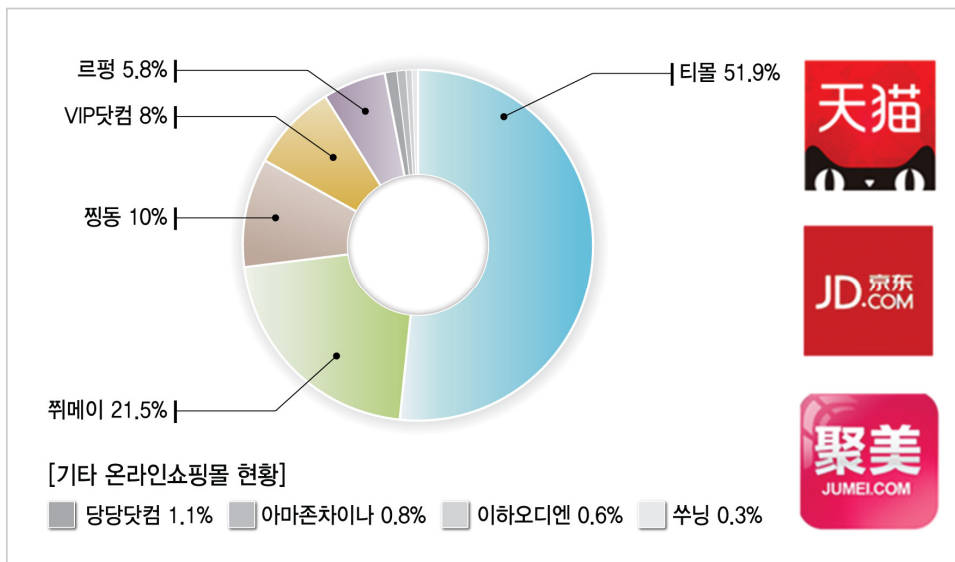
그림9. 2016년 구매채널 현황



13) CTR중국 조사기관 자료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국온라인 쇼핑몰은 '티몰, 쥬메이(聚美), 징동(京东), VIP닷컴, 르펑(乐蜂) 등이다. 이들의 판매액 비율을 보면 티몰과 쥬메이(聚美), 징동(京东) 3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80%이상을 판매한다.¹⁴⁾

그림10.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판매현황



4.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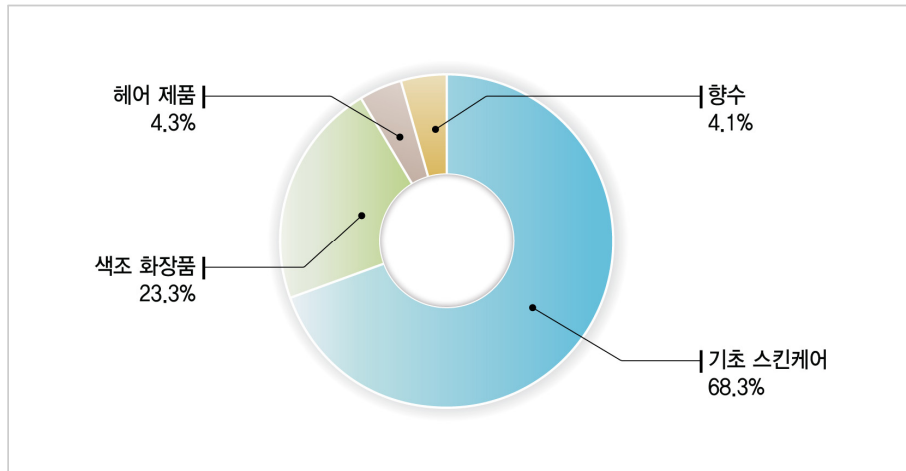
가. 기초 화장품 소비 증가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는 스킨케어 제품과 색조화장품이 주를 이루는데 화장품 종류별 소비 점유율을 보면 68.3%가 기초화장품이며 이들의 소비증가가 높다. 기초화장품 중, 에센스 및 크림에 소비 점유율이 높았다.¹⁵⁾

14) <http://www.jumeili.cn/NewsView-20691.html>

15) CTR중국 조사기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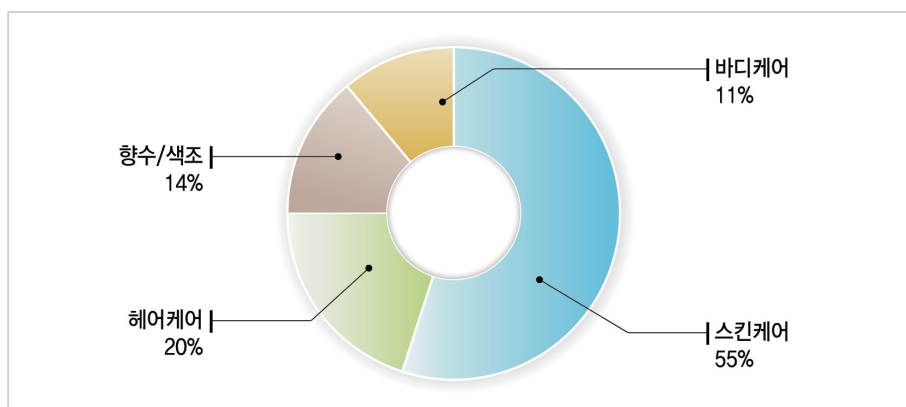
그림11. 화장품 소비점유율



나. 남녀소비자 화장품 소비 현황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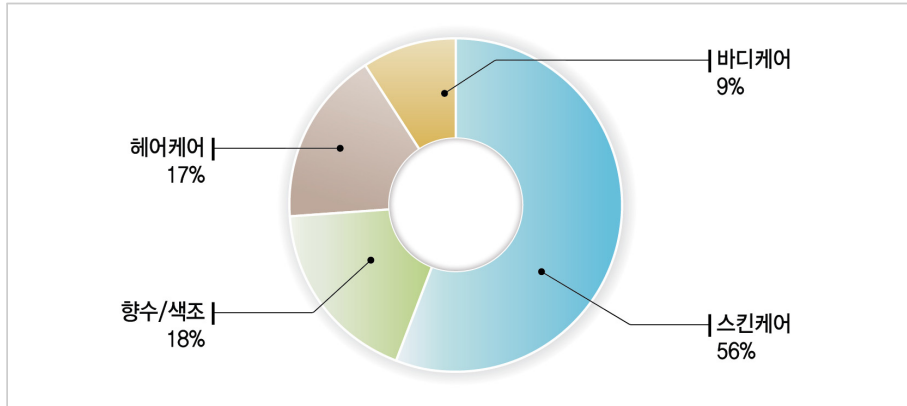
남녀 소비자를 구분하여 화장품 소비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들은 스킨케어와 헤어케어를 더 많이 소비하며, 여성들은 스킨케어 및 향수와 색조화장품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 남성소비자 화장품 소비비율



16) <http://www.ebrun.com/20170615/235542.shtml>

그림13. 여성소비자 화장품 소비비율



다. 연령별 구매현황

연령별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구매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의 소비자들은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을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4. 연령별 온라인 내 기초화장품 구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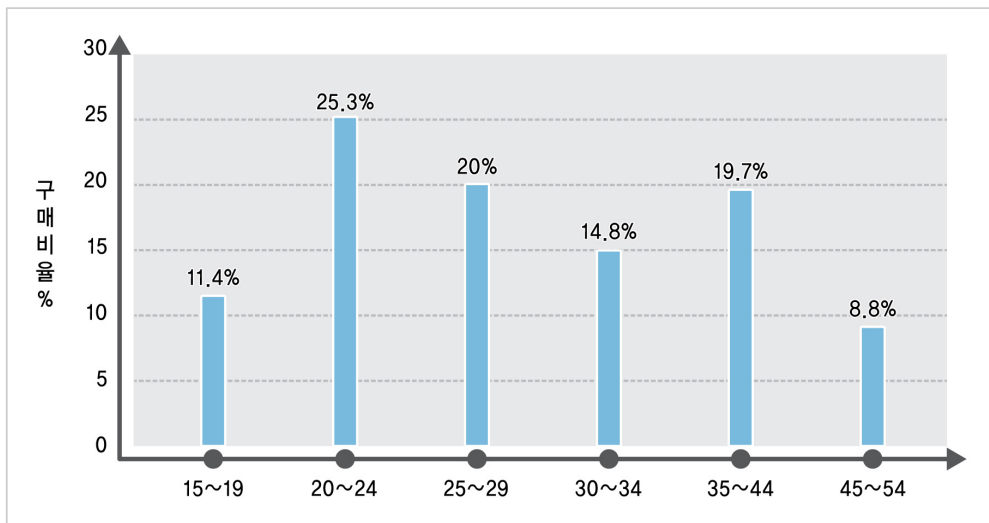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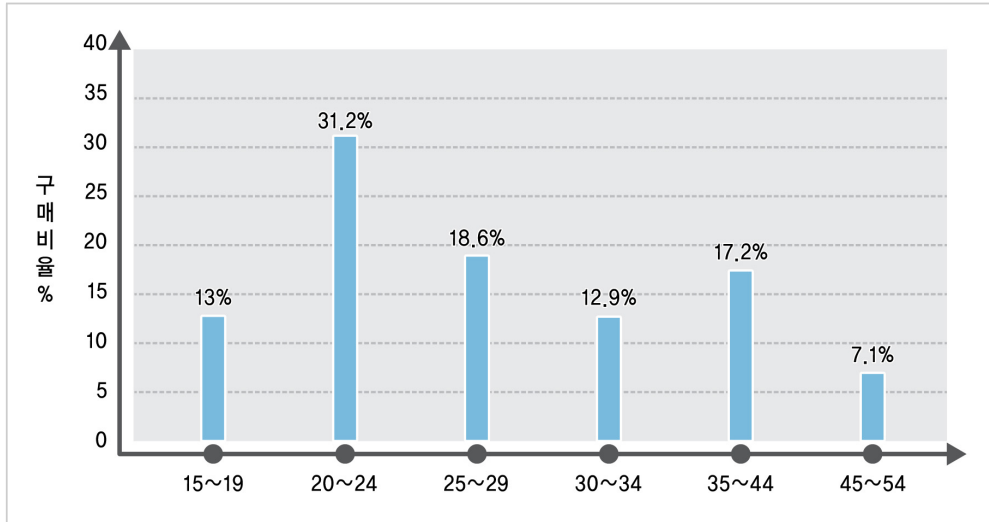


그림15. 연령별 온라인 내 색조화장품 구매현황



5. 중국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가. 개요

2017년 8월 중국 북경, 상해, 광주, 심양, 청도, 서안에 있는 코트라 IP DESK를 통해 중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북경과 광둥성, 산둥성, 요녕성, 섬서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147명, 30-39세가 116명으로 88%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202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그림16.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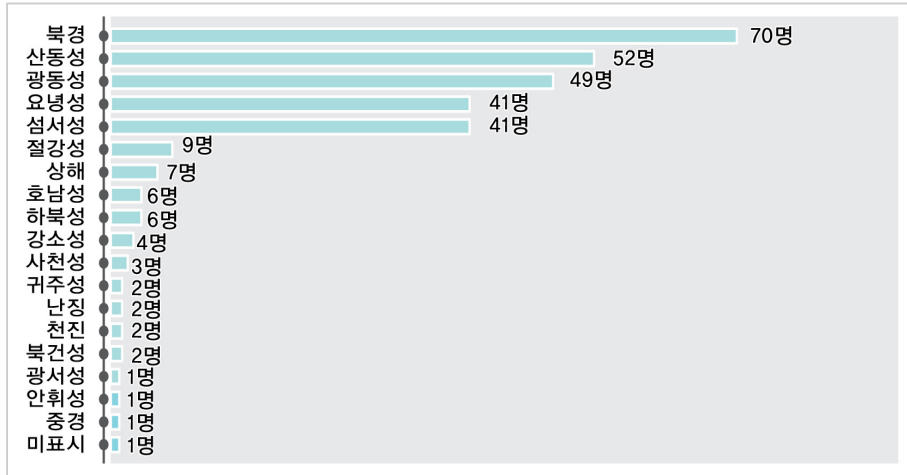


그림17. 응답자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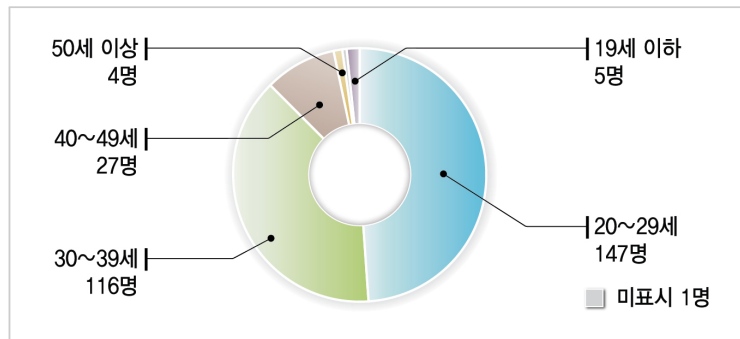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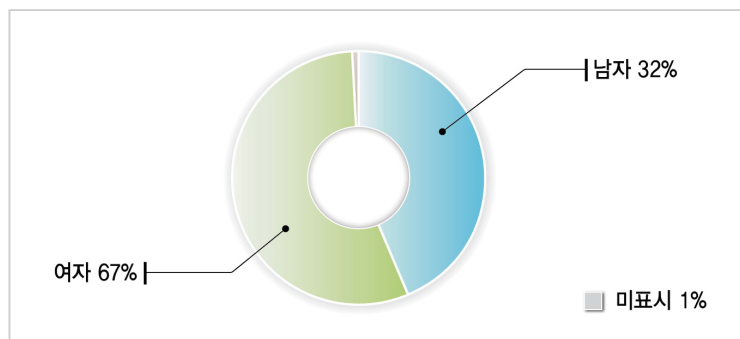


그림18. 응답자의 남녀 분포



나. 구매방식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화장품 전문매장,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구매하는 방식을 한 가지만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복수로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5명이며 나머지는 205명은 전문매장, 백화점, 마트, 면세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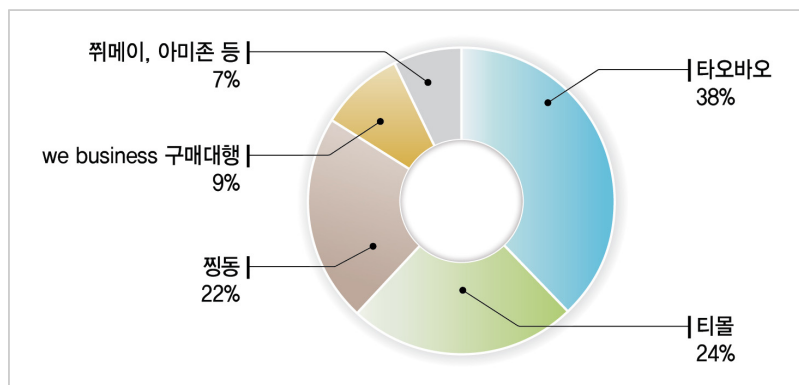
1) 온라인 구매방식 분석

응답자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온라인 쇼핑몰 중 타오바오를 통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며, 타오바오, 티몰, 징둥(京东)을 통해 구입하는 비율이 약84%이다.

표4. 응답자의 온라인 쇼핑몰별 구매자 분포

온라인 쇼핑몰 종류	구매자 수
타오바오	36
티몰	23
징둥(京东)	21
we business 구매대행	8
쥘메이, 아마존 등	7
계	95

그림19. 응답자의 온라인 쇼핑몰별 구매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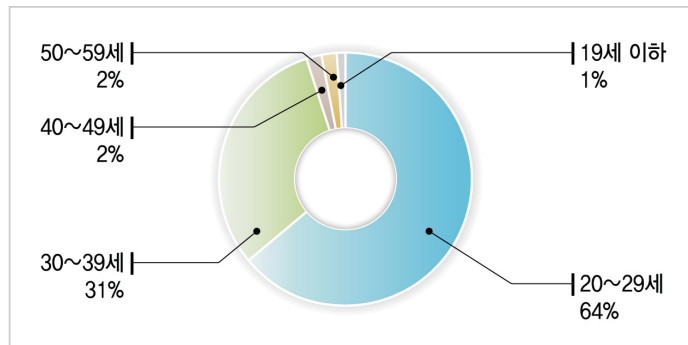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20-29세가 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39세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 쇼핑몰 이용비율이 높았다.

표5. 연령대별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수

연령대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수
19세이하	1
20-29세	61
30-39세	29
40-49세	2
50-59세	2
계	95

그림20. 연령대 별 온라인쇼핑몰 이용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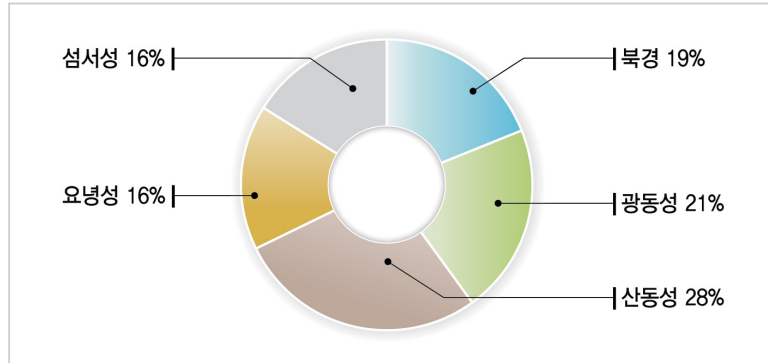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위 5개 지역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자를 분석해 보면 북경이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북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자가 많았다.

표6. 응답자가 많이 거주 상위 5개 지역에 대한 구매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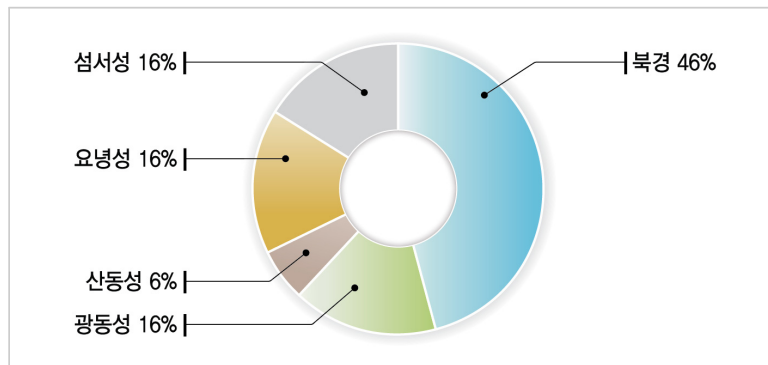
지역	온라인 구매자 수	오프라인 구매자 수	계
북경	37	33	70
산둥성	5	47	52
광둥성	13	36	49
요녕성	13	28	41
섬서성	13	28	41
계	81	172	253

그림21. 응답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대한 오프라인 구매비율 비교



한편, 온라인 구매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북경이 46%로 가장 높았고, 요녕성과 광둥성 순서로 높았다. 그러나 지방 도시로 갈수록 오프라인 구매비율이 높았다.

그림22. 응답자의 지역별 온라인 구매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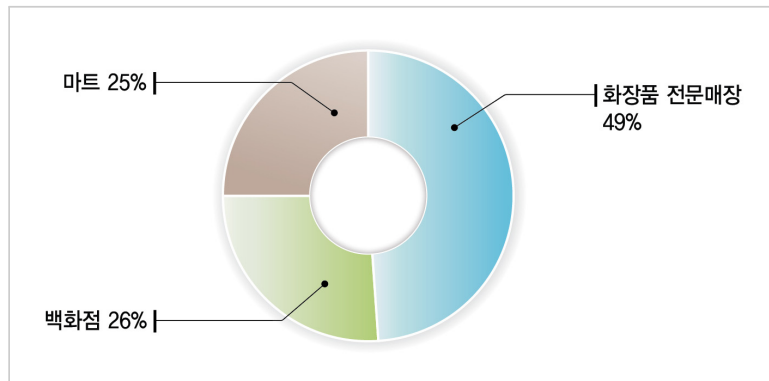
2) 오프라인 구매방식 분석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오프라인 구매 장소는 화장품 전문매장, 백화점, 마트였는데 응답자들은 답변에서 전문매장과 백화점등에서 구매하였다고 중복해서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오프라인 구매방식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이 전문매장, 백화점, 마트라고 명확하게 구분한 숫자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는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해 구입하는 숫자가 더 높았다.

표7. 오프라인에서 구매방식과 구매자 수 비교

오프라인에서 구매방식	구매자 수
화장품 전문매장	36
백화점	19
마트	18
계	73

그림23. 오프라인에서 구매방식의 비율 비교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산둥성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을 통한 구매는 섬서성이, 마트를 통한 구매는 섬서성과 요녕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4. 지역별로 화장품 전문매장에서 구입하는 구매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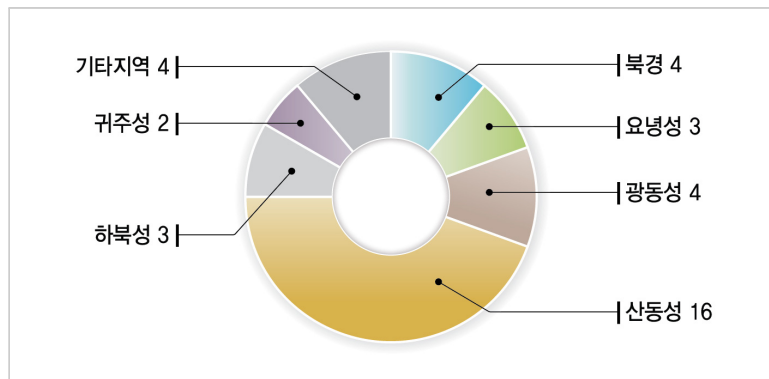


그림25. 지역별로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구매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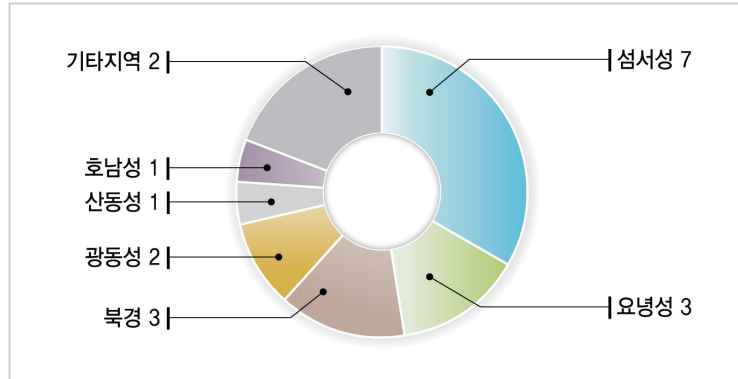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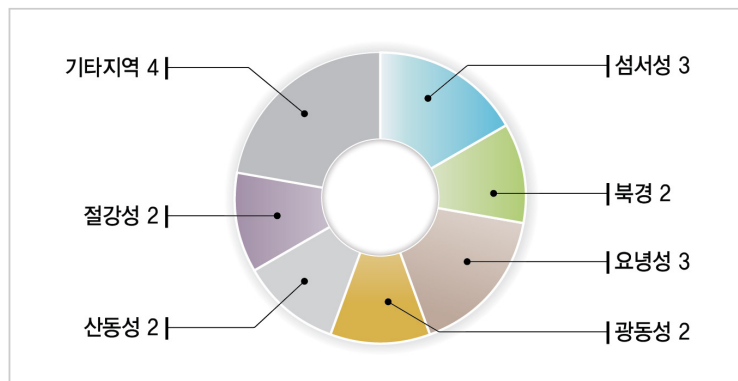


그림26. 지역별로 마트에서 구입하는 구매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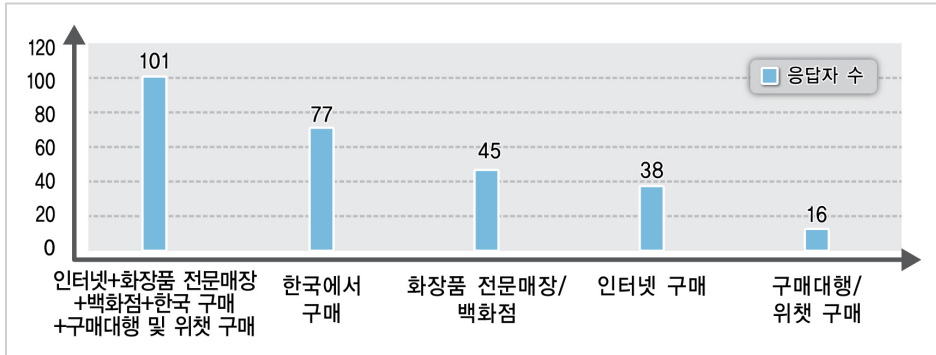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구매방식을 보면, 1선(線)도시보다는 2선(線)도시이하로 갈수록 화장품 전문매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한국화장품 구매경험

이번 응답자 300명 중, 277명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화장품 매장 등 여러 가지 구매방식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7. 응답자들의 한국 화장품 구매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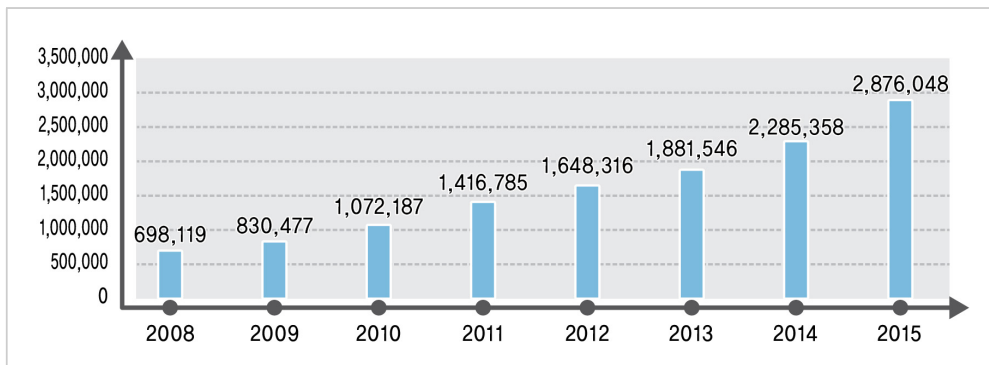


6.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상표출원 동향

가. 중국전체 상표 출원

중국의 상표 출원은 2015년도에 280여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 26% 증가하였다. 상표 출원은 중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관심 가져야 할 첫 번째 단계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는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이 위조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필요하다.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28. 연도별 중국 상표출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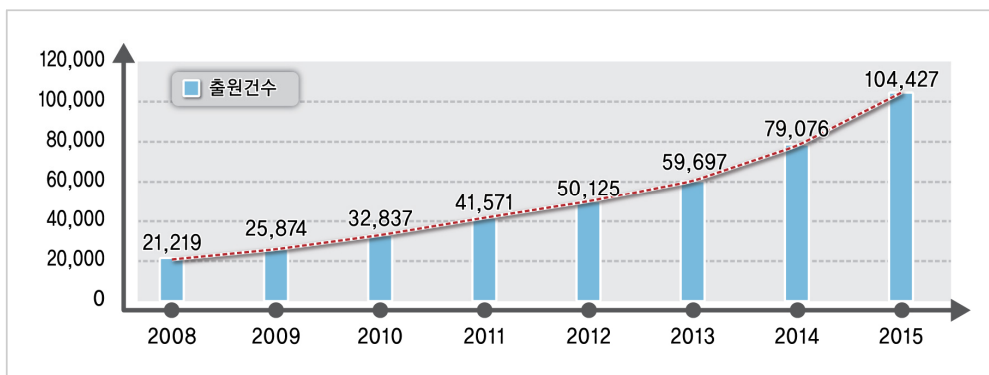


나.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출원 동향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2008년도에 약 2만 건에 불과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약 10만 건을 넘어섰으며,¹⁷⁾ 2015년도는 2014년 대비 화장품 상표 증가율이 약 32%나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상표의 전체 증가율이 25%인데 비하면 화장품 분야의 상표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분야 업종의 시장 확대와 상표 출원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중국시장에서 화장품시장이 급격하게 커지자, 중국인들은 화장품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화장품분야의 상표출원 증가비율이 전체 상표 출원 증가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여진다.

그림29. 연도별 중국화장품 관련 상표출원건수



다. 중국인과 외국인의 화장품 상표 출원건수 추이

연도별 화장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를 중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서 그 추이를 보면 중국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인들의 화장품 분야 상표출원 중에는 모방상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7) 연도별 중국 화장품 관련 상표출원건수와 중국인과 외국인의 화장품 출원추이 비교, 화장품 상표출원 점유율 변화는 '중국상표국 사이트의 연도별 통계'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임

그림30. 중국인/외국인 화장품 상표출원 건수 추이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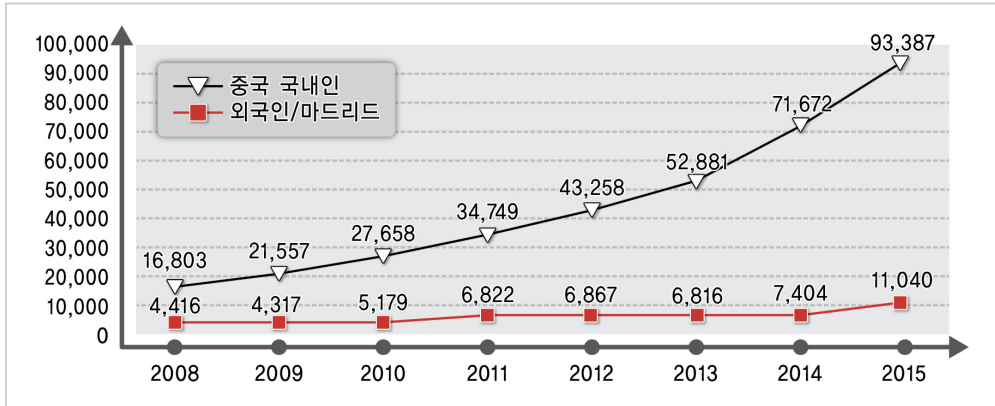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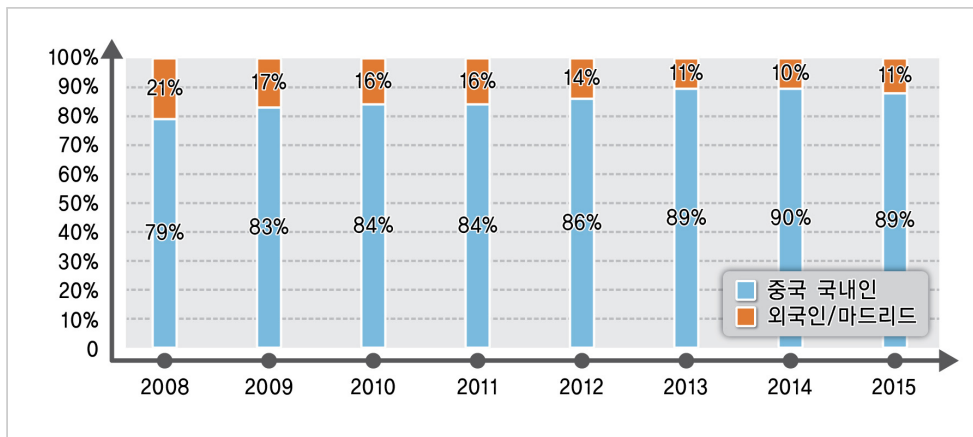


그림31. 중국인과 외국인의 화장품 상표출원 점유율 변화추이



라. 중국에서 주요 외국화장품 상표등록 현황¹⁸⁾

외국의 주요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류를 대상으로 중국에 상표 출원한 것인데, 이들 기업들의 상표를 보면 상당히 일찍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국 상표 출원은 필수요건이다.

18) 중국상표국 사이트

표8. 주요 외국화장품 상표등록현황

상 표	출 원 인	출원번호 / 출원일자	분 류
香奈儿	CHANEL	4379537 (2004.11.23.)	3류
迪奥	PARFUMS CHRISTIAN DIOR	6518133 (2008.01.18.)	3류
雅 顿	FD MANAGEMENT,INC.	1468444 (1999.08.26.)	3류
雅詩蘭黛	ESTEE LAUDER COSMETICS LTD.	276828 (1986.05.07.)	3류
ESTEE LAUDER 雅诗兰黛	ESTEE LAUDER COSMETICS LTD.	14457436 (2014.04.25.)	3류
蘭寇	LANCOME PARFUMS ET BEAUTE & CIE	1080518 (1996.04.19.)	3류
嬌蘭	GUERLAIN SOCIETE ANONYME	11115691 (2012.06.25.)	3류
欧莱雅	L'OREAL	1600291 (1999.12.27.)	3류
倩碧	CLINIQUE LABORATORIES,LLC	271763 (1986.03.01.)	3류
资生堂	SHISEIDO CO.,LTD.	5218126 (2006.03.16.)	3류
SHISEIDO 资生堂	SHISEIDO CO.,LTD.	5288419 (2006.04.14.)	3류
碧欧泉	BIOtherm	1431223 (1999.05.19.)	3류
悦诗风吟	INNISFREE CORPORATION	4090334 (2004.05.28.)	3류
 悦诗风吟	AMOREPACIFIC CORPORATION	20357168 (2016.06.20.)	3류
雪 花 秀	AMOREPACIFIC CORPORATION	3481561 (2003.03.11.)	3류

7. 중국 화장품 시장 요약

가. 연령대 별 선호제품

20대 소비자는 에센스, 마스크 팩 등 페이스 제품을 선호한다. 20대는 백화점과 온라인, 전문 매장을 적극 이용하는 연령대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된 소비자 층이다.

30대 소비자는 고기능성과 트렌드를 지향하는 연령대로 다양한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 층이다.

40대 소비자는 화장품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연령대로 고기능성 제품의 구매가 높은 소비자 층이다.

그림32. 연령대별 선호제품 비교

20대 소비자	30대 소비자	40대 소비자
· 에센스, 팩 등 페이스 제품 선호 · 백화점과 온라인 이용	· 고 기능성 · 트렌드 중시	· 화장품 기능 중시

나. 도시별 구매 채널 유형

1-2선(线) 도시의 구매자는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을 통하여 고가의 제품과 고기능성 제품을 구매하며, 온라인을 통한 구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3-4선(线) 도시의 구매자는 전문 매장이 주요 구매 채널이며, 여러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한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33. 도시별 구매채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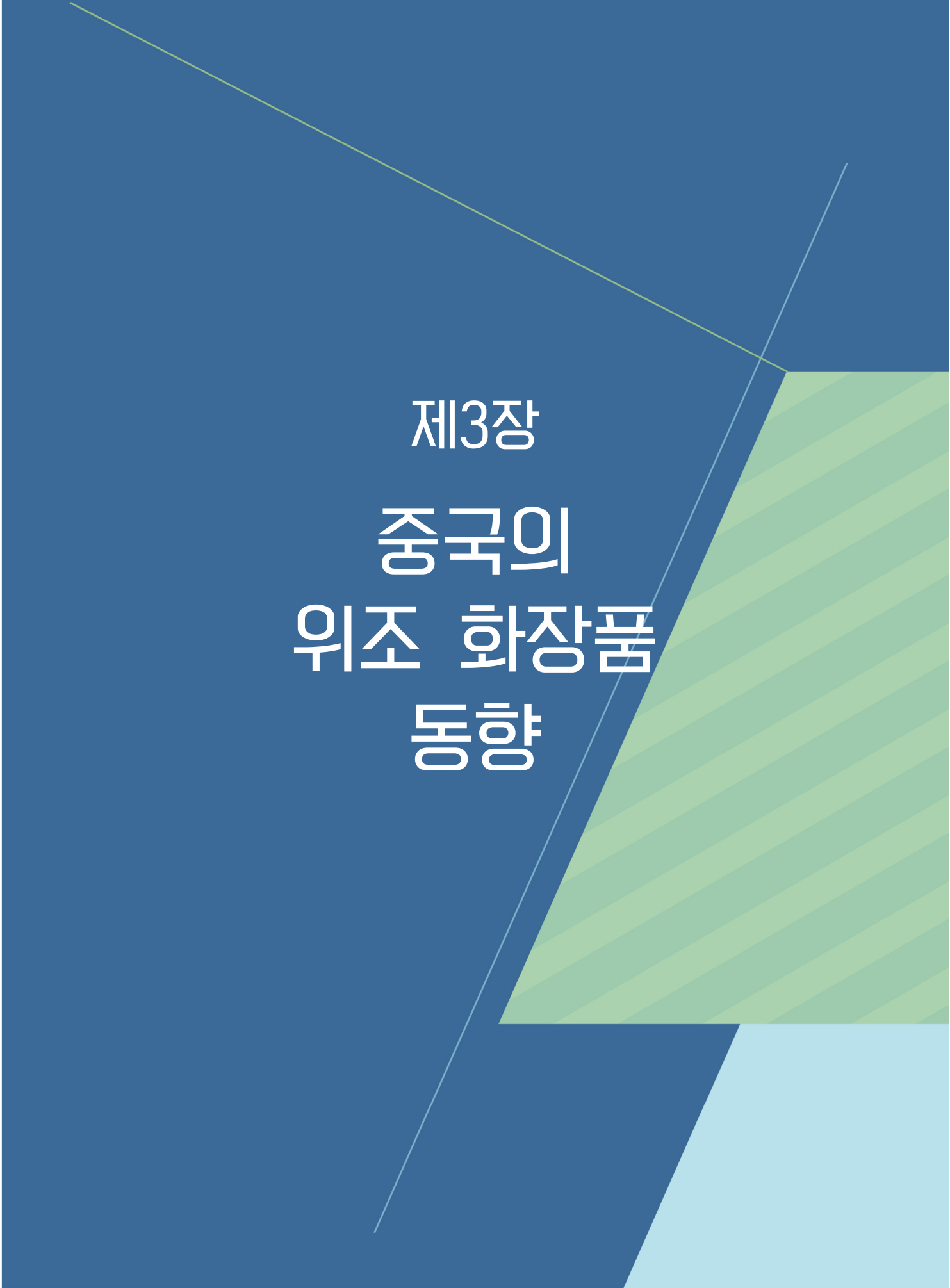
1~2급 도시	3~4급 도시
· 백화점, 전문매장 구입	· 전문매장이 주된 구매채널
· 고가제품과 고 기능성 제품 구입	· 온라인 구매 계속 증가
· 온라인 구매증가	· 여러 가격대 화장품 구매

다. 시사점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중국화장품 보다는, 외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 화장품의 브랜드가 그만큼 위조 화장품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장품 사용에 대한 증가율이, 북경 등 1선(线) 도시보다는 5선(线) 및 6선(线) 지방도시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위조 화장품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광둥성 지역에 화장품 관련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2016년도에 많이 기업등록을 하였다. 특히 중국의 위조 화장품 생산은 각 제품별로 아웃소싱을 통해 각각 생산해서 해당 유통 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중에는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화장품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화장품을 생산, 유통시키다가 식약품관리감독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였다.



제3장 중국의 위조 화장품 동향

제3장 중국의 위조 화장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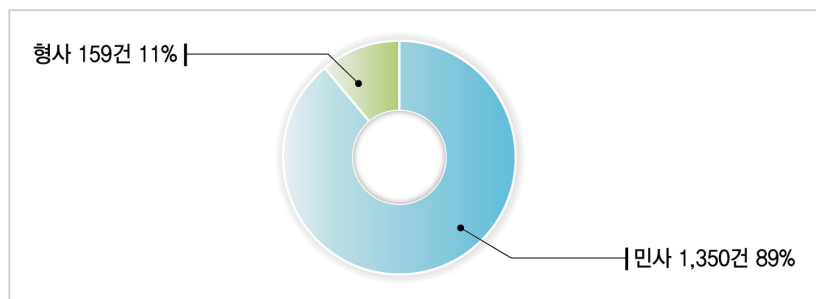
1. 위조 화장품 관련 판결문 통계분석

가. 개요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지역 법원별, 생산지별, 판매지 별로 분석해서 통계를 도출하였다.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위조 화장품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피고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번 통계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위조 화장품이 많이 발생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계분석을 위한 판결문(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결된 판결문을 기준)은 중국 IP HOUSE의 인민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위조 화장품 관련 판결문은 총 1,509건이었다. 그 중 민사사건은 1,350건이며 형사사건은 159건이다. (참고로 이번 통계분석은 중국 사무소 IP HOUSE에 내부에 구축된 중국 판결문만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판결문이 공개 안 되었거나 또는 IP HOUSE에 저장되지 아니한 판결문은 본 통계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34. 민, 형사 사건별 구성 비율



나. 민사사건

1) 각 성(省)법원별 분석

이번 통계분석에서 민사사건은 총 1,350건인데 먼저 성(省)위주로 법원별 통계를 보면, 주로 호북성, 절강성, 광둥성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3개 지역의 위조 화장품 관련 민사사건이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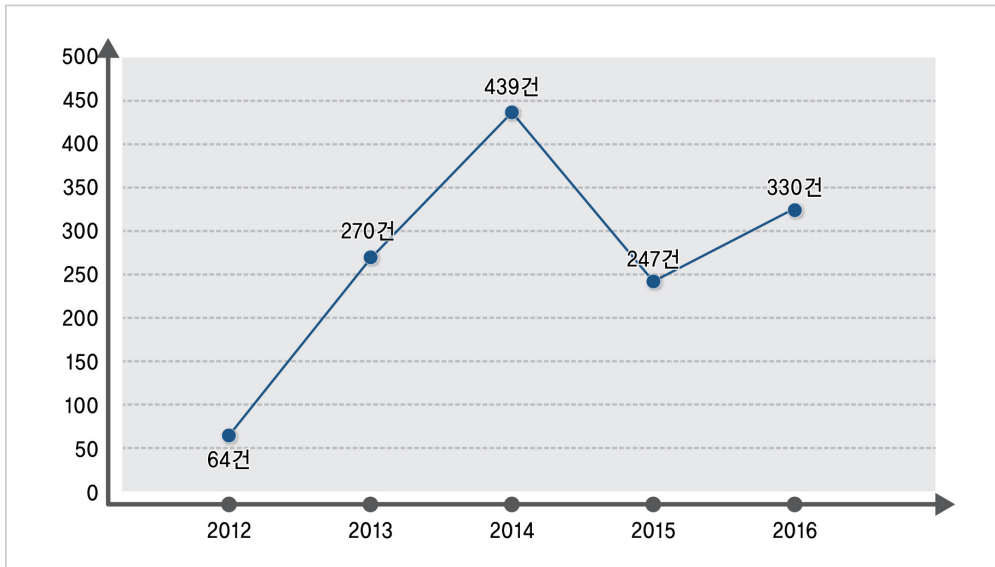
표9. 각 성(省)지역별 법원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 분포

지 역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호북(湖北)	0	171	91	11	32	305
절강(浙江)	2	35	96	85	83	301
광둥(广东)	37	27	58	15	9	146
복건(福建)	0	1	68	19	8	96
강소(江苏)	5	9	49	20	6	89
산둥(山东)	0	6	25	12	45	88
호남(湖南)	0	0	3	22	55	80
하남(河南)	0	0	8	27	30	65
안휘(安徽)	0	1	15	8	22	46
북경(北京)	15	3	14	2	3	37
중경(重庆)	0	0	0	18	1	19
사천(四川)	2	3	4	3	6	18
상해(上海)	2	11	2	0	0	15
운남(云南)	0	0	0	0	15	15
강서(江西)	0	0	0	1	13	14
흑룡강(黑龙江)	0	1	3	1	0	5
광서(广西)	0	0	2	0	1	3
요녕(辽宁)	0	0	1	1	0	2
신강(新疆)	0	1	0	1	0	2
하북(河北)	0	0	0	0	1	1
천진(天津)	1	0	0	0	0	1
산서(山西)	0	1	0	0	0	1
감숙(甘肃)	0	0	0	1	0	1
계	64	270	439	247	330	1,350

위조 화장품의 민사사건에 대해 연도 별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2016년도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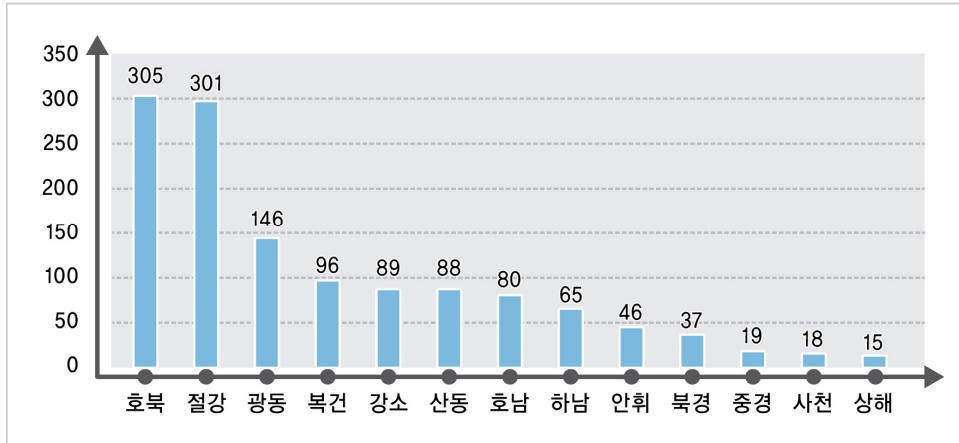
위조 화장품관련 민사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위조 화장품 생산업자나 판매업자 측면에서 보면, 위조 화장품의 생산원가가 아주 낮으며 이로 인해 얻는 불법이익이 아주 크다는 점이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상표권자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진다.

그림35.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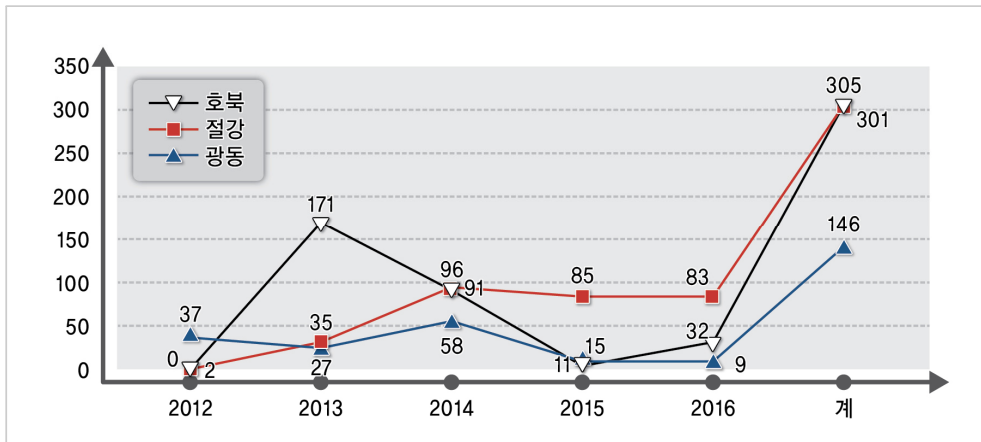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많은 상위지역을 보면, 호북성, 절강성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많다. 북경, 상해, 중경은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36. 각 성(省)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 분포비교(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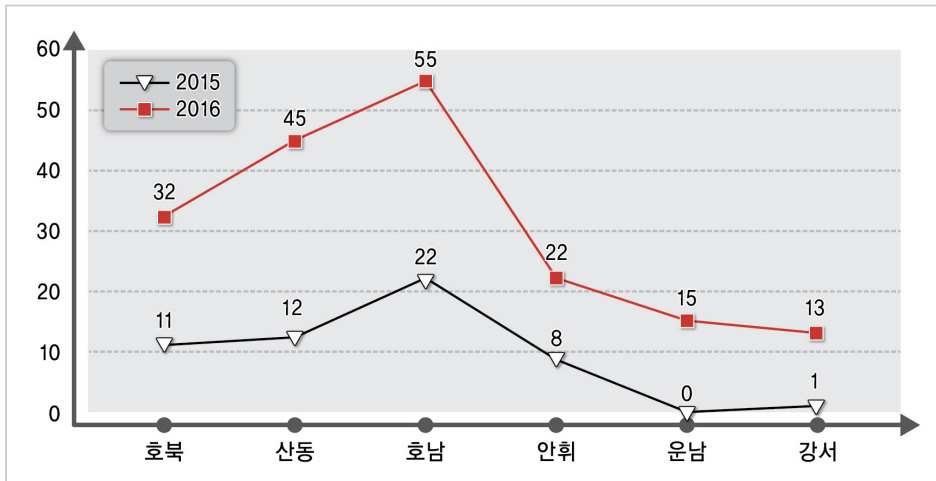
한편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많은 3개 지역(호북성, 절강성, 광둥성)에 대해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절강성에서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7.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 상위 3개 지역의 사건 변화추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은 호남성, 산둥성, 호북성이다.

그림38. 2016년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 증가율이 높은 지역



2) 생산지별 분석

최근 5년간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에서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는 광둥성으로 전체사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통계분석에 활용한 위조 화장품 관련 민사판결문 건수는 1,350건이지만, 생산지가 나타난 판결문 건수는 총 80건이었으며, 아래와 같이 분포되었다.

표10. 민사사건의 생산지별 분포

생산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광둥(广东)	32	18	4	3	4	61
강소(江苏)	1	2	1	1	0	5
절강(浙江)	0	1	1	2	0	4
북경(北京)	0	1	2	0	1	4
상해(上海)	0	1	0	0	1	2
복건(福建)	0	0	1	0	1	2
산둥(山东)	0	0	0	0	1	1
천진(天津)	1	0	0	0	0	1
계	34	23	9	6	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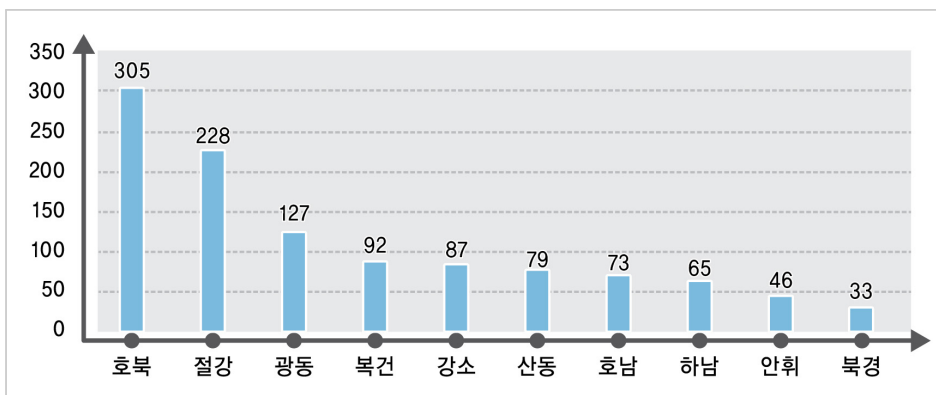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는 광둥성이다.

3) 판매지별 분석

표11. 위조 화장품의 판매지별 분포

판매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호북(湖北)	0	171	91	11	32	305
절강(浙江)	2	31	86	80	29	228
광둥(广东)	41	26	49	4	7	127
복건(福建)	0	1	67	18	6	92
강소(江苏)	4	11	48	20	4	87
산둥(山东)	0	6	18	10	45	79
호남(湖南)	0	0	1	18	54	73
하남(河南)	0	1	8	26	30	65
안휘(安徽)	0	1	16	7	22	46
북경(北京)	15	3	11	2	2	33
중경(重庆)	0	0	0	18	1	19
사천(四川)	2	3	4	3	6	18
운남(云南)	0	0	0	0	16	16
상해(上海)	2	11	1	0	1	15
강서(江西)	0	0	0	0	13	13
흑룡강(黑龙江)	0	1	3	1	0	5
광서(广西)	0	0	1	0	1	2
신강(新疆)	0	1	0	1	0	2
산서(山西)	0	1	0	0	0	1
천진(天津)	1	0	0	0	0	1
계	67	268	404	219	269	1227

그림39. 위조 화장품의 판매지역별 사건건수 비교



위조 화장품이 주로 판매되는 지역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호북성과 절강성이 전체 민사사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지는 광둥성이 많지만 판매는 절강성과 호북성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호남성, 호북성이다. 이는 법원별 민사사건 분석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위조 화장품과 관련하여 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관할은 침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고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지역에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단속이나 소송을 제기 받는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바로 위조 화장품 판매지역이다.

그림40. 판매지별 민사사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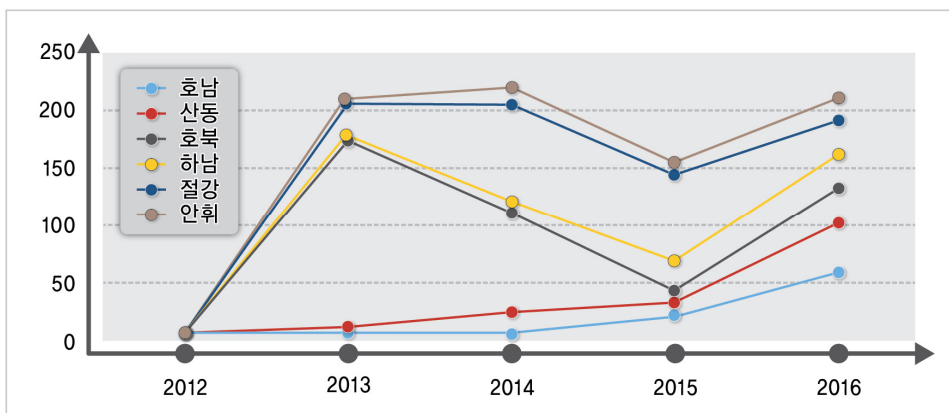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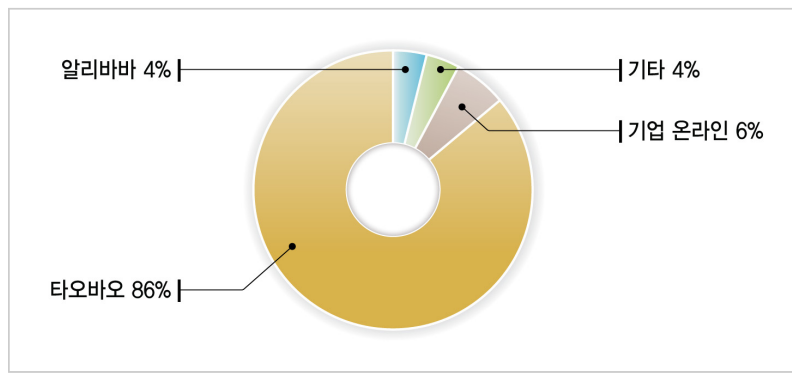
표12. 2015년 대비 2016년 판매지역별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 비교

판매지	2015	2016
호남(湖南)	18	54
산동(山东)	10	45
호북(湖北)	11	32
하남(河南)	26	30
절강(浙江)	80	29
안휘(安徽)	7	22
광둥(广东)	4	7
강서(江西)	0	13
운남(云南)	0	16

4) 온라인 쇼핑몰별 분석

인터넷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화장품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문 분석 중, 온라인에서 발생한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은 140건인데, 그 중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건은 120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41. 온라인 쇼핑몰별, 민사사건 점유율 비교



다. 형사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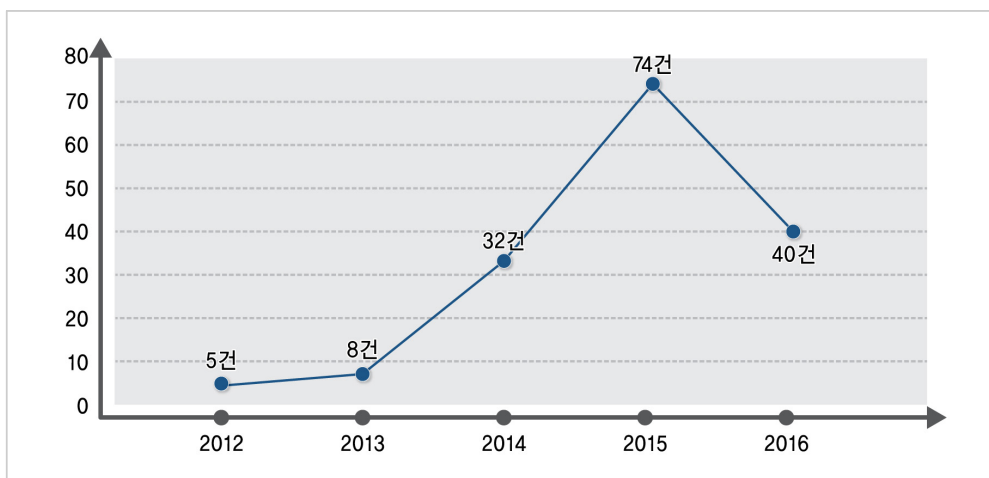
1) 각 성(省)법원별 분석

이번 분석에서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은 총 159건이었는데, 그중 95건이 광둥성에서 판결한 사건이었다. 광둥성은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절강성과 상해, 강소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을 합치면 129건으로 81%의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이 주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3. 각 성(省)지역별 법원 형사사건 분포

지 역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광둥(广东)	0	1	17	50	27	95
절강(浙江)	3	3	2	5	4	17
상해(上海)	0	1	2	6	0	9
강소(江苏)	1	1	1	3	2	8
호북(湖北)	0	1	0	1	3	5
복건(福建)	0	0	3	0	0	3
광서(广西)	1	0	0	2	0	3
산둥(山东)	0	0	2	0	1	3
북경(北京)	0	0	0	0	2	2
안휘(安徽)	0	0	0	2	0	2
호남(湖南)	0	1	1	0	0	2
산서(山西)	0	0	0	1	1	2
신강(新疆)	0	0	2	0	0	2
하북(河北)	0	0	0	1	0	1
하남(河南)	0	0	0	1	0	1
흑룡강(黑龙江)	0	0	0	1	0	1
강서(江西)	0	0	1	0	0	1
천진(天津)	0	0	1	0	0	1
운남(云南)	0	0	0	1	0	1
계	5	8	32	74	40	159

그림42. 형사사건의 연도별 추이



2) 형사사건 유형별 분석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형사사건 유형은, 진정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불법으로 생산한 그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화장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나, 상표권자의 상표표지를 불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조 화장품 생산자나 판매자가 그 상표를 위조 화장품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경우이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위조 화장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인데 4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다가 판결을 받은 경우가 35%로, 두 가지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표14. 형사사건 유형별 분포

사건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위조 화장품 판매	4	7	12	29	20	72
위조 화장품 생산	0	0	7	34	14	55
위조 화장품 생산, 판매	0	1	4	5	5	15
불법으로 라벨 생산	1	0	9	6	1	17
계	5	8	32	74	40	159

3) 생산지별 분석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광둥성이며,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의 85%를 광둥성이 차지한다.

표15. 형사사건 생산지별 분포

생산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광둥(广东)	0	0	15	40	18	73
상해(上海)	0	0	1	4	0	5
절강(浙江)	1	0	1	0	2	4
복건(福建)	0	0	1	0	0	1
호남(湖南)	0	0	1	0	0	1
강소(江苏)	0	1	0	0	0	1
산둥(山东)	0	0	1	0	0	1
계	1	1	20	44	20	86

4) 판매지 별 분석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자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광둥성이 37%로 가장 많았다. 앞서 판결문 통계의 생산지 분석에서 살펴본 바 같이, 위조 화장품의 85%가 광둥성에서 생산되는데 비해 광둥성에서 위조 화장품이 판매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광둥성에서 생산되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유통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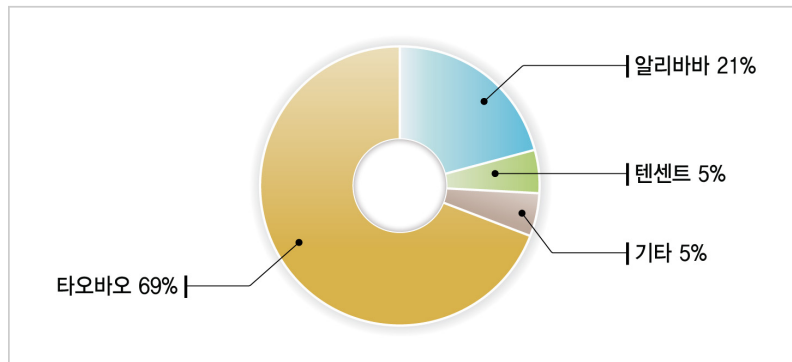
표16. 형사사건 판매지별 분포

판매지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광둥(广东)	0	1	2	14	13	28
절강(浙江)	2	2	1	4	1	10
호북(湖北)	0	1	0	1	3	5
강소(江苏)	1	1	1	0	2	5
상해(上海)	0	1	1	3	0	5
북경(北京)	0	0	0	0	2	2
북건(福建)	0	0	2	0	0	2
광서(广西)	1	0	0	1	0	2
산둥(山东)	0	0	2	0	0	2
산서(山西)	0	0	0	1	1	2
신강(新疆)	0	0	2	0	0	2
안휘(安徽)	0	0	0	1	0	1
운남(云南)	0	0	0	1	0	1
하북(河北)	0	0	0	1	0	1
하남(河南)	0	0	0	1	0	1
흑룡강(黑龙江)	0	0	0	1	0	1
호남(湖南)	0	0	1	0	0	1
강서(江西)	0	0	1	0	0	1
천진(天津)	0	0	1	0	0	1
계	4	6	14	29	22	75

5) 형사사건의 온라인 쇼핑몰별 분석

형사사건 159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은 19건이다. 19건 중에서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13건이다. 형사사건도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타오바오가 온라인 쇼핑몰 위조 상품의 진원지이다.

그림43. 온라인 쇼핑몰별, 형사사건 점유율 비교



6) 유명브랜드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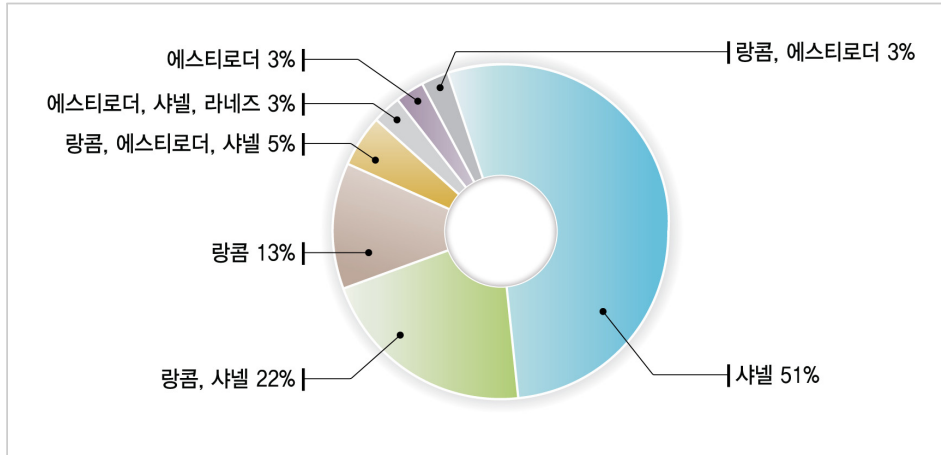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라네즈 4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총 37건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유명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처리된 경우도 있고, 또는 한 개 브랜드의 화장품만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유명 브랜드 중, 샤넬 브랜드와 관련된 위조 화장품이 가장 많았다.

표17. 샤넬 등 4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 건수

브랜드명	건 수
샤넬	19
랑콤, 샤넬	8
랑콤	5
랑콤, 에스티로더, 샤넬	2
에스티로더, 샤넬, 라네즈	1
에스티로더	1
랑콤, 에스티로더	1

그림44. 샤넬 등 4개 브랜드의 형사사건 분포 비교



한편, 샤넬 등 4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다가 형사판결을 받는 경우,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되었다. 이번 판결문 분석에서 부과된 벌금의 구간과 건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1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이 87%를 차지하며, 위조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다가 100만 위안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도 3건이나 된다.

표18. 샤넬 등 4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 벌금구간

벌금구간	사건수
1만 위안 이하	2
1-5만 위안	11
5-10만 위안	8
10-20만 위안	4
20-50만 위안	7
50-100만 위안	2
100만 위안 이상	3

2. 위조 화장품 언론 동향

가. 화장품관련 사기 홈페이지 등장¹⁹⁾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 구매 시 가짜 홈페이지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해당 홈페이지는 ‘NARS’ 브랜드 중문 사이트(www.nars-china.cc)였다.

홈페이지에는 최신 정보, 제품 정보, 베스트셀러 상품과 주문내역 조회 등 메뉴가 있으며, 립스틱, 아이섀도,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들은 미국에서 직수입되고,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 7일 내에 환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중국인 모씨는 이 홈페이지에서 화장품을 208 위안에 구매하였다. 상품을 받아본 후, 이상을 느껴 환불을 하기 위해 환불절차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지만 환불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었고,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고객센터로부터 무시되었다.

동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북경 청년일보 기자가 NARS가 속한 시세이도 그룹에 전화를 직접 걸어 문의했더니, 관련 상품은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화장품관련 사기 홈페이지가 존재한다고 그는 이야기 했다. 결국 위의 중국 홈페이지는 가짜였으며, 현재는 삭제되었다.

그림45. 바이두 검색결과 사기 홈페이지 관련 내용



19) <http://www.mnw.cn/news/cj/1765670.html>

나. 화장품관련 기준에 미달된 기업명단

1) 광주시

광주시 식약품관리감독국은 2017년 4월 화장품생산 기업들의 영업 상태를 감독 조사하여 단속한 15개 기업을 발표했다.²⁰⁾

그 단속대상의 기준은, 미 허가된 특수 화장품을 판매한 기업, 화장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화장품을 판매한 기업 등 기준에 미달한 화장품 기업이었다.

표19. 광주시 발표, 화장품 기준에 미달된 화장품 기업명단 사례

기업명칭	감독 검사결과
광주 백개려 상업유한공사 (广州百凯丽商业有限公司)	미 허가된 특수화장품 판매 혐의
(광주 오곡생물 과학유한공사 (广州澳谷生物科技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혐의
광주시 희천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喜倩化妆品有限公司)	품질이 떨어지는 화장품 및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화장품 판매혐의
광주성풍무역유한공사 (广州成沣贸易有限公司)	미 허가된 수입화장품을 판매한 혐의
광주건백화장품유한공사 (广州健栢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혐의

※ 화장품 관련 기준에 미달, 불합격한 화장품 15개 명단은 붙임 참조

아울러 광주시 식약품관리감독국은 동 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지하였다.

관련기관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등록된 화장품은 구입과 사용을 금할 것과, 만약 위법 생산된 화장품을 발견하는 즉시 지역 식약품관리감독국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20) http://www.cqn.com.cn/ms/content/2017-04/27/content_4232050.htm, 中国质量新闻网

2) 중경시(重庆市)²¹⁾

중경시(重庆市) 식약품관리감독국은 2016년 11월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된 화장품을 유통한 기업을 발표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진행하였다. 불합격된 화장품은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해서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표20. 중경시 발표, 기준에 미달된 화장품 생산기업 명단

기업명칭	감독검사결과
광주벽륵화장품회사(广州碧润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혐의
광주이전화장품회사(广州以晨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혐의
광주풍운화장품회사(广州丰韵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혐의
광주명엽당화장품회사(广州铭烨堂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한 혐의

유통관련 사실관계

단속결과 판매자는 모두다 중경시(重庆市)에 있었고, 생산자는 모두다 광주시 백운구(白云区)에 위치한 화장품 회사들이었다.

그림46. 중경시 발표, 기준에 미달된 화장품기업의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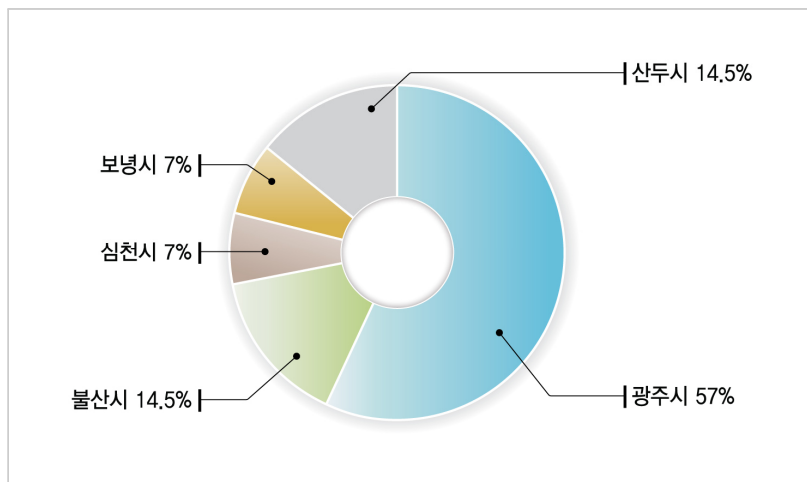
21) http://cn.chinagate.cn/news/2016-11/15/content_39708586.htm
http://www.sohu.com/a/119744391_157707

3)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은 2017년 8월, 화장품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15개 기업명단을 발표²²⁾하면서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시켰고, 그 화장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화장품 기업들의 지역을 보면 14개 기업이 광둥성에 있는 것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1개 기업이 절강성에 있다. 광둥성에서도 지역별 소재지를 보면 광주시에 8개 기업, 보녕시(普宁市) 및 심천시에 각각 1개 기업, 불산시(佛山市)와 산두시(汕头市)에 각각 2개 기업이 소재하였다.

그림47.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이 발표한 불합격 화장품 기업의 광둥성분포



※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의 발표, 화장품 관련 기준에 미달된 화장품 15개 명단은 붙임 참조

유통관련 사실관계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이 이번에 발표한 불합격된 명단기업들을 보면 14개 기업이 광둥성에, 1개 기업이 절강성에 있는데, 이곳에서 불합격한 화장품을 생산해서 산서성, 우루무치 등 27개 지역으로 유통시켰다. 감독에서 적발된 화장품 판매 기업들이 소재한 지역은 대부분 3선(线)-4선(线) 그 이하 지역이었다.

22) <http://news.chengdu.cn/2017/0815/1903021.shtml>, <http://www.sda.gov.cn/WS01/CL1753/176107.html>

그림48.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이 발표한 불합격화장품기업의 유통현황

생산자(지역)	판매자(지역)
광동성 광주시(8곳) 불산시(2곳) 산두시(2곳) 심천시(1곳) 보령시(1곳)	사천성(6곳) 영화자치구(2곳) 산서성(4곳) 광서성(2곳) 신강우루무치(4곳) 해남성(1곳) 산둥성(2곳) 복건성(1곳) 하북성(2곳) 광둥성(1곳) 감숙성(2곳)
절강성 동양시 (1곳)	

시사점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국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 것은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함으로 인체에 해를 미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해서 만든 화장품이나 또는 화장품 기준에 미달되는 화장품은 정품이 아니다. 결국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직, 간접적으로 위조 화장품 생산, 유통과 관련이 있다.

중경시에서 적발하여 발표한 사건을 보면, 그 화장품을 생산한 기업은 모두다 광주시 백운구에 위치한 화장품 회사였으며, 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에서 발표한 사건 역시 광주시 백운구에 위치한 화장품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가 위조 화장품의 진원지라고 하겠다.

다.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나라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

동 사례는 아래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 조사한 결과, 그 피고가 1688.com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에 관해 한글로 적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21.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의 판결문 사건개요

광동성 중산시에 있는 화장품회사와 광주시 몽장 화장품 회사(广州市梦妆化妆品有限公司)간에 화장품을 둘러싼 상표권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1332692호 상표를 1999년도 화장품류에 등록하였고, 2014년도 원고의 화장품 판매액은 약 4,700만 위안이었다. 한편, 피고(梦妆)는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에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소비자들로 오인혼동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공상국의 단속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 몽장(梦妆)을 상대로 상표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6.20. 광주시지식产权법원은 피고 [몽장(梦妆)]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²³⁾

23) 广州知识产权法院民事判决书 (2016)粤73民终328号, 2016.6.20

이 기업은 광둥성 중산시에 있는 완미유한공사(完美(中国)有限公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0일 광주시 지식재산권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회사대표 马炎德)에 대해 파악한 결과, 피고회사는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 균화가에 위치한 화장품회사로 2011년도에 설립되었다. 동 회사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다. 아울러 동회사의 명칭은 한국의 마몽드를 중문으로 번역한 몽장(梦妆)과 같으며, 회사간판도 몽장 화장품 유한공사(梦妆化妆品有限公司)로 표기하였다.

온라인에 나타난 피고 회사 소개를 보면 한국, 프랑스, 호주 등 16개 국가에서 오염되지 않은 식물을 들여와서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림49.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 소개내용²⁴⁾

公司介绍

广州梦妆化妆品有限公司是一家极富创新精神的化妆品厂家。成立于2011年，坐落于广东广州白云区，公司拥有两万平方米的现代化工厂。一家科研，生产，销售一体化的综合型企业。并以纯天然植物萃取为原料采用新鲜提取为核心技术，秉持“以人为本，以精立业，以质取胜，以诚服务，源自全球，天然美肌”的经营理念。以产品质量为企业发展之命脉，以市场为消费导向，以信誉为企业生存之根本。现已拥有稳定且成熟的全国市场批发商，中小经销商，网络及一大批忠实的消费者。公司业务覆盖全国，货源充足稳定，品质保障，成为客户最值得信赖的朋友！公司于2014年开始投资电影文化产业，让自家产品直接植入广告于自己传媒公司，使得品牌更直接更广阔得到宣传。梦妆化妆品公司主营……，等多个均为绿色无添加新鲜提取和天然萃取的科技护肤产品线。主打四大品牌：美容大S、菲司小铺、植萃美、魔法小屋。所有产品从市场调研、开发、策划、到销售推广培训均有专业的人员实施。公司配备专业实验基地和标准化生产工厂，严格监控质量。从韩国、法国、澳洲等16个国家相继引进未经污染的基本和蔬果为原料并由世界顶尖研发中心专业研制，打造高端护肤品牌。引导行业健康和时尚潮流，为中国民族产业的振兴而不懈努力！... 广州梦妆化妆品有限公司热忱欢迎各界前来参观、考察、洽谈业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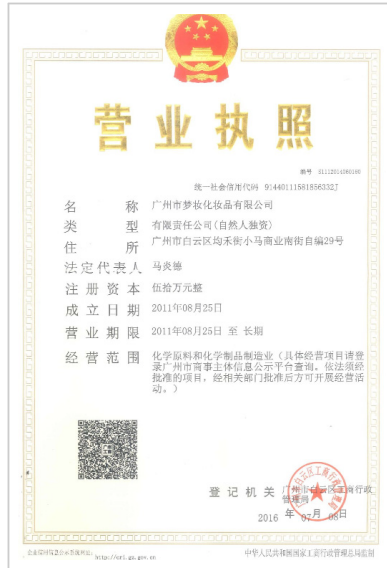


公司档案

公司名称：	广州市梦妆化妆品有限公司	企业类型：	企业单位（生产商）
所在地：	广东/广州市	公司规模：	100-499人
注册资本：	50万人民币	注册年份：	2011
资料认证：			
经营模式：	生产商		
经营范围：	化妆品制造；口腔清洁用品制造；肥皂及合成洗涤剂制造；化妆品及卫生用品批发；清洁用品批发；化妆品及卫生用品零售；		
销售的产品：	面膜 洁面奶 爽肤水 面霜 润肤乳 精华液 BB霜 护手霜 眼霜 其他护肤类		
主营行业：	冶金矿产 / 铁合金	冶金矿产 / 有色金属合金	冶金矿产 / 炭精箔
	冶金矿产 / 钢材	五金、工具 / 喷涂工具	

24) <https://detail.1688.com/offer/525127452529.html?spm=a2615.7691456.0.0.d3059e2obhD2k>

그림50.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 영업 등록증 사진²⁵⁾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는 1688.com에서 화장품을 팔 때 영업 등록증 사진을 함께 올려놓는다. 이렇게 등록 받은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림51.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 전경²⁶⁾



25) <https://detail.1688.com/offer/555741621850.html?spm=a261y.7663282.0.0.lzJQe>

26) <https://detail.1688.com/offer/525127452529.html?spm=a2615.7691456.0.0.d3059e2obhD2k>

그림52.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가 판매하는 마스크팩 사진²⁷⁾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가 판매하는 마스크팩에는 한글을 적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그림53.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의 매장 내부 진열대 사진²⁸⁾

27) <https://detail.1688.com/offer/532997471370.html?spm=a261y.7663282.0.0.RuoKJh>

28) <https://detail.1688.com/offer/555741621850.html?spm=a261y.7663282.0.0.lzJQed>

진열대를 보면 “菲司小铺”과 THE FAEN SHOP으로 표기하였는데, 菲司小铺는 영문자 THE FACE SHOP을 증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매장 내부 진열대에 있는 영문자 THE FAEN SHOP을 보면 우리기업의 THE FACE SHOP과 알파벳 1자만 차이가 난다. 마치 한국의 “菲诗小铺”와 THE FACE SHOP으로 오인, 혼동하게 한다.

그림54.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사진²⁹⁾



광주시 몽장(梦妆)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하는 위의 화장품은 우리나라 이니스프리 제품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녹차를 주원료로 한다는 것도 동일하다.

29) <https://detail.1688.com/offer/555741621850.html?spm=a261y.7663282.0.0.lzJQed>

그림55. 광주시 몽장(夢妝) 화장품회사가 판매하는 마유크림³⁰⁾



마요크림에 표시된 도형은 우리나라 클레어스 코리아의 게리송 디자인과 동일하며, 그 아래에 있는 THE FAEN SHOP은 우리나라의 THE FACE SHOP과 알파벳 1자만 차이가 난다.

라. 온라인상 위조 화장품 특징

“1선(线) 도시에서는 진품을 판매하고, 2-3(线) 도시에서는 1/2은 진품을 1/2은 위조품을 판매하고, 4-5(线) 이하 도시는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다”. 화장품 업계에서 오래 일해 온 중국인 張모씨가 한 말이다. 張모씨는 현재 온라인 상점은 위조 화장품의 진원지라고 얘기했다.³¹⁾

전자 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위조 상품의 진원지가 온라인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그 중 화장품이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 협회와 중국 인터넷 협회 등 기관에서 발표한 <중국 화장품 안전 지수 보고>의 수치에 의하면, 중국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100여 개의 저명 브랜드 화장품의 20%가 위조 화장품이라고 한다. CCTV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남방 일부 지역에 규모가 있는 위조 화장품 생산 기지가 존재하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시장에서 3-4선(线) 도시로 옮겨진다고 했다. 중국 정부에서 위조 화장품의 단속이 심해지자, 위조 화장품의 유통라인은 원가가 더 저렴한 전자 상거래로 전이되고 있다.

위조 화장품의 생산 원가는 10위안 이하이며, 생산한 위조 화장품은 온라인에서 원가의 10배에서 수십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 공안에 의하면 외국 유명 브랜드들의 위조 화장품 원가는 매우 저렴하고 화장품 병은 4-5위안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위조 화장품은 포장이 투박하고, 설명서의 글자가 흐릿하며, 위조 방지 마크가 없다고 한다. CCTV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어떤 인터넷 상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은 외관 포장과 병은 정품이지만, 내용물은 정품보다 연하고, 색상과 향기가 정품과 다르다고 했다.

또 공안에 의하면 현재 위조 화장품은 3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생산과 도매의 근원지가 동남연해의 화학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분포되었고, 위챗 등 SNS를 통한 위조 화장품 판매가 증가함은 물론 단속이 어려우며, 위조 화장품의 브랜드와 종류는 유행에 따라 변화가 빠르다고 말했다.

위조 화장품 생산자는 자신의 판매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위챗의 朋友圈 혹은 기타 온라인 상점, 농촌이나 도시 근교의 인적이 드문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생산자는 생산한 위조 화장품을 직접 배송하며, 3-4선(线) 도시의 미용실, 이발소 등이 주요 타겟이다. 몇몇 중간 판매인들은 위조 화장품의 생산 원료를 구매해서 직접 가공하고, 광둥성 광주시에서 포장 재료를 구매해서 다시 도매상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31) <http://henan.163.com/17/0320/17/CG05VSG902270F85.html>

중간 도매상이 유통업자로부터化妆품을 구입할 때 그들도 구입하는 化妆품이 위조 化妆품 인지 모르고 구입하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化妆품을 구입할 때 외관 포장만 보면 그 化妆품이 위조 化妆품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化妆품이 정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을 수는 있다.

아래 위조 化妆품 생산과 유통경로 사례에서 보듯이, 위조 化妆품이 많이 발견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타오바오였다.(관련 사례는 제4장 위조 化妆품 생산과 유통 경로 참조)

표22. 위조 化妆품이 발견된 온라인 쇼핑몰

구 분	발견한 곳	위조 化妆품 브랜드
광둥성 동관시(东莞市) 사례	인터넷 쇼핑몰	OLAY, 에스티로더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	타오바오 쇼핑몰	克丽缇娜, 宝相花, 金美沙龙, 唯真
절강성 태주(台州) 사례	타오바오 쇼핑몰	AMWAY, LANCOME, ESTEE LAUDER, CHANEL, DIOR
절강성 동양시(东阳市) 사례	인터넷 쇼핑몰	L'OREAL, NARS, 에뛰드하우스, CLINIQUE
심천시 사례	타오바오 쇼핑몰	시세이도

마. 온라인에서 발생한 위조 化妆품 사례

1) 강소성 서주시 사례³²⁾

강소성 서주시 공안은 2017년 8월, 티몰과 타오바오의 온라인 상점에서 위조 化妆품을 단속하였다고 발표했다. 2016년도 1월경, 한 시민이 인터넷에서 化妆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化妆품의 품질에 이상을 느껴 가짜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 공안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공안은 그 化妆품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결과 위조 化妆품으로 판명되었다. 공안은 추적결과 남경에 있는 陈모씨(A모씨)의 위조 化妆품 판매상점을 발견하고 그 상점내부에서 대량의 위조 化妆품을 발견하였다. 당시 공안이 압수한 위조 化妆품 가격은 약 20만 위안(한화 약 3,500만원) 정도였다.

32) http://tech.ifeng.com/a/20170816/44663796_0.shtml, 2017.8.16.
<http://www.mycailing.com.cn/news/2017/08/17/155108.html>

공안은 陈모씨로부터 위조 화장품 구입경로를 추적한 결과, 강소성 숙천(宿迁)에 있는 张모씨(B모씨)가 陈모씨에게 위조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张모씨가 1년 동안 판매한 위조 화장품 금액은 2,000만 위안(한화 약 35억원) 정도였으며 청도(青岛)에 있는 창고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되었다.

공안은 여러 방면으로 조사결과 청도에 있는 10㎡ 정도 크기의 창고를 발견하였는데 그 창고 내부에는 위조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창고 관리자를 심문한 결과 청도의 다른 지역에 16개의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창고를 단속하였다.

16개의 창고에서는 20여 톤의 위조 화장품이 발견되었고, 이번 사건에서 체포한 자들은 47명이며, 위조 화장품 가격은 약 2억 위안(한화 약 350억원) 정도였다. 아울러 이번 위조 화장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 위조 화장품을 구입한 중국에 있는 약 13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림56. 강소성 사례의 위조 화장품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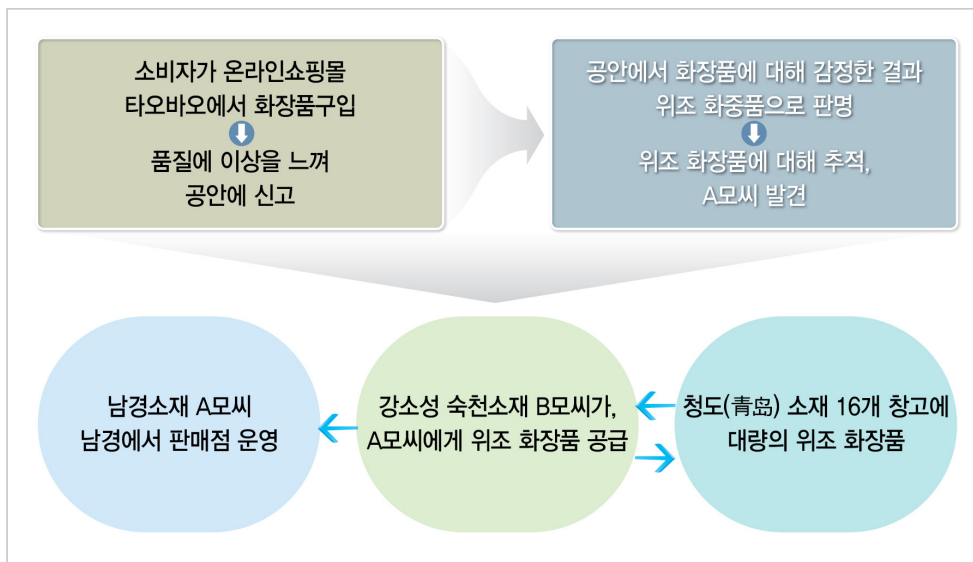


그림57. 강소성 사례가 중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



2) 타오바오의 면세점 쇼핑물 사례³³⁾

2016년 10월, 강소성 서주 주산 공안에 한 소비자의 제보가 들어왔다. “면세점”이라는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에서 외국 브랜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서주 공안은 화장품 감정 결과, 그 화장품은 외국에서 생산한 화장품이 아닌 것임을 확인하였다

타오바오의 상점 기록을 통해서, 공안은 “면세점”이라는 상점의 구체적인 주소와 창고를 알아냈다. 2016년 10월말, 경찰은 강소성 연운항(连云港灌云县)에서 “면세점” 인터넷 상점을 운영하는 李모씨(A모씨)와 黄모씨(B모씨)를 체포했다. 李모씨와 黄모씨는 3개월 동안 한 제품만 판매했으며, 판매액은 약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2천만원), 순이익은 약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원)에 달했다. 같은 날, 산둥성 위해시의 한 창고에서 인터넷 상점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王모씨(C모씨)와 尹모씨(D모씨) 등 19명을 체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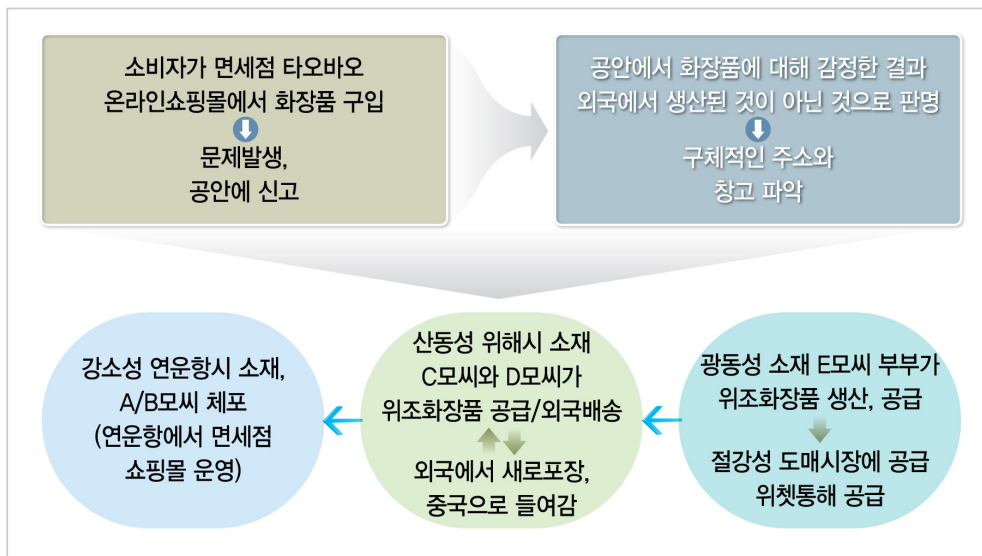
공안은 현장에서는 약 50만 위안(한화 약 8,750만원)의 외국 브랜드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고, 王모씨와 尹모씨에게 위조 화장품을 유통하는 吴모씨와 梁모씨를 체포했다. 이 일당들은 먼저 위조 화장품을 생산해서 외국으로 배송하였고, 외국에서 새로 포장해서 중국으로 다시 들여와서 소비자들에게는 외국에서 구매해온 화장품이라고 속였다.

33) <http://news.jstv.com/a/20170324/1490346870343.shtml>

공안의 조사와 뭇모씨의 진술을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망의 최고 윗선을 찾아냈다.

경찰은 광둥소광(广东韶光)에서 뭇모씨 부부를 체포했다. 뭇모씨(E모씨) 부부는 가족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7개의 기업과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뭇모씨 부부는 외국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절강성의 모 도매시장과 “위챗”을 통해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는 25명이고, 총 2만여 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으며 가격은 300만 위안이다.

그림58. 강소성 연운항에서 발견한 위조 화장품 유통현황



3) 샤먼시의 타오바오 사례³⁴⁾

샤먼시에 있는 한 무역회사(美货贸易(深圳)有限公司)는 2015년 6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타오바오 상점 “美货贸易”에 외국에서 구입해온 유명 화장품이라고 광고 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했다. 한편 샤먼시의 그 판매자는, 심천시 보안구(保安區)에 있는 판매대리상(沙井月德日化批发商行)에게도 화장품을 판매했고, 이 판매대리상은 자신의 타오바오 상점 “名批发”에서 다시 화장품을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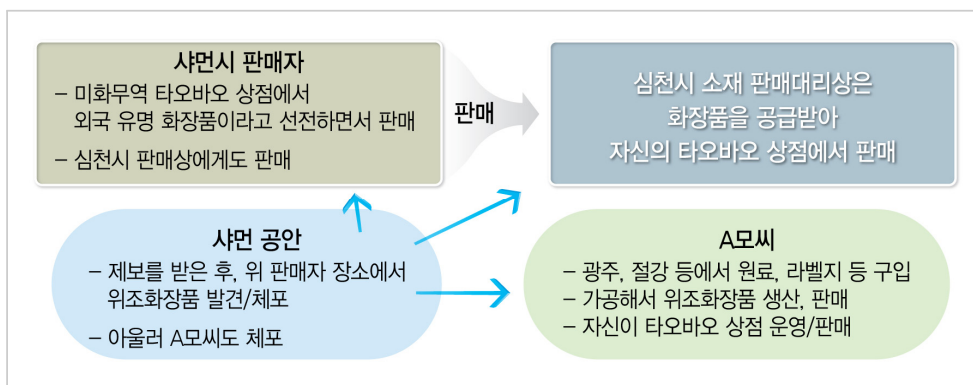
34) <http://news.163.com/17/0510/11/CK2Q7JPA00014AEE.html>

2016년 9월말, 샤먼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샤먼시 사명구(思明区) 주택에 대량의 밀수 화장품과 위조 화장품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2016년 10월, 시장감독 관리국 조사원은 그 장소에 대해 불시 검문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대량의 지방시, 조말론, 라메르, 키엘, 프레쉬, SK-II의 화장품 10 종류를 압수하였고 그 가격만 300여만 위안(한화 약 5억 2천만원)이었다. 2016년 11월 조사원은 압수한 화장품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10 종류 중 7 종류는 위조 화장품으로 판명되었다.

그 이후 시장관리감독국은 공안과 공동으로 이들 위조 화장품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시, 라메르, 키엘, 조말론, 프레쉬, SK-II 등 여러 유명 외국 브랜드 화장품 4,000여개를 압수했고, 압수한 화장품의 가격만 2,000여만 위안(한화 약 35억원)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샤먼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 모두가 미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며, 구매 영수증과 해당 상품의 세관신고서 및 검역 위생증을 증거로 제시하였지만 이 모든 증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림59. 샤먼시에서 발견한 위조 화장품 유통현황



3. 중국의 위조 화장품 시장

중국의 위조 화장품 단속 전문사무소에 의하면 유명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은 주로 광둥성에서 생산되며, 이외에 산둥성의 연태, 청도, 절강성의 이우, 항주, 온주지역과 복건성과 하남성에서도 생산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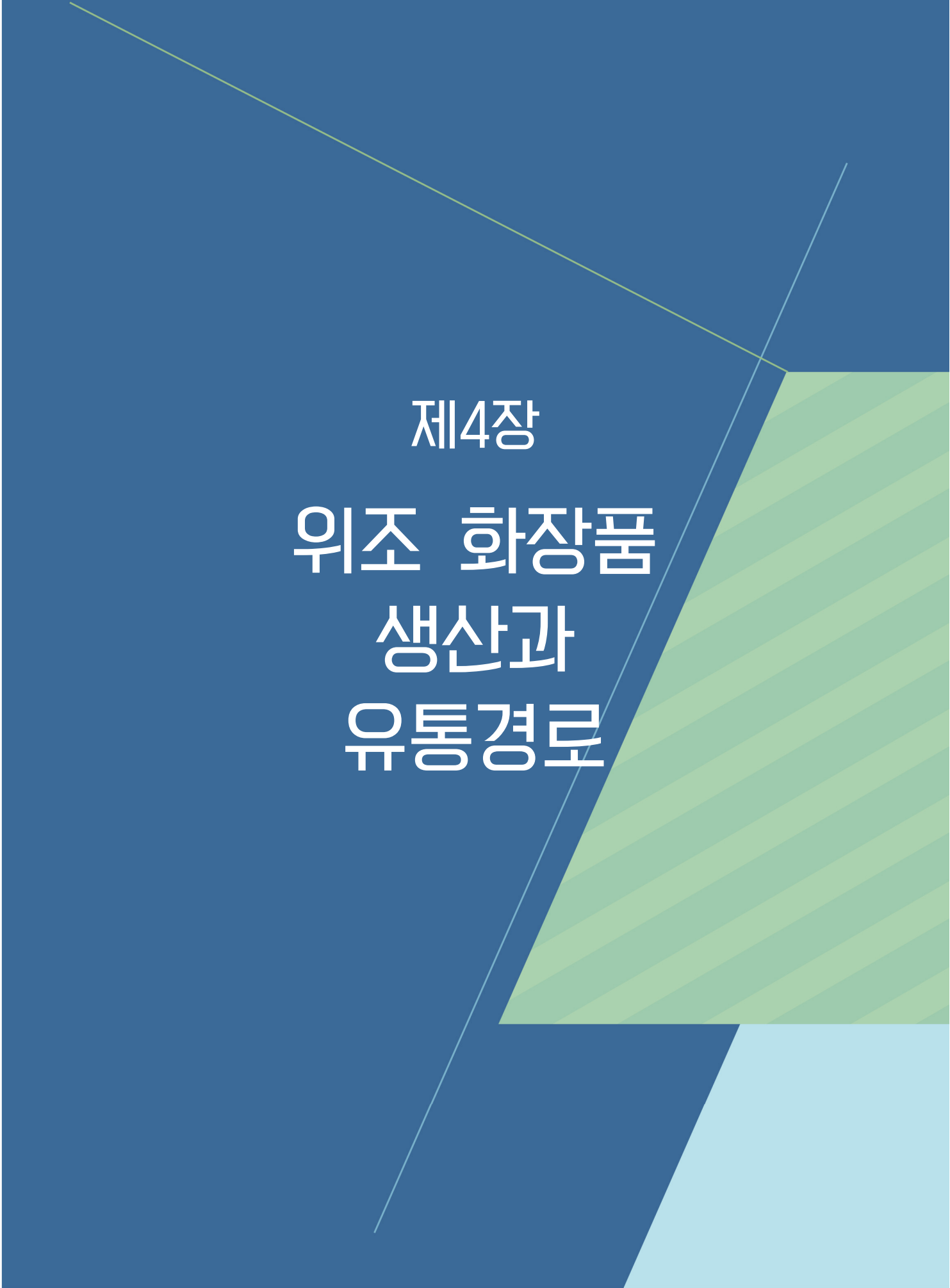
광둥성의 광주, 심천 지역에는 비교적 대규모의 화장품 도매 시장이 있으며, 이러한 대형의 화장품 시장은 진품과 위조품을 섞어 팔고, 인터넷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도매로 판매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특히, 중국의 위조 화장품 단속 전문 사무소가 광둥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80%의 수입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이거나 밀수품이다. 도매상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은 홍콩에서 가지고 온 밀수품과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화장품이다. 심지어 일부 도매상은 외국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재포장 후 정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한다.³⁵⁾

그림60.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주요시장



35) 중국 위조 상품 단속 전문사무소



제4장

위조 화장품 생산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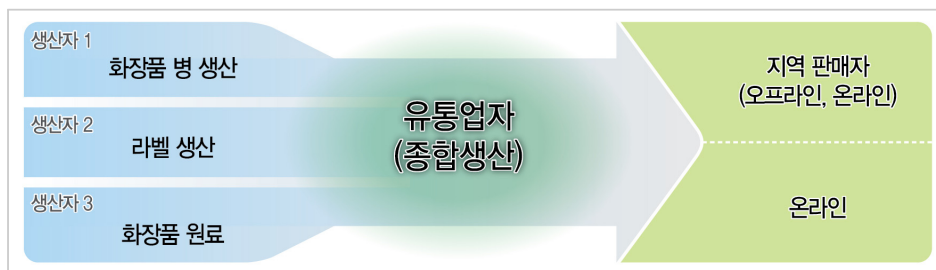
제4장 위조 화장품 생산과 유통경로

1. 생산과 유통경로 파악을 위한 사례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의 생산은 화장품 병, 화장품 원료, 라벨 인쇄 하는 곳 등으로 나뉘서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각 품목을 생산하거나 몇 개의 품목을 한군데서 생산해서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품목을 공급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생산조립 공장에서 완성품을 조립하는 형태이다.

완성품을 생산한 자는 그 물품을 지역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일반적인 생산과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다.

그림61. 중국의 위조 화장품 일반유통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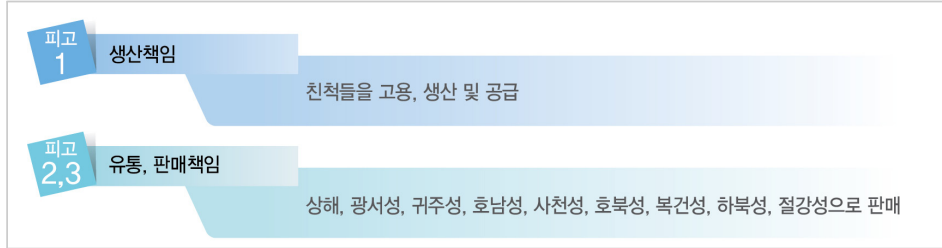
가. 광둥성 동관시(东莞市) 사례³⁶⁾

생산 및 유통관련 사실관계

2014월 12월 5일 광둥성 동관시(东莞市) 고부(高埗) 공안은 고부(高埗) 링위촌(凌屋村)의 한 집에서 “OLAY”, “에스티로더” 상표가 부착된 위조 화장품 4,606개와 31,190개의 화장품 관련 각 부품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의 유통업자는 피고1(卢某波)과 피고2(卢某华), 피고3(林某梅)이었다. 피고1,2는 형제관계였고, 피고2와 3은 부부관계였다.

36) 广东高埗查获假冒伪劣名牌化妆品生产窝点/ 中国防伪报道/ 2015년

그림62. 광둥성 둥관시(东莞市) 사례의 유통현황



생산 공장과 배송관련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위조 화장품 생산 공장은 광둥성 둥관시 고부(高埗)의 임대 장소에 있었으며,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자기 친척들이었다. 새벽 1~2시에 택배 직원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서 물품을 배송하며, 물품 배송 시,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과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자세한 주소는 적혀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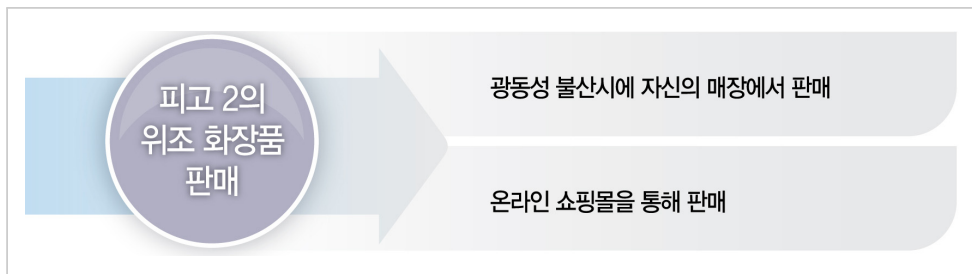
판매된 위조 화장품 브랜드와 유통

판매된 위조 화장품의 브랜드는 OLAY, 에스티로더이다. 한편, 피고1은 “OLAY”등 화장품을 위조 생산을 책임졌고, 피고2,3은 물품을 상해, 광서성, 귀주성, 후난성, 호북성, 사천성, 복건성, 하북성, 절강성으로 유통, 판매하는 것을 책임졌다.

위조 화장품의 판매관련

위조 화장품의 원가는 4위안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60위안부터 100위안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위조 화장품들은 각 지역 마트의 전문 판매대에서 판매되었다. 피고2는 불산시(佛山市)에 화장품 상점과 온라인 쇼핑몰 상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된 위조 화장품을 이를 통해 판매하였다. 위조 화장품들은 진품과의 구별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포장, 화장품의 향, 색, 질감 등이 매우 똑같았다. 이들이 1년간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금액은 약 2,000만 위안(한화 약 35억원)이었다.

그림63. 광둥성 둥관시 사례의 피고2 판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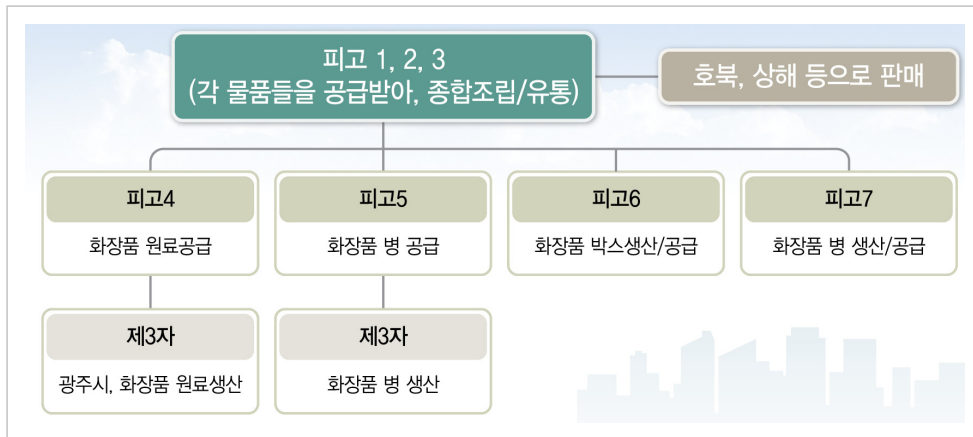
나.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³⁷⁾

생산 및 공급관련 사실관계

2015년 1월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위조 화장품 관련 형사판결문에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7명이며 그 중 유통업자는 3명이었다.

이들 유통 업자 중 피고1,2는 남매관계, 피고2와 3은 부부관계였다. 유통을 책임진 자는 피고2이다. 피고4,5,6,7은 화장품 원료, 화장품 병, 화장품 박스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또는 직접 생산하여 피고1,2,3에게 공급하였다.

그림64. 강소성 염성시 사례의 유통현황



물품 유통 및 판매 관련 사실관계

위에서 보듯이 화장품 병, 화장품 박스 등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자는 각각 상이하다. 각각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 1,2,3은 포장기계, 액체주입 기계, 마킹기계 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공장에서 완성하였다. 완성품은 피고1,2,3이 평소 알고 지내던 호북성, 상해 등의 지인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급하거나 타오바오 온라인쇼핑몰에 공급하였다.

대금지급 관련 사실관계

피고들 간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한 이후 대금 지급 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알리페이를 통해 지급하였다.

37) <http://wenshu.court.gov.cn/>, 강소성 중급인민법원, (2014)盐知刑初字第00014号, 2015.7.1. 판결.

위조 판매된 화장품 브랜드

이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한 제품은 4개 브랜드 제품인데(제품명: 克丽缇娜, 宝相花, 金美沙龙, 唯真) 이들 제품은 중국 화장품 브랜드였고, 나머지 1개 브랜드는 타이완 브랜드였다.

판결결과

2015년 1월 28일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위조 화장품을 생산, 판매한 피고인 7명에게 사안에 따라 징역 2년부터 3년6개월까지, 벌금은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부터 40만 위안(한화 약 7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다. 절강성 태주 초강(台州椒江) 사례³⁸⁾³⁹⁾

위조 화장품의 발견관련 사실관계

2016년 2월 태주 초강(台州椒江)의王女士가 온라인에서  제품이 저렴하다는 것을 보고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제품의 외관이나 제품의 향기 등에서는 전혀 차이를 못 느꼈다. 그러나 사용이후 느낌이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제품과는 다른 것을 느껴서 지방의 해당기관에 신고하였고, 해당기관은 온라인 타오바오에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

해당기관은 초강(台州椒江), 온주(温州), 하남성 평정(河南省平顶), 하얼빈(哈尔滨)까지 단속해서 위조 화장품 유통자와 판매자를 체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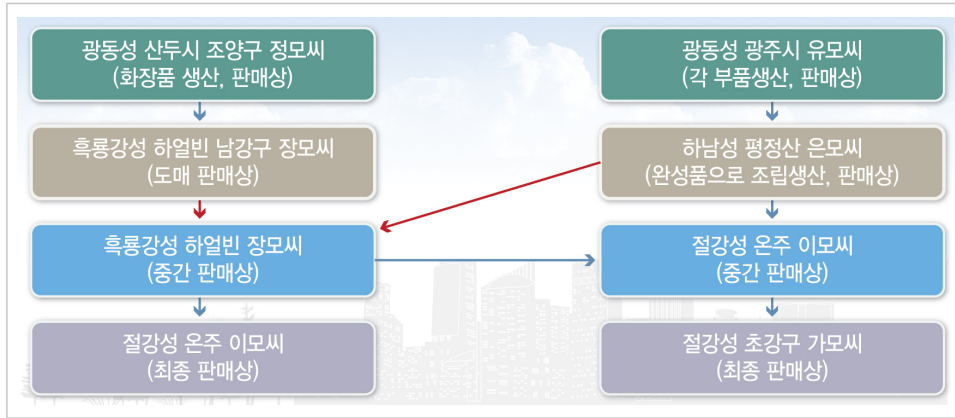
위조 화장품의 생산, 유통관련 사실관계

이번에 발견된 위조 화장품은 광둥성의 산두시(汕头市)와 광둥성의 광주시에서 생산해서 하얼빈(哈尔滨)과 하남성, 온주(温州), 태주 초강(台州椒江)으로 유통되어, 마지막으로 태주 초강(台州椒江)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지역의 성(省)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고의 숫자만 해도 15명이다.

38) <http://zj.zjol.com.cn/news/558269.html>

39) <http://news.163.com/17/0217/09/CDFGI2KE0001875P.html>

그림65. 절강성 태주 초강(台州椒江) 사례의 유통현황



판매된 위조 화장품 브랜드

이들이 판매한 위조 화장품의 브랜드는 유명한 외국 화장품이었다. 단속된 위조 화장품을 정품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8억 위안(한화 약 1,400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림 66. 절강성 태주 초강(台州椒江) 사례의 위조 화장품 유명브랜드



그림67. 절강성 태주 초강(台州椒江) 사례의 위조 화장품 단속사진



라.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白云区)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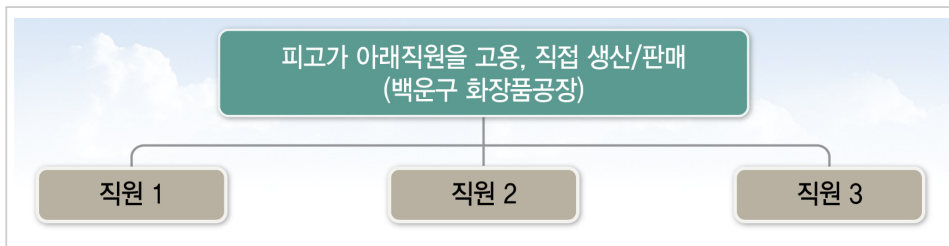
1) 백운구 균화가(白云区均禾街)⁴⁰⁾

생산관련 및 판결결과 사실관계

2015년 7월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 공안은 백운구 균화가 석마촌(白云区均禾街石马村小马南一巷4号四楼化妆品工厂)의 화장품 공장을 단속하였다. 공안은 단속현장에서 포장기계, 화장품 용액 혼합기계, 화장품 원료, 병뚜껑, 포장 박스 등을 압수하였다. 조사결과 피고(曾某甲)은 직원4명을 고용해서 위 화장품 공장 주소에서 “DIOR”, “CHANEL”등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2016년 1월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은 피고(曾某甲)에게 징역 8개월, 벌금 5천 위안(한화 약 87만 5천원)을 부과하였다.

그림68. 백운구 균화가(均禾街) 사례의 유통현황



2) 백운구 가화가(白云区嘉禾街)⁴¹⁾

생산관련 사실관계

피고(刘某)은 타인(张)에게 고용되어 2015년 5월부터 광주시 백운구 가화가 학태로(鹤泰路87-89号惠信工业区F栋4楼)에서 메이블린 등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2015년 11월 백운구 공안국은 위 주소에서 “메이블린” 마스크라 등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였다.

위조 화장품 브랜드와 판결결과

이번에 단속한 위조 화장품의 브랜드는 메이블린, MAXFACTOR, NIVEA, MG 등 화장품이었다. 2016년 4월 14일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에서는 위조 화장품을 생산, 판매한 피고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천 위안(한화 약 35만원)을 부과하였다.

40)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2016)粤0111刑初251号, 2016. 1. 27. 판결

41)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2016)粤0111刑初998号, 2016. 4. 14. 판결

그림69. 백운구 가화가(嘉禾街) 사례의 유통현황

3) 백운구 동화가(白云区同和街)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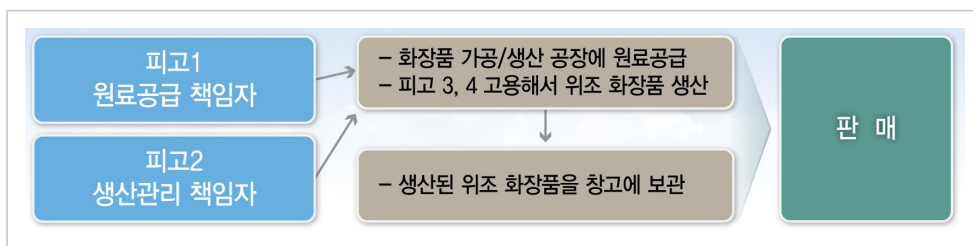
2014년 말부터, 피고1(钟모씨)은 광주시 백운구 동화가 운상로[同和街 云祥路翠竹园21栋4楼(가공 및 생산 장소)]에 원료를 공급했고, 피고2(黄모씨)는 피고3,4(다른 사람 2명)을 고용해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피고1,2는 광주시 백운구 가화가[嘉禾街彭西华联工业区2号厂房]창고에 위조 화장품을 보관했고, 백운구 화장품 전문 판매점(兴发广场二期兴裕大街12号化妆品店)에서 판매했다.

공안은 2015년 6월 생산 장소에서 대량의 위조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 및 생산기계를 발견했다. 발견된 위조 화장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50만 위안(한화 약 4억 4천만원) 정도였다.

피고들은 사안에 따라, 징역3개월부터 4년, 벌금은 8천 위안(한화 약 140만원)부터 10만 위안(한화 약 1,750만원)까지 부과되었다.

그림70. 백운구 동화가 사례의 유통현황



42)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2015)穗云法刑初字第2528号, 2015년 11월 11일 판결, 동 판결문에는 위조 화장품이 어느 브랜드인지는 명시되지 아니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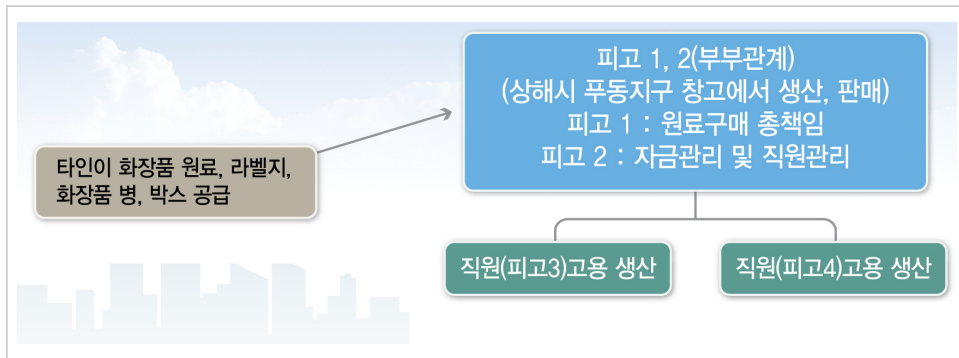
마. 상해 푸둥(浦东) 사례⁴³⁾

생산, 판매관련 사실관계

피고1과 피고 2는 부부관계로, 피고3,4를 고용해서 상해시 푸둥지구(浦东新区高东镇赵高路958号) 창고에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1은 원료구매, 상품판매를 총 책임졌고, 피고2는 자금관리 및 직원관리를 책임졌다. 한편 피고1,2는 타인으로부터 화장품 원료, “L'OREAL” 라벨지, 화장품 병, 박스 및 라벨 등을 구입하여 자신의 공장에 비치해 놓고, 피고3,4로 하여금 라벨을 부착하고 박스포장을 하는 등 완성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림71. 상해 푸둥 사례의 유통현황



적발된 위조 화장품 관련

피고1,2의 창고에서 “L'OREAL”화장품 9,316병과 대량의 미완성 제품, 라벨지, 공기펌프, 금박기계를 발견하였으며, 발견된 위조 화장품을 정품가격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30만 위안(한화 약 5,250만원) 정도였다.

위조 화장품의 중간 판매 가격과 처벌결과

피고1,2는 L'OREAL 위조 화장품 1개당 30위안의 가격에 천진에 있는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 1,2,3,4는 사안에 따라 각각 1년6개월부터 3년6개월의 징역과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부터 9만 위안(한화 약 1,57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43) 상해 푸둥신구 인민법원, (2015)浦刑(知)初字第3号, 2015년 11월 17일 판결

바. 절강성 동양시(东阳市) 사례44)

생산관련 사실관계

절강성 이우시(义乌市)의 피고1,2(何모씨 및 杨모씨)는 부부관계로 2015년 8월부터 화장품 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동 기업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기업처럼 보였다.

2017년 3월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기관에 제보를 하여 조사를 시작하여 단속하였다. 단속 시 현장에는 18대의 생산기계와 179만개의 위조 화장품과 포장박스 440만개가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2015년 말부터 이 기업은 유명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자신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고, 생산된 상품들은 모두 외국으로 수출되었다. 대부분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수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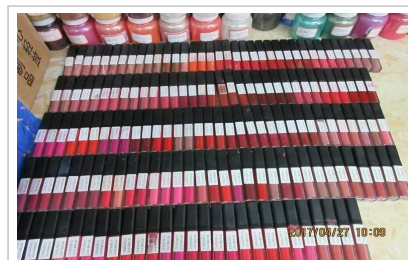
그림72. 절강성 동양시 사례의 유통사실 관계



위조 화장품 브랜드 및 위조 화장품 가격

이 기업에서 생산한 위조 화장품의 브랜드는 시세이도, L'OREAL, NARS, 에뛰드하우스, CLINIQUE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이었고, 이 기업이 생산한 위조 화장품의 원가는 1위안 남짓이나, 포장되어 판매되는 위조 화장품의 가격은 80에서 150위안이었다.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화장품 가격은 정품으로 환산 하였을 경우, 1억 위안(한화 약 175억원)정도이다.

그림73. 절강성 동양시 사례의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44) <http://www.eslideoem.com/infodetail-281.html>

그림74. 절강성 동양시 사례의 생산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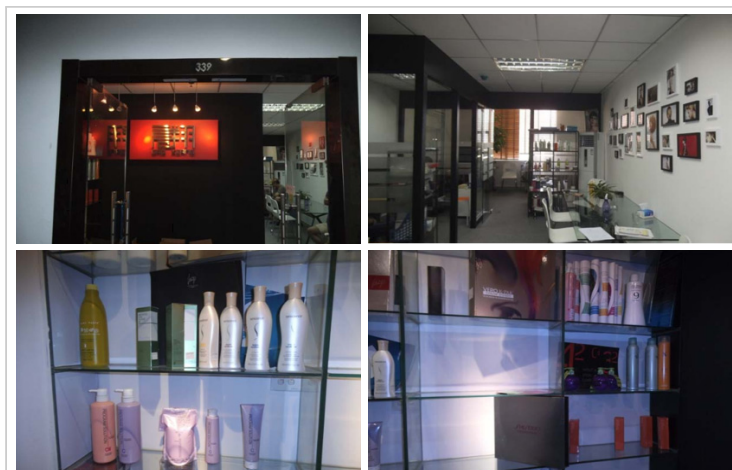


사. 심천시 사례⁴⁵⁾

위조 화장품 발견 사실관계

2014년도 중국의 위조 화장품 전문 단속사무소의 조사원은 온라인 타오바오에서 시세이도 위조 화장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조사결과 판매자는 심천에 소재하는 자였다. 조사원은 상품의 유통을 추적한 결과 오프라인 상점은 심천시 보안구(寶安區) 동명(東明) 모 빌딩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림75. 심천시 보안구(寶安區) 동명(東明) 소재 오프라인 상점



45) 중국 위조품 전문 단속사무소

조사원은 오프라인 상점에 대해 약3개월의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위조 화장품 공장을 발견하였다.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심천시 보안구(寶安區) 용승신촌(龍勝新村)에 위치하였다.

그림76. 심천시 보안구(寶安區) 용승신촌(龍勝新村)의 생산공장



아래는 동관시 황강진 사패촌(東莞黃江鎮社貝村)에서 위치한 라벨공장이다.

그림77. 동관시 황강진 사패촌(東莞黃江鎮社貝村)의 라벨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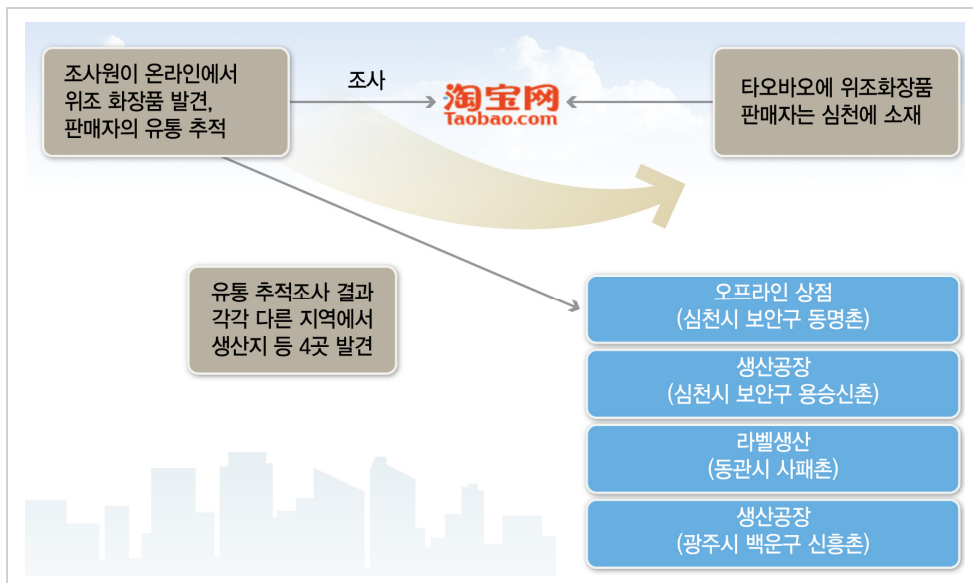


아래는 광주시 백운구 인화진 신흥촌(白云区人和镇新兴村)에 있는 생산 공장인데 단속결과 이들은 모두 다 처벌되었다.

그림78. 광주시 백운구 인화진 신흥촌(白云区人和镇新兴村)의 생산공장



그림 79. 심천시 사례의 유통현황



아. 우리기업 사례

1) LANEIGE와 IOPE⁴⁶⁾

사실관계

피고1 (马某甲, 남자, 1982년생), 피고2 (马某乙, 여자, 1983년생)은 2014년 5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 즉 광둥성 광주시 백운구 기장로 이발국제C구 134호(广州市白云区机场路怡发国际C区134档)에서, LANEIGE와 IOPE 에어쿠션 제품을 각각 22위안 및 21위안에 불법 판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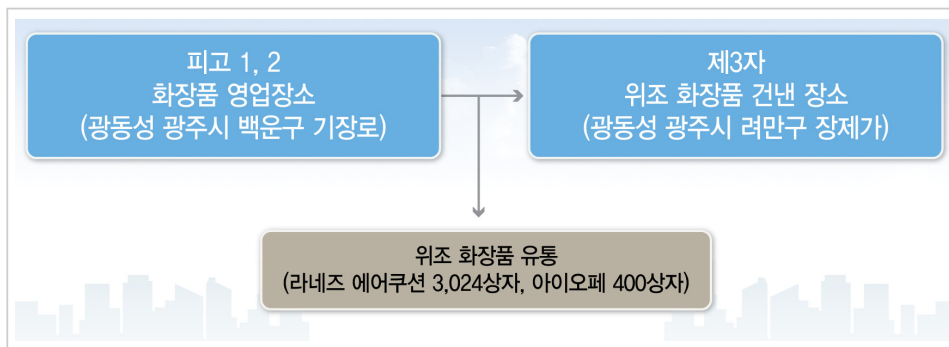
이들 중 피고1(남자)은 2014.5.26. 광둥성 광주시 려만구 장제가 15호 문 앞(广州市荔湾区长堤街15号门前)에서 타인에게 LANEIGE와 IOPE 에어쿠션 위조 화장품을 넘겨주다가, 공안에 의해 현장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공안은 LANEIGE 에어쿠션 3,024상자와 IOPE 400상자를 압수하였다. 압수된 제품은 감정을 거친 결과, 모두 다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었고, 위조 화장품 제품가격은 74,928위안(한화 약 1,300만원)에 상당하였다.

판결결과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위조 화장품인 것임을 명백하게 알고 판매하였고, 그 판매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한 점을 들어, 광주시 려만구 인민법원은 형법 제21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12.3.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과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의 벌금을 가하였다.

그림80. LANEIGE와 IOPE사례의 유통현황



46) <http://wenshu.court.gov.cn/>, 广东省广州市荔湾区人民法院刑事判决书, (2014)穗荔法知刑初字第5号, 2014.12.3. 판결.

시사점

판결문에는 피고1,2가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명칭 대신 판매한 지역이 명시되었는데,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기장로 이발 국제C구(广州市白云区机场路怡发国际C区134档)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피고인들의 영업장을 수색한 결과 그곳에서 위조 화장품 관련 범죄에 사용된 공구 등이 나타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영업장(백운구 기장로)에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영업장 주소를 바이두에서 검색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역은 외국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았다.

피고인들은 위조 화장품을 자신이 판매하는 영업장소에서 넘겨주지 아니하고 제3의 장소인 광주시 려만구 장제가(广州市荔湾区长堤街15号门)에서 넘겨준 것은, 백운구 기장로에 있는 많은 외국화장품 판매 상점이나 자신들의 위조 화장품 생산, 판매지역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 판결문의 사례와 비슷하게 영업장(백운구 기장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으니, 우리기업들이 이곳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과 접촉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81. 광주시 백운구 기장로에 있는 외국 화장품 판매기업



2) INNISFREE⁴⁷⁾

사실관계

피고1(曹景亮, 남, 1991년생)은 산둥성에, 피고2(张文利, 여자, 1991년생)는 강소성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1은 타인2명[가호(贾虎), 이국군(李国军)]에게 고용되어,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고 그 장소에서 innisfree 및 ETUDEHOUSE 위조 화장품을 공급 받았다. 그 위조 화장품은 위의 가호(贾虎)가 광둥성의 모 공장에 의뢰하여 만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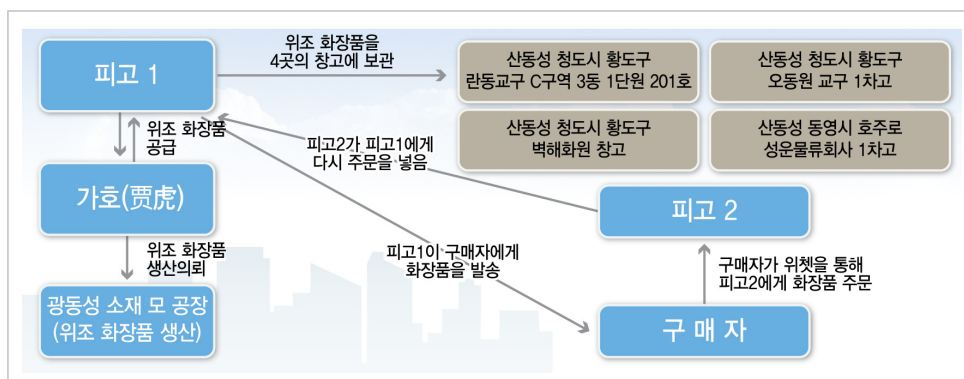
피고2는 위챗을 통해 화장품 주문을 받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1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1은 가호(贾虎)로부터 받은 위조 화장품을 바로 위챗 구매자에게 발송하였다. 위챗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만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원)이었다.

공안은 2016년 1월 피고1,2를 체포하고, 청도시 황도구 란둥교구에 있는 창고와 성운물류회사 및 다른 창고에서 대량의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였다. 당시 발견한 위조 화장품은 아래와 같다.

표23. 발견된 INNISFREE 관련 위조 화장품

창고(위치)	발견된 위조 화장품
산둥성 청도시 황도구 란둥교구 C구역 3동 1단원 201호	innisfree 폼클렌징 19개, 파우더 536통, 립스틱 100개, 마스크라5개
산둥성 청도시 황도구 벽해화원 1차고	innisfree 폼클렌징 8,985개, 파우더 39,060통 ETUDEHOUSE의 아이브로우 7개
산둥성 동영시 호주로 성운물류회사 및 산둥성 청도시 황도구 오동원 교구 1차고	innisfree 폼클렌징 1,095개, 파우더 28,832통, 립스틱 26,990개, 마스크라 53,216개, innisfree의 립스틱 포장박스 77,000개, 파우더 라벨지 50,000개, ETUDEHOUSE의 아이브로우 12,480개, 리퀴드 아이라이너 26,208개와 리퀴드 아이라이너 포장박스 72,450개
발견된 위조 화장품 금액	약 380만 위안(한화 약 6억 6천만원)

그림82. INNISFREE 사례의 유통현황



47) <http://wenshu.court.gov.cn/>, 江苏省徐州市中级人民法院 刑事判决书, (2016)苏03刑初74号, 2016.12.23. 판결

판결결과

강소성 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2016년 12월 13일 피고1,2가 행한 위조 화장품 판매행위의 심각성을 들어, 피고1에게는 징역4년과 벌금 700만 위안(한화 약 12억원), 피고2에게는 징역4년에 벌금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7천만원)을 선고하였다.

3) HERA 등

LANEIGE, IOPE, HERA사건 사실관계⁴⁸⁾

피고1(崔某甲)과 피고2(骆某)는 광주시 백운구의 모 장소에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다가 2014년 7월16일 체포 되었다. 피고1은 공장과 창고를 임대하며 생산과 관리를 책임졌고, 피고2는 피고1을 보조하였다.

동 장소에서 공안은 'LANEIGE, PUPA, IOPE, HERA' 위조 화장품과 포장박스 및 생산기계 2대를 압수 하였다. 감정결과 LANEIGE 에어쿠션 등 위조 화장품의 가격만 약 290만 위안(한화 약 5억원)이었다. 2015년 1월 22일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은 피고1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9만 위안(한화 약 1,600만원), 피고2에게는 징역 7개월에 벌금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을 선고하였다.

LANEIGE 사건 사실관계⁴⁹⁾

피고1(郭某甲), 피고2(郭某乙), 피고3(郭某丙), 피고4(洪某)는 타인에게 고용되어, 광주시 백운구 균화가 쌍 화공업구 1동 아보 가죽공장 4층 공장(均禾街双和工业区一楼雅宝皮具厂四楼工场)에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생산한 위조 화장품은 광주시 백운구 균화가 장밤신촌 3가 1호(均禾街长湓新村三街1号)와 균화가 취화서가 4길 2호 1층(均禾街聚和西街四巷2号一楼) 두 창고에 보관했다. 2015년 8월 12일, 공안은 생산현장과 공장에서 위 피고인 4명을 체포하고, LANEIGE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였는데, 감정 결과 위조 화장품의 가치는 3,526,660위안(한화 약 6억원)이었다. 2015년 12월 29일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7개월부터 10개월, 벌금은 각각 2천 위안(한화 약 35만원)부터 5천 위안(한화 약 87만원)까지 선고하였다.

LANEIGE, IOPE, HERA, Sulwhasoo 사건 사실관계⁵⁰⁾

피고1(张某甲)은 2015년 2월부터 광주시에 있는 모 건물의 장소를 임대, 상점으로 이용하여 화장품을 판매 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피고1은 피고2(张某乙), 피고3(刘某甲), 피고4(蔡某)를 고용하고 뒷 건물을 임대 해 창고로 사용하면서 HERA, IOPE, LANEIGE, Sulwhasoo 등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다. 2016년 1월 7일 17시경, 공안은 동 장소에서 4명의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HERA, IOPE, LANEIGE, Sulwhasoo 상표의 BB크림, 마스크팩, 아이크림 등 위조 화장품을 압류했다. 감정 결과 위조 화장품들의 가치는 772,875위안(한화 약 1억 3천만원)이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은 피고들에 대해 각각 6개월에서 1년 2개월, 벌금은 각각 3천 위안(한화 약 52만원)부터 5만 위안(한화 약 870만원)까지 선고하였다.

48) (2015) 穗云法知刑初字第17号, 2015.1.22. 판결.

49) (2015) 穗云法刑初字第3319号, 2015.12.29. 판결.

50) (2016) 粤0111刑初1375号, 2016.6.14. 판결

2. 분석

가. 생산

1) 아웃소싱을 통해 위조 화장품 생산, 조립

위조 화장품을 생산, 유통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다.⁵¹⁾ 개인사업자들은 부품생산에서 종합생산까지 처리하는 생산라인을 다 구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화장품 원료, 화장품 병, 화장품 포장 박스, 라벨 등을 나눠서 생산하거나 또는 위탁 생산시켜 각각의 제품을 완성품으로 조립한다.

그림83. 위조 화장품의 부품, 원료 사진



앞에서 살펴본 위조 화장품 생산과 유통경로 관련 사례를 보면 위조 화장품의 최종 생산, 조립 하는 자는, 유통업자 또는 하위 생산업자로부터 화장품 병, 라벨 등을 공급받아 마지막으로 생산 조립하였다.

51) 중국 위조품 단속 전문사무소

표24. 위조 화장품의 생산방법

순번	사 례	위조 화장품 생산방법
1	광둥성 동관시(东莞市) 사례	최종 생산, 조립하는 자가 유통업자 또는 부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생산
2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	
3	절강성 태주(台州) 사례	
4	백운구 군화가(白云区均禾街) 사례	
5	백운구 가화가(白云区嘉禾街) 사례	
6	백운구 동화가(白云区同和街) 사례	
7	상해 푸둥(浦东) 사례	
8	절강성 동양시(东阳市) 사례	
9	심천시 사례	

2) 최종생산자와 직원은 가까운 관계

생산인력은 현지인을 위주로 하면서 가까운 지인들을 고용해서 생산한다. 아울러 유통업자는 형제 관계 또는 부부관계이며 그들의 역할은 나눠져 있다. 그리고 생산업체의 사장은 인력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대신 지인을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외부에서 볼 때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

표25. 위조 화장품 생산자와 직원관계

순번	판결 사례	생산자와 직원 등의 관계
1	광둥성 동관시(东莞市) 사례	최종생산자는 부부관계, 직원과는 친척관계
2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	최종생산자는 부부 및 형제관계, 직원과는 지인관계
3	절강성 태주(台州) 사례	최종생산자와 부품공급자는 지인관계
4	광둥성 백운구 군화가(白云区均禾街) 사례	최종생산자와 직원은 지인관계
5	광둥성 백운구 가화가(白云区嘉禾街) 사례	최종생산자와 직원은 지인관계
6	광둥성 백운구 동화가(白云区同和街) 사례	최종생산자와 직원은 지인관계
7	상해 푸둥(浦东) 사례	최종생산자는 부부관계, 직원과는 지인관계
8	절강성 동양시(东阳市) 사례	최종생산자는 부부관계, 직원과는 지인관계
9	심천시 사례	최종생산자와 직원은 지인관계

3) 1개 생산 공장에서 여러 개 브랜드 화장품을 위조 생산

위조 화장품 생산자들은 어느 특정 브랜드를 겨냥해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 또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제품에 대해 위조 생산한다. 따라서 단속을 통해 위조 화장품 생산자의 창고를 급습하면 그곳에서 여러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이 발견된다.

표26. 1개의 공장에서 여러 브랜드 위조 화장품 생산

순번	판결 사례	브랜드 별 위조 화장품
1	광둥성 동관시(东莞市) 사례	OLAY, 에스티로더
2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	중국브랜드(克丽缇娜, 宝相花, 金美沙龙, 唯真)
3	절강성 태주(台州) 사례	AMWAY, LANCOME, ESTEE LAUDER, CHANEL, DIOR
4	광둥성 백운구 균화가(白云区均禾街) 사례	DIOR, CHANEL
5	광둥성 백운구 가화가(白云区嘉禾街) 사례	메이블린, MAXFACTOR, NIVEA, MG
6	절강성 동양시(东阳市) 사례	시세이도, L'OREAL, NARS, 에뛰드하우스, CLINIQUE

4) 위조 화장품 생산지

가) 광둥성

광둥성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70%를 점하고 있다. 광둥성 중에서도 백운구 삼원리(三元里) 일대는 광둥성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80%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OEM 화장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미용전문기업, 화장품 포장재료 전문기업 등이 있다.⁵²⁾

광둥성이 화장품 산업의 중심이 된 이유는 연안지방으로 무역의 발달과 화장품 원료의 대량 생산, 화장품 생산 기계들의 대량 생산, 화장품 병과 포장박스 및 그것들의 대량생산, 전문 마케팅, 창고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집중되었다.⁵³⁾

광둥성 화장품 기업과 위조 화장품 생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관성이 있다.

52) http://www.sohu.com/a/161615497_732088

53) http://www.gdszx.gov.cn/zxhy/qthy/2017/wyta/201701/t20170113_442393.htm

한편 앞서 살펴본 판결문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광둥성에서 위조 화장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즉, 광둥성이 위조 화장품 생산의 진원지이다.

그림84. 광둥성 소재 화장품기업과 위조 화장품 생산기업과의 연관성관계



나) 불합격으로 적발된 화장품기업

광주시와 중경시 식약품관리감독국에서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합격한 화장품 회사들이 소재한 지역이 대부분 광둥성이었으며, 그 기업들의 불합격된 화장품 내용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위조 화장품을 생산해서 각 지역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1) 희천 화장품(喜倩化妆品) 회사

희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 회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결과⁵⁴⁾, 동 회사는 백운구 흥발광장 도매시장(兴发广场)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화장품의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희천 화장품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이트 일부에 보면 한국 화장품도 도매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화장품 일부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첨가된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 중 일부는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54) <http://4262347.shop.cnlist.org/info.html>

그림85. 희천 화장품 회사(喜倩化妆品) 사이트



(2) 광주시 풍운화장품회사

한편, 중경시 식약품관리감독국에 의해 적발된 광주시 풍운화장품회사(广州市丰韵化妆品有限公司)는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를 첨가해서 생산한 화장품이 위생허가 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 기업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⁵⁵⁾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6. 광주시 풍운화장품회사의 사이트



55) <https://www.1688.com/store/9478508F95986ABB9CE7880CBAF34627.html?spm=0.0.0.0.BduPcX>

앞서 본 희천 화장품회사와 풍운 화장품회사는 모두다 광주시 백운구에 위치하고 있다.

표27. 불합격된 화장품 회사의 명칭과 주소

불합격된 화장품회사 명칭	주 소
광주시희천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喜倩化妆品有限公司)	광주시 백운구 흥발시장 (中国 广东 广州市白云区 白云区兴发广场二期北路3号)
광주시풍운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丰韵化妆品有限公司)	광주시 백운구 (中国广东广州市广州市白云区鹤泰路91号)

한편, 희천 화장품 회사는 백운구의 흥발광장 도매시장⁵⁶⁾에 위치하고 있는데 흥발광장 도매시장은 규모면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화장품 교역중심지이며, 시장규모는 약 25,000평으로, 입주한 상점은 약 1,500개이다. 이곳에 있는 희천 화장품 회사(喜倩化妆品)가 불합격한 화장품 문제로 단속된 사실을 볼 때 최대 화장품 도매시장인 흥발시장도 위조 화장품 생산지와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87. 광주시 백운구 흥발광장 도매시장



56) <https://baike.baidu.com/item/%E7%99%BD%E4%BA%91%E5%8C%BA%E5%85%B4%E5%8F%91%E5%B9%BF%E5%9C%BA/1136094?fr=aladdin>

다) 판결문에 나타난 위조 화장품 기업과 생산지

한편 위조 화장품을 둘러싼 민, 형사 사건의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생산지를 보면 민사사건의 약 76%, 형사사건의 약 85%가 광둥성에서 위조 화장품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둥성이 위조 화장품의 진원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분석한 화장품을 둘러싼 민사 상표분쟁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판결을 통해 아래 기업들에 대해 화장품의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들 기업들의 소재지는 광주시 백운구이다.

표28. 상표 분쟁 민사사건 판결문 상, 위조 화장품 기업 명칭과 주소

기업명칭	주 소	사건번호
광주시구엽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九叶化妆品有限公司)	광주시 백운구 (广州市白云区太和镇夏良村沙田工业龙良路3号)	(2014)穗云法知民初字第55号
광주수녹수화장품유한공사 (广州水绿秀化妆品有限公司)	광주시 백운구 (中国 广东 广州市白云区白云大道北12号永泰商务中心)	(2012)深中法知民终字第777号
광주시백운동양력화장품장 (广州市白云东洋丽化妆品厂)	광주시 백운구 (中国广东广州市白云区石井镇石沙公路246号)	(2012)深中法知民终字第777号

아울러, 중국인들이 우리기업의 화장품을 위조 생산, 판매하다가 처벌을 받은 아래 형사 사건에서, 위조 화장품의 생산지는 광둥성이었으며, 그 중 4곳이 백운구에서 생산한 것과 관련되었다.

표29. 우리기업의 화장품을 위조, 생산한 생산지

우리기업의 화장품 명칭	생산지	사건번호
LANEIGE, IOPE사건	광주시 백운구 (广州市白云区机场路怡发国际C区134档)	(2014)穗荔法知刑初字第5号
INNISFREE사건	광둥성	(2016)苏03刑初74号
라네즈, 헤라사건	광주시 백운구 (白云区某街某村某街某巷)	(2015)穗云法知刑初字第17号
라네즈 사건	광주시 백운구 (白云区均禾街双和工业区一楼雅宝皮具厂四楼工场)	(2015)穗云法刑初字第3319号
라네즈, 헤라, 아이오페 사건	광주시 백운구	(2016)粤0111刑初1375号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달리, 위조 화장품 관련기업은 표시되지 않고 대신 위조 화장품 생산, 판매자, 즉 피고(피고의 성명도 李모씨 등으로만 표기)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기업명단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생산지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광둥성이 위조 화장품의 진원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판결문은 사건에 따라 생산지의 명칭이 완전히 기재된 것도 있고,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도 있었다.

한편, 본 보고서의 위조 화장품 유통경로 파악을 위한 사례에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한 자들은 대부분 광둥성 광주시에서 생산해서 각 지방으로 유통하기도 하고, 또는 광주시에서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

표30. 위조 화장품 생산지 사례

화장품 명칭	사 례	위조 화장품 (완성품 또는 부품)생산지
OLAY 등	광둥성 둥관시(东莞市)	광둥성 둥관시에서 위조 화장품 발견
克丽缇娜 등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광주시에서 원료생산
LANCÔME 등	절강성 태주(台州) 사례	광주시에서 화장품생산
DIOR 등	백운구 균화가(均禾街)	광주시에서 화장품 및 생산시설 발견
NIVEA 등	백운구 가화가(白云区嘉禾街)	광주시에서 화장품 생산
L'OREAL 등	상해 푸둥(浦东)	상해 푸둥에서 화장품 생산
CLINIQUE 등	절강성 동양시(东阳市)	절강성 이우에서 화장품 생산
시세이도	심천시	심천 및 둥관에서 생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의 감독조사 결과 불합격으로 적발된 화장품회사, 판결문상 위조 화장품 기업과 생산자, 위조 화장품 판결문 통계분석 사실을 통해서 광둥성은 위조 화장품의 진원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유통

1) 각 지역으로 유통

위조품 생산은 대부분 밤에 이뤄지며, 광둥성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은 광둥성 자체에서도

판매 유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위조 화장품은 소비자들이 정품과 위조 상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2선(线) 내지 5선(线) 지역에 있는 판매상들을 통해 유통된다.

이와 같이 위조 화장품은 중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하며,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이 잠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중국내로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수입품이라고 속이기도 한다.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를 보면 광둥성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이 3선(线) 도시인 염성시의 판매상에게, 절강성 태주 초강 사례는 광둥성에서 생산되어 2선(线) 도시인 하얼빈 남강구의 판매상에게 유통되었다. 유통업자와 판매자의 불일치는 위조 화장품 단속에 애로를 겪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표31. 위조 화장품 생산지와 판매지 사례

구 분	위조 화장품 생산지	위조 화장품 판매지	
		지 역	지역도시의 선(线) 별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	광둥성 동관시	염성시(盐城市)	3선(线) 도시
절강성 태주초강(台州) 사례	광둥성 광주시	하얼빈시(南岗区)	2선(线)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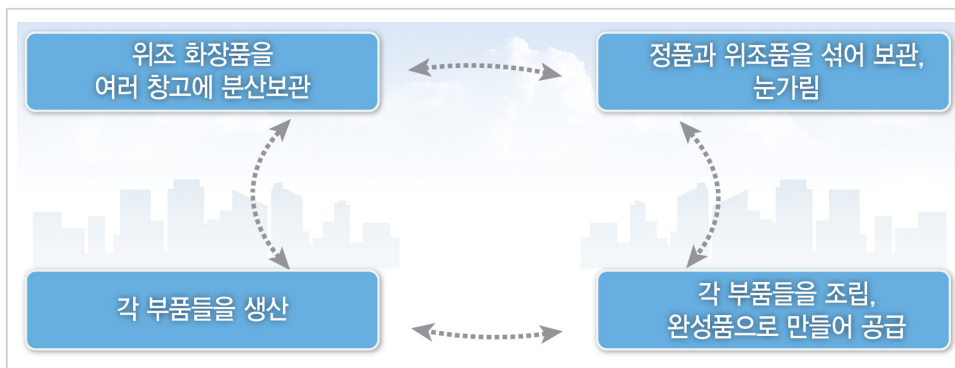
그림88. 위조 화장품의 유통현황



2) 여러 창고에 분산보관

위조 화장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는 위조 화장품을 여러 개의 창고에 분산해서 보관하며 때로는 정품과 위조 화장품을 섞어 놓아 눈가림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창고에 설비를 갖추고, 화장품의 각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한다.

그림89. 위조 화장품의 분산보관 현황



INNISFREE 위조 화장품 사건에서 피고인은 광둥성에 있는 모공장에 위탁생산을 해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을 청도시 황도구 및 동영시에 있는 창고에 분산 보관하다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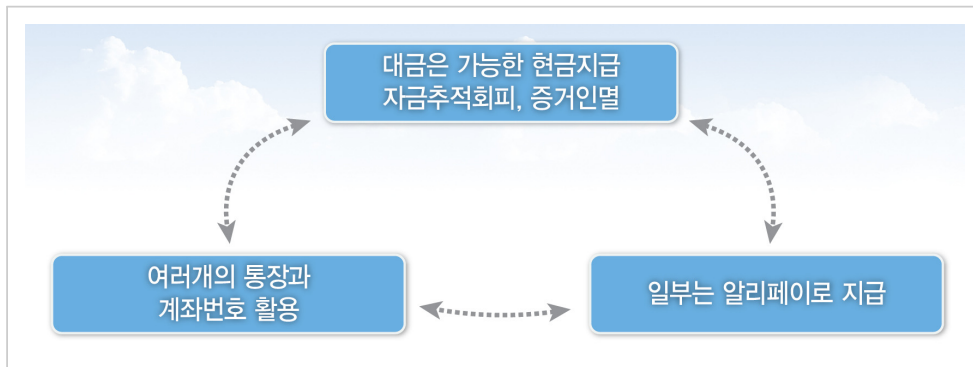
그림90. INNISFREE 위조 화장품의 보관창고 현황



3) 대금은 가능한 현금지급

일반적으로 위조 화장품 관련 대금 지급은 먼저 제품을 발송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여러 개의 통장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돈 세탁을 통해 자금추적을 피한다. 또한 현금으로 직접 거래해서 증거를 없앤다.⁵⁷⁾ 한편 위의 판결 중 강소성 염성시(盐城市) 사례를 보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알리페이를 통해 지급하였다.

그림91. 대금지급 현황



3. 판매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위조 화장품 판매의 진원지도 온라인으로 전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중 위조 화장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타오바오임이 본 보고서의 민사사건 통계분석이나 유통경로 파악을 위한 사례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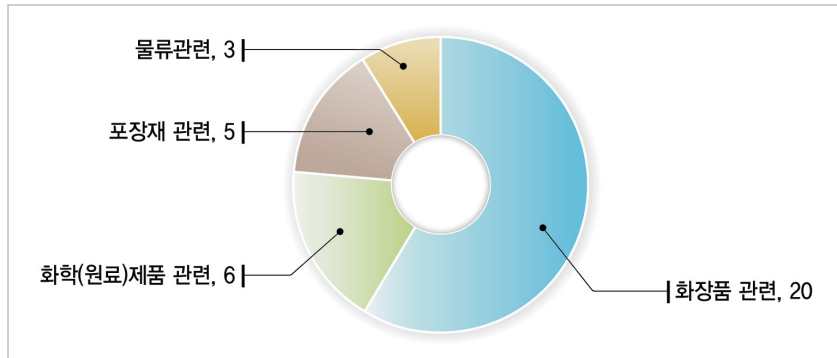
위조 화장품의 판매지역도 본 보고서 제3장의 위조 화장품 관련 판결문 통계분석(민사사건) ‘판매지 별 분석’을 보면, 호남성, 산둥성, 호북성, 하남성 등 2선(线) 이하 지역이 많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알리바바는 언론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기업 100개 명단’을 발표하였다. 동 명단에는 기업명칭 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화장품을 판매하는지와 그 기업이 어디에 소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 바이두를 통해

57) 중국 위조품 단속전문 사무소

기업 명칭과 주소를 확인한 결과, 100개의 위조 상품 판매 기업 중 위조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기업이 34개 기업이었다.

그림92. 알리바바가 발표한 위조 화장품 관련기업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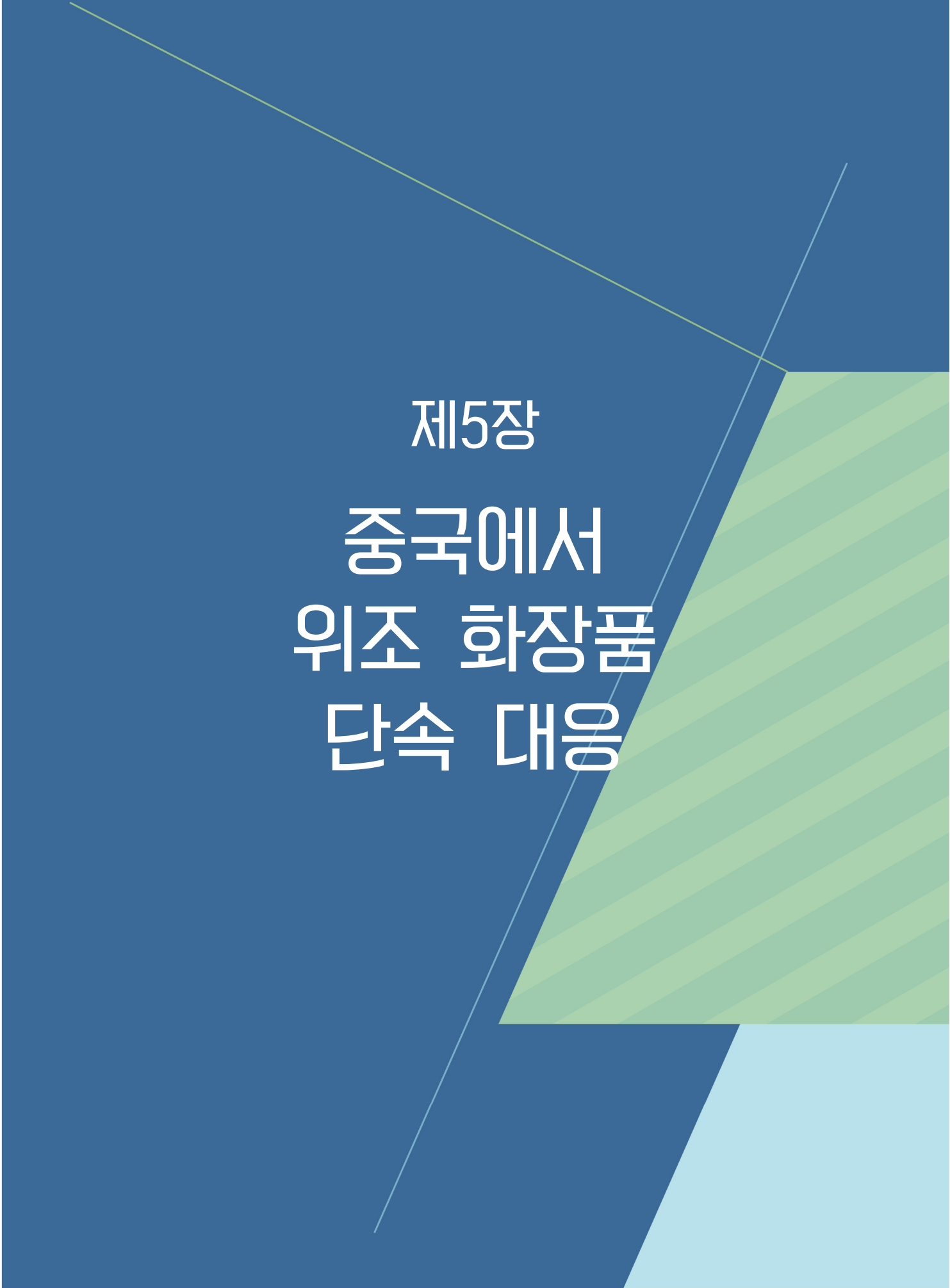


※ 위조 화장품 관련 명단은 붙임 참조

이들 기업들의 소재지를 보면 샤먼(厦门), 정주(郑州), 항주(杭州), 길림성 요원시(吉林省辽源市), 북경 등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1선(线) 도시인 북경, 상해, 심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정도이고, 나머지 2선(线) 이하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다.

표32. 위조 화장품 판매기업의 지역별 기업숫자

소 재 지	기업숫자
호남성 소양시(湖南邵阳市)	1
호북성 종양시(湖北钟祥市)	1
상해시(上海市)	5
하북성 곡주현(河北曲周县)	1
복건성 샤먼시(福建厦门市)	4
북경시(北京市)	5
섬서성 서안시(陕西省西安市)	2
산둥성 제남시(山东济南市)	2
하남성 정주(河南郑州市)	2
절강성 항주(浙江省杭州市)	6
길림성 요원시(吉林省辽源市)	1
광둥성 심천(广东深圳)	3
내몽고 오해시(内蒙古乌海市)	1
계	34



제5장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단속 대응

제5장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단속 대응

1. 선행요건

가. 중국에서 상표권 확보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화장품 병, 라벨 또는 포장된 박스 외부에 상표를 표기하고, 그 제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이는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3자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속기관에 단속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먼저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등록이 필요한 상표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단속과 관련하여 등록이 필요한 상표는, 먼저 상표권자가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에 사용하는 상표이어야 하며, 영문·중문·한글상표가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기업이 등록한 화장품관련 상표는 영문자였는데 중국인이 위조 화장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중문자이거나 한글상표인 경우는 상대방의 위조 화장품 판매, 유통행위에 대응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등록된 상표가 단속시점에 유효한 상표일 것

중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라 할지라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불사용취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기업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등록된 우리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 청구를 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기업이 상대방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공상국에 제출하였을 경우, 공상국은 등록된 상표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속을 보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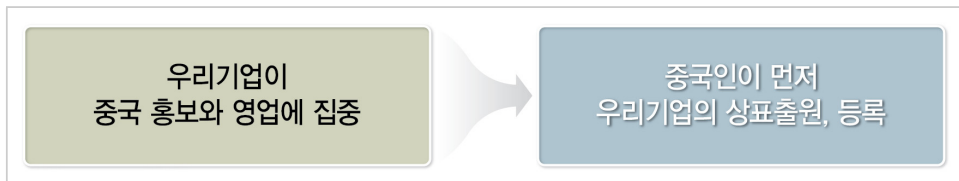
따라서 단속시점에는 등록된 상표가 혹시라도 3년 불사용취소 청구를 받지 않았는지를 잘 체크하여야 한다.

나. 중국에서 상표권 확보관련 유의사항

1) 중국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박람회 참가 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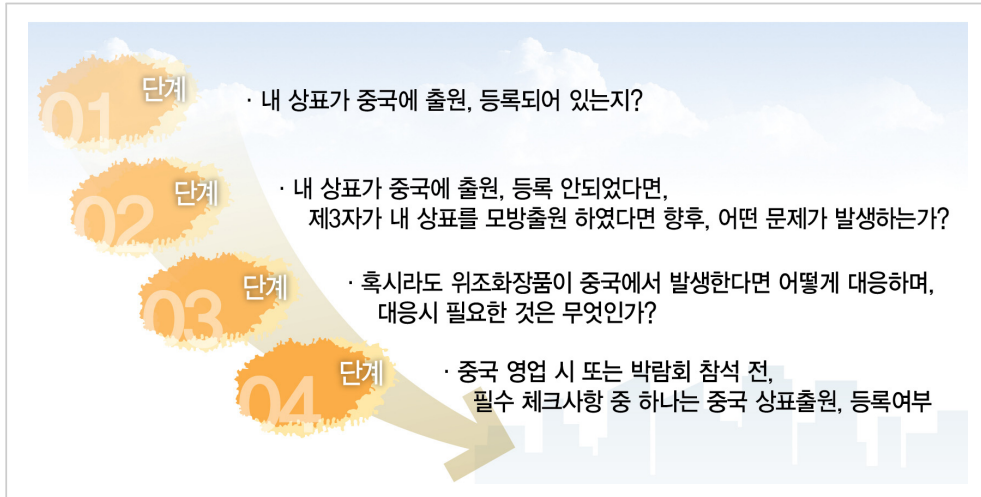
중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교역과 박람회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한다. 박람회에 참가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화장품 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기업이 노출되게 된다. 특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먼저 영업과 홍보에 집중하다 보면 화장품 제품에 부착하는 상표의 중국에 상표출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93. 우리기업들의 영업집중과 중국인의 모방출원



따라서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출원되었는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그림94.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 전에 체크사항



사례

예를 들어,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출원되지도 아니하였고, 더욱이 그 상표를 제3자가 중국에 출원한 경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영업을 하다가,

첫 번째: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3자를 발견한 경우

두 번째: 모방상표를 출원, 등록받은 자가 우리기업에 대해 오히려 상표권 침해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림95. 우리기업의 상표가 없는 경우



우리기업이 중국에 상표출원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의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기업은 제3자에 대해 위조 화장품 단속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조 화장품 단속은 일반적으로 상표법을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단속을 할 수 없다.

만약, 위의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우리기업이 중국인의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중국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미리 중국에 출원 등록하였더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 안하는데, 자신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국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기업은 자신의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상표를 사가지고 와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또는 그 모방상표를 무효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중국에 상표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2. 위조 화장품 단속

위조 화장품의 단속에는 행정단속과 형사단속이 있다. 행정단속은 지방 공상국 단속기관이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행정처벌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가하는 것이다. 형사단속은 위조 화장품을 압수함은 물론 당사자를 구속하고 형사처벌 결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단속절차

1) 오프라인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가) 위조 화장품에 대한 기본 정보수집

중국 위조 상품 단속 전문사무소에서는 전문 조사원이 중국에 화장품 관련 업체가 밀집된 지역, 화장품 주요 도매시장에 대해 조사를 통해 피해 기업의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는 주요지역의 지방 공상국이나 공안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해서 피해 기업에 알려오기도 한다.

한편, 오프라인에 대한 단속을 위한 위조 화장품 관련 기본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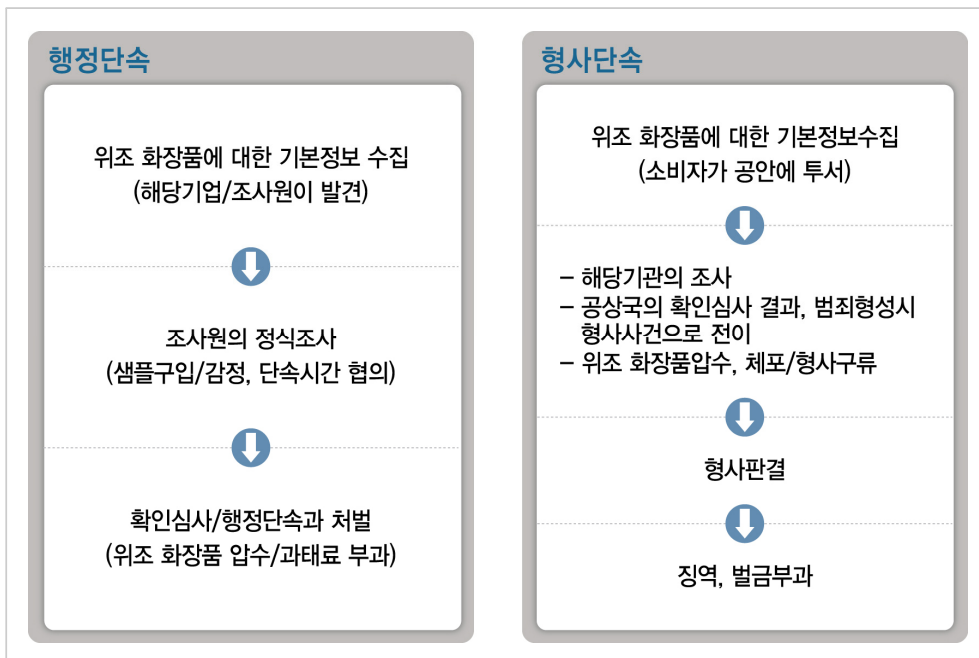
나) 중국 위조 상품 단속 전문사무소의 정식조사

조사원은 샘플구입과 감정을 하고, 위조 화장품 판매자(생산자)등에 대해 주소나 영업규모 등을 조사한 후 단속여부를 결정한다. 단속여부가 결정되면, 조사원은 해당 단속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일자 및 시간을 정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다) 단속과 처벌

공상국이 행정단속을 실시하면 현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처벌은 행정단속을 진행한 이후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과태료를 명하게 된다. 만약, 위조 화장품 판매액이 크거나 또는 사건이 증대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이된다.

그림96. 위조 화장품 단속절차



2) 온라인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가) 위조 화장품에 대한 기본 정보수집

중국 위조 상품 단속 전문사무소의 조사원 또는 피해 기업이 온라인 주요 쇼핑몰 타오바오 등에서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정보에 기초하여 샘플 구입과 감정을 하고 위조 화장품이라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단속을 진행한다.

나) 조사원의 정식조사

그 이후 위조 화장품 판매자(생산자)등에 대해 주소나 영업규모 등을 조사한 후 단속여부를 결정한다. 단속여부가 결정되면, 조사원은 해당 단속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일자 및 시간을 정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다) 단속과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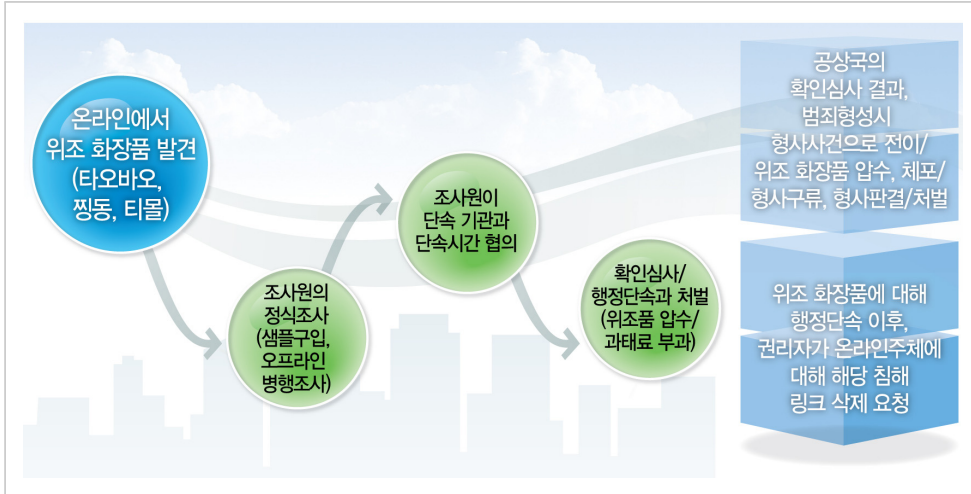
공상국이 행정단속을 시행하면 현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처벌은 행정단속을 진행한 이후 약3-4개월 정도 소요되며, 과태료를 명하게 된다.

행정 단속이후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의 침해링크에 대해서는 링크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 관련 침해 링크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요청을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상표등록증이 필요하다.

위조 화장품을 발견한 이후, 만약 행정단속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 침해링크를 삭제요청 하는 경우 그 링크가 삭제되면,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가 미리 숨어버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 링크삭제는 단속이 완료된 뒤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위조 화장품 판매액이 크거나 또는 사건이 중대할 경우, 위조 화장품 판매자의 개인정보나 주소정보, 거래기록 정보를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받아 공안에 제공하고, 확보된 오프라인 주소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형사단속을 진행한다.

그림97. 위조 화장품 단속 및 해당 침해링크 삭제절차



3. 행정단속 대응 시 필요한 서류

행정단속 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단속을 위임하는 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위임장과 상표등록증 부분이다.

표33. 위조 화장품 행정단속 시 필요한 서류

순번	필요한 서류
1	행정단속을 위임하는 자(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사본)
2	위임장
3	행정단속 신청서
4	상표등록증 사본
5	위조 화장품에 대한 증거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제품의 실물 또는 사진, 보관 장소의 현장사진, 영수증 및 관련사항에 대한 공증자료)

가. 위임장

중국에서 발생하는 단속관련 사건을 중국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그 위임장은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임장에는 변호사 사무소, 한국외교부, 주한중국영사관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공증과 인증을 거친 원본서류를 중국 위조상품 단속 전문 사무소에 국제우편으로 송부한다.

나. 상표등록증 사본

해당 상표가 중국에서 화장품관련 지정상품류(3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상표의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단속시점에 해당 상표의 등록증이 없다면, 중국상표국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당안(當案)을 발급받아 대응할 수 있으나, 지방 공상국마다 차이가 있어 그 당안(當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

한편,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상표국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재발급 신청 일부터 발급되는 시점까지 약 2~3개월 소요된다.

2) 상표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유의사항

상표등록증 분실시,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타인이 해당상표에 대해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재발급이 보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해당 상표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분쟁 계류중이거나
- 해당 상표권자가 상표국에서 패소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신청 한 경우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즉,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패소한다면 상표권리가 없기 때문에) 상표국은 재발급을 보류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출원 이후, 상표등록증을 받은 경우는, 그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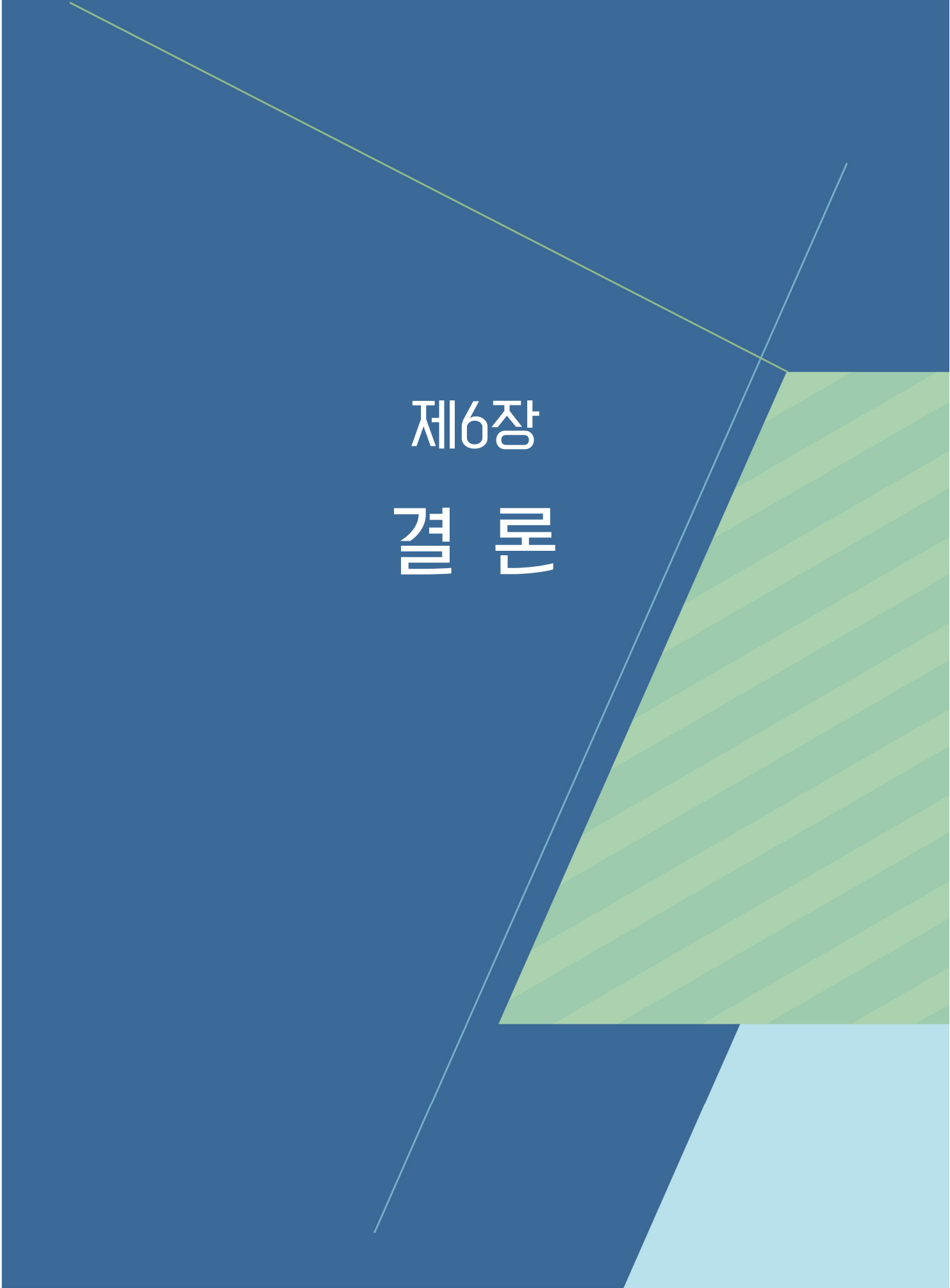
필요하며, 위조 화장품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단속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자신의 상표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98. 공증 및 인증절차



그림99. 상표 당안(當案) 예시

商 标 档 案			
申请日期: 2016.11.15		意 译	
注册人	北京...有限公司	初次申请国	中国
地 址	北京...区...路...号	申请日期	2016.11.15
邮 编	100044	申请编号	2016111500000000
国际分类	第...类	注册国	中国
审定第...号/刊登第...号	期商标公告	注册日期	2016.11.15
注册第...号/刊登第...号	期商标公告	注册编号	2016111500000000
代理人名称	北京...有限公司	是否共有商标	否
代理人地址	北京...区...路...号	是否放弃专用权	否
是否指定颜色	是	专用期限	自 2016.11.15 起 至 2026.11.15 止
图形要素	商标类型: 普通	国际通知日期	
商品	备注	图样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 商标注册证明专用章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중국 시민들의 소득증가와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2위가 되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에 화장품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중국 인터넷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비패턴이 인터넷 쇼핑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의 판매 비율도 증가 되어 가고 있다.

위조 화장품 생산의 진원지는 광둥성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은 절강성, 하북성 등 주로 2선(线)이하 도시로 유통되며, 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여와서 마치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도 한다.

위조 화장품의 생산방식은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하고, 생산직원과 생산자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며, 1개 공장에서 여러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생산해서 유통시킨다. 1차 생산지로부터 위조 화장품을 공급받은 자는 여러창고에 분산해서 보관하며, 위챗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물건의 주문을 받고 배송해준다. 대금결제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에서 활용한 판결문 통계분석과, 중국정부가 발표한 화장품 기준에 불합격한 기업들의 명단과 본 보고서의 사례 중 우리기업 화장품을 위조생산·판매하다가 체포된 일당의 소재는 광둥성 광주시가 많았다.

중국에서 화장품 박람회 크게 개최되는 지역은 광둥성 광주시이며, 이곳에 화장품 관련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도 이곳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곳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업체들의 일부가 위조 화장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기업들이 광둥성 광주시에 있는 화장품업체 또는 대리상들과 영업을 위한 접촉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응하는 사전예방으로 관련 상표출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중소기업들은 내부에 상표를 담당할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자사의 화장품 관련 상표가 도용당하고 있는지, 위조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협회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중국에 관련 기업들의 상표가 출원 혹은 등록되었는지, 중국에서 상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련 기업들의 화장품이 위조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에게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최근 위조 화장품에 대한 언론 동향과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 형태를 살펴본바, 중국에서 화장품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의 발견과 단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이 발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관련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표 문제 대응, 위조 화장품의 조사와 행정단속,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위조 화장품과 관련,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정부와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우리기업들이 영업을 위해 중국 업체 또는 대리상과 접촉 시에는, 사전에 그들이 화장품 관련 상표권 분쟁이나 민사소송 등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대리상일 경우, 위조 화장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협회는 중국의 화장품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서 내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중국에서 발생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상표나 상품이 도용당할 때,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비밀로 그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동종업종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유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기업과 정부, 기업과 협회 간에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최근 사드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관련 단속기관이나 해당 부서도 우리기업들에 대해 이전보다는 비우호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협회는 해당 기관과 부서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위조 화장품의 생산지는 특히 광둥성이기 때문에 광둥성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위조 화장품의 증가와도 비례한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 문제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나아가 위조 화장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기업이 입는 손해는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대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정부와 관련 협회에서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불임자료

불임자료

1. 중국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불합격한 화장품기업 명단

표1. 광주시 식약품 관리감독국이 발표한 불합격한 화장품 생산기업

일련 번호	기업명칭	감독 검사결과
1	광주 백개려 상업유한공사(广州百凯丽商业有限公司)	특수화장품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허가 판매 혐의
2	광주 교적정세 화공유한공사(广州巧迪精细化工有限公司)	특수화장품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허가 판매 혐의
3	광주 오곡생물 과학유한공사(广州澳谷生物科技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
4	광주시 백대부 건강미용 과기개발유한공사 (广州市白大夫健康美容科技开发有限公司)	특수화장품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허가 판매 혐의
5	광주시 희천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喜倩化妆品有限公司)	품질이 조잡한 가짜 화장품 및 화장품생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판매혐의
6	란소웅(광주시 백운구 삼원리 전전지화장품점) (栾小雄(广州市白云区三元里进进之化妆品店))	품질이 조잡한 가짜 화장품 및 화장품생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판매혐의
7	광주시 자체화장품유한공사(广州市姿蒂化妆品有限公司)	특수화장품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허가 판매 혐의
8	광주시 금백려보건품유한공사(广州市金栢丽保健品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
9	광주시 기원생물과기유한공사(广州市暨源生物科技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
10	광주성풍무역유한공사(广州成沣贸易有限公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입화장품을 판매한 혐의
11	광주시 청아화장품유한공사(广州清雅化妆品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
12	광주시 인안화장품유한공사(广州茵颜化妆品有限公司)	특수화장품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허가 판매 혐의
13	광주건백화장품유한공사(广州健栢化妆品有限公司)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혐의
14	광주 자박천 화장품유한공사(广州市姿泊泉化妆品有限公司)	특수화장품에 대한 해당기관의 미허가 판매 혐의
15	광주 상관씨 화장품유한공사(广州上官氏化妆品有限公司)	국가화장품 위생허가 기준 미달, 화장품 판매

표2. 국가식약품 관리감독국이 발표한 불합격한 화장품 생산기업

순번	생산기업	생산기업 주소	판매기업	판매기업 주소
1	산둥시 아나화장품실업유한공사 (汕头市雅娜化妆品实业有限公司)	광둥 산둥시	영덕시 동방강녕구물광장유한공사 (宁德市东方康宁购物广场有限公司)	복건성 영덕시
			광서화윤만가생활초시유한공사남영청수점복패전궈 (广西华润万家生活超市有限公司南宁青秀店馥珮专柜)	광서성 남녕시
2	광주과마화장품제조유한공사 (广州科玛化妆品制造有限公司)	광둥 광주시	신강우호(집단)고분유한공사 아극소천백시상구물중심 (新疆友好(集团)股份有限公司阿克苏天百时尚购物中心)	신강우루무치
3	광주영란미용화장품유한공사 (广州灵兰美容化妆品有限公司)	광둥 광주시 백운구	사의파극구장강외무미박성구구홍화장품상행 (沙依巴克区长江外贸美博城久久红化妆品商行)	신강우루무치
4	광주채사화장품유한공사 (广州采词化妆品有限公司)	광둥 광주시 백운구	사의파극구흥만화장품상행 (沙依巴克区鑫万鑫化妆品商行)	신강우루무치
			임분시 요도구 백부윤일화점 (临汾市尧都区佰肤润日化店)	산서성 임분시
			진려평 (秦丽萍)	감숙성 김창시
5	불산시아안미용보건품 유한공사 (佛山市安安美容保健品有限公司)	광둥 불산시	여양시 개발신우상품유한공사시민광장점 (吕梁市开新宇商贸有限公司市民广场店)	산서성 여양시
6	보령시가보일용화공유한 공사 (普宁市嘉宝日用化工有限公司)	광둥 보녕시	중위시 봉달화장품점 (中卫市鹏达化妆品店)	영화중위시
			낙산시중심성구열점화장품상행 (乐山市中心城区热点化妆品商行)	사천성 낙산시
			진려평 (秦丽萍)	감숙성 김창시
7	광주시승매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胜梅化妆品有限公司)	광둥 광주시	동관시석갈현채식품점 (东莞市石碣炫彩饰品店)	광둥성 동관시

순번	생산기업	생산기업 주소	판매기업	판매기업 주소
8	광주시유희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有喜化妆品有限公司)	광동 광주시	여양시개발신우상무유한공사시민광장점 (吕梁市开新宇商贸有限公司市民广场店)	산서성 여양시
			한단시신조도초시상무유한공사 (邯郸市新赵都超市商贸有限公司)	하북성 한단시
			오충시백화대로유한공사 (吴忠市百货大楼有限公司)	영화오충시
			한단국풍구물중심 (邯郸国风购物中心)	하북성 한단시
			위해시 환취구미운화장품비발상행 (威海市环翠区美韵化妆品批发商行)	산동성 위해시
			래산구미중미화화장품초시 (莱山区美中美化妆品超市)	산동성 연태시
9	광주시유희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有喜化妆品有限公司)	광동 광주시	담주시나대목근생활점 (儋州那大木槿生活店)	해남성 담주시
10	불산시남해구황기순생물공정유한공사 (佛山市南海区黄岐嘉纯生物工程有限公司)	광동 불산시	사의파크구장강이무미박성명설화장품상행 (沙依巴克区长江外贸美博城茗雪化妆品商行)	신강우루무치
			원모현원마아부미화화장품경영부(요문하) (元谋县元马雅芙美妆化妆品经营部(饶文霞))	운남성
11	동양시가인일화유한공사 (东阳市佳人日化有限公司)	절강 동양시	안악현수미허미용미발용품상행 (安岳县秀美轩美容美发用品商行)	사천성
			임분경제기술개발구미려역참화장품점 (临汾经济技术开发区美丽驿站化妆品店)	산서성임분시
12	두산시징해구신대화장품창 (汕头市澄海区新大化妆品厂)	광동 산두시	낙산시중심성구열점화장품상행 (乐山市中心城区热点化妆品商行)	사천성 낙산시
13	광주시유송정세화공집단유한공사 (广州市渝崧精细化工有限公司)	광동 광주시 백운구	금강구신천용미용미발용품경영부 (锦江区新天龙美容美发用品经营部)	사천성 성도시
14	심천시미련달생물과기유한공사 (深圳市美莲达生物科技有限公司)	광동 심천시	성도부씨화장품유한공사 (成都符氏化妆品有限公司)	사천성 성도시
15	광주시애설화장품유한공사 (广州市艾雪化妆品厂有限公司)	광동 광주시 백운구	낙산시중심역구아려일화경영부 (乐山市中心城区雅丽日化经营部)	사천성 낙산시

2. 알리바바 발표 100대 위조품 판매기업 중, 위조 화장품관련 판매기업 명단

화장품 판매 기업

순번	기업 명칭 (한글)	기업명칭 (중문)	지역	구체적인 주소
1	종상시금흔전자 상거래유한공사	钟祥市金欣电子商务有限公司	호북성 종상시 장수진	钟祥市长寿镇长寿街道延鹤街11号
2	상해 희옥 전자상거래 유한공사	上海熹煜电子商务有限公司	상해시 푸둥신구	上海市浦东新区上南路3787号1幢302室
3	곡주현 내문 전자상거래 유한공사	曲周县莱文电子商务有限公司	하북성 곡주현 제4탄진	曲周县第四疃镇北龙堂村村北
4	샤먼 가락이 무역유한공사	厦门嘉乐怡贸易有限公司	복건성 샤먼시 사명구	厦门市思明区嘉禾路335号天宝大厦2407室
5	북경 향가흥 과기 유한공사	北京恒歌兴业科技有限公司	북경시 해정구	北京市海淀区双清路1号2号楼有福商务酒店2层8209室
6	섬서 윤길 상무유한공사	陕西闰吉商贸有限公司	섬서성 서안시 연호구	陕西省西安市莲湖区西稍门劳动北路首秀小区1幢10807室
7	정주 접채 무역유한공사	郑州蝶彩贸易有限公司	하북성 정주시 중원구	郑州市中原区棉纺西路生活区3号建设西路50号楼6号
8	항주 희원 상무유한공사	杭州熙源商贸有限公司	절강성 항주시여향구	杭州市余杭区五常街道丰岭路35号一幢3层308室
9	요원시 용산구 좌이 상무유한공사	辽源市龙山区左耳商贸有限公司	길림성 요원시 용산구	吉林省辽源市龙山区福镇街宇升花园7号楼7单元503室
10	샤먼 미야 의료기계 유한공사	厦门美夜医疗器械有限公司	복건성 샤먼시 해창구	厦门市海沧区新嘉路163号
11	심천시 영미 의약과기 유한공사	深圳市盈美医药科技有限公司	광둥성 심천시 용강구	深圳市龙岗区龙城街道嶂背社区园湖横二巷10号厂房二楼
12	용천시 오광정 화장품점	龙泉市吴光正化妆品店	절강성 용천시	浙江龙泉市中山东路199号
13	동려현 성남가 도애편 예품상행	桐庐县城南街道艾贝礼品商行	절강성 동려현	桐庐县城上杭路333号
14	보전시성상구신 시란화장품점	莆田市城厢区新诗兰化妆品店	복건성 보전시 성상구	福建省莆田市城厢区霞林街道荔华东大道8号万达广场SOHOA座3106室

순번	기업 명칭 (한글)	기업명칭 (중문)	지역	구체적인 주소
15	상해 고동 상무유한공사	上海咕咚商贸有限公司	상해시 금산구	上海市金山区山阳镇浦卫公路236号 5幢3424室
16	유방 애심에 무역유한공사	潍坊爱心睿贸易有限公司	산둥성 유방시 규문구	山东省潍坊市奎文区虞河路3262号 樱北花园南区一期商业楼551号
17	북경 려화문헌 문화발전 유한공사	北京丽华文轩文化发展有限公司	북경시 봉태구	北京市丰台区刘家窑南里5号2层3 号2310室
18	호남 애비 상무유한공사	湖南艾菲商贸有限公司	호남성 소양시 북탑구	邵阳市北塔区蔡锷路江北明珠2栋30 4号
19	심천시 익명달 무역유한공사	深圳市益铭达贸易有限公司	광둥성 심천시 용화신구	深圳市龙华新区民治街道樟坑三区1 39栋1404-1
20	제남 우사 인터넷 과기 유한공사	济南优思网络科技有限公司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山东省济南市历下区解放路20号院3 号楼817号

화학공업제품판매기업

1	북경 심잠인상 상무유한공사	北京深潜印象商贸有限公司	북경시 봉태구	北京市丰台区西马场北里甲13号丰 庭酒店106房间
2	심천시 비등가 무역유한공사	深圳市飞腾佳贸易有限公司	광둥성 심천시 광명신구	深圳市光明新区公明街道南环大道伟 业轩大厦9楼901房
3	중성 국운 국제물류(북경) 유한공사	中诚国运国际物流 (北京)有限公司	북경시 동성구	北京市东城区和平里七区16号楼院5 28房间
4	복주 택을 무역유한공사	福州泽蔚贸易有限公司	북건성 복주시 진안구	福建省福州市晋安区象园街道晋安南 路88号天俊缙香水岸7#楼1层06店面
5	북경 양광초준 상무유한공사	北京阳光超骏商贸有限公司	북경시 봉태구	北京市丰台区右安路213号京诚天地 农副产品市场A区第0123号
6	서안 윤고 상무유한공사	西安润高商贸有限公司	섬서성 서안시 안탑구	西安市雁塔区东陵路中环国际城西 区第3幢1单元13007室

포장재료 판매 기업

1	소주 과력화 전자유한공사	苏州科力华电子有限公司	절강성 소주 고신구	苏州高新区滨河路588号3幢723室
2	소주 동덕 무역유한공사	苏州东德贸易有限公司	절강성 소주시 기소구	苏州市姑苏区白洋湾街道城北西路1 599号(苏州机电五金交易市场)D8幢 110
3	이우시 창가 수출입 유한공사	义乌市畅嘉进出口有限公司	절강성 이우시	浙江省义乌市后宅街道杜元村60幢1 号301室

순번	기업 명칭 (한글)	기업명칭 (중문)	지역	구체적인 주소
4	상해 걸봉 공업무역 유한공사	上海杰鹏工贸有限公司	상해시 홍구구	上海市虹口区东大名路1191号1716 7室
5	상해 송빈 무역유한공사	上海颂斌贸易有限公司	상해시 금산구	上海市金山区金山卫镇钱鑫路301号 302-M室

유통 기업

1	이우시 순발 물류유한공사	乌海市顺发物流有限公司	내몽고 오해시 해남구	内蒙古乌海市海南区海拉路32公里 处隆信祥物流园1号26号商铺
2	상해 운현 물류유한공사	上海韵显物流有限公司	상해시 금산구	上海市金山区张堰镇松金公路2758 号9幢A1569室
3	정주 합만 전자상거래 유한공사	郑州哈曼电子商务有限公司	하북성 정주시 이철구	郑州市二七区长江路216号旭辉佳苑 3号楼西单元5楼501号

3. 판결문 한글 번역문

가. 강소성 염성시

강소성 염성시 중급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4) 염지형초자 제00014호

공소 기관 강소성 염성시 인민검찰원.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전모씨(田某甲)는 등록 상표 도용 혐의로 2014년 5월 7일 염성시 염도구公安국에 형사 구금되었다.

변호인 추명표(邹明标), 상옥연(商玉莲), 강소 등비원 변호사 사무소(江苏腾飞苑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의 남동생),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등록 상표 도용 혐의로 2014년 5월 7일 염성시 염도구公安국에 형사 구금되었다.

변호인 진경송(陈劲松), 강소 이고 변호사 사무소(江苏理高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의 아내),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는 등록 상표 도용 혐의로 2014년 5월 7일 염성시 염도구公安국에 형사 구금되었다. 2014년 5월 29일公安국에서 보석형을 결정하였고, 2014년 8월 13일 염성시 염도구 인민검찰원의 보석형 결정으로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호인 소용뢰(邵龙雷), 강소 이고 변호사 사무소(江苏理高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은 등록 상표 도용 혐의로 2014년 5월 24일 염성시 염도구公安국에 형사 구금되었으며, 2014년 6월 25일公安국에서 보석형을 결정하였고, 2104년 8월 13일 염성시 염도구 인민검찰원의 보석형 결정으로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호인 유명(刘永), 강소 소동 변호사 사무소(江苏素彤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는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혐의로 2014년 5월 27일 염성시 염도구公安국에 형사 구금되었으며, 2014년 6월 23일公安국에서 보석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호인 노수(路琇), 장용성(张勇成), 강소 등영 변호사 사무소(江苏登瀛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양모씨(杨某甲)(가명 정가상(郑可相)),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양모씨는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혐의로 2014년 5월 28일 염성시 염도구公安국에 형사 구금되었으며, 2014년 6월 18일公安국에서 보석형을 결정하였고, 2014년 8월 13일 염성시 염도구 인민검찰원의 보석형 결정으로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자영업 종사자.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는 불법 제조, 불법 제조한 등록 상표 라벨 판매 혐의로 2014년 6월 16일 염성시 염도구 인민검찰원의 보석형 결정으로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강소성 염성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1(彭某甲)를 등록 상표 도용 죄로,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양모씨(杨某甲), 장모씨1(张某甲)을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로 기소하였으며, 2014년 11월 13일 염검소형소 (2014) 44호 기소장으로 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법에 근거해 합의 범정을 구성했고, 2014년 11월 28일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강소성 염성시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이하(李霞)를 범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및 변호인 추명표(邹明标),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 및 변호인 진경송(陈劲松),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 및 변호인 소용뢰(邵龙雷),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 및 변호인 유영(刘永),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및 변호인 노수(路琇), 피고인 양모씨(杨某甲)와 장모씨1(张某甲)도 범정에 출두하여 공소에 참가하였다. 본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공소 기관은 아래 사실을 기소하였다.

1. 등록 상표 도용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

인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과 함께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피고인 양모씨(杨某甲), 황모씨1(黄某甲), 장모씨1(张某甲)로부터 등록 상표가 위조 인쇄된 화장품 포장 상자, 화장품 병을 구입했다. 또한 이후에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과 팽모씨2(彭某丙)(다른 사건으로 처리됨)를 통해 생산 또는 생산 조직을 구성하도록 해서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 (四红)”, “金美沙龙”, “唯真” 등록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이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은 3,864,472위안,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이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은 3,107,685위안,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이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은 1,221,612위안이었다. 구체적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피고인 양모씨(杨某甲)와 황모씨1(黄某甲)로부터 “克丽缇娜”, “宝相花 (四红)”, “金美沙龙”, “唯真” 등록 상표가 위조 인쇄된 화장품 포장 상자과 화장품 병을 구매했다. 또한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과 팽모씨2(彭某丙)를 통해 앞서 말한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으며, 장모씨3(张某丙), 진모씨3(陈某丙), 송모씨(宋某), 장모씨4(张某丁), 곡모씨1(谷某甲) 등에게 판매하였다.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만 587,307위안이었다.

(2)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에게 “玫琳凯”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는 마킹기계, 포장기계, 주입기계 등 설비를 구매했고,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양모씨(杨某甲)와 황모씨1(黄某甲)로부터 위조 인쇄된 “玫琳凯” 상표의 화장품을 구매했다. 구매한 화장품을 장모씨3(张某丙), 송모씨(宋某), 계모씨(季某), 황모씨(黄俊), 경모씨(耿某), 왕모씨2(王某乙), 장모씨4(张某丁), 진모씨3(陈某丙), 진모씨4(陈某丁) 등에게 판매하였으며,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2,903,504위안이었다.

(3) 2014년 5월 16일 수사 요원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가 위조 화장품을 생산, 보관하는 장소에서 “玫琳凯” 상표의 화장품을 압수했으며, 화장품 가격만 204,180.4위안이었다. 또한 112,892위안 가량의 “克丽缇娜”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고, 22,952위안 가량의 “金美沙龙” 상표의 위조 화

장품과, 33634.5위안 가량의 “宝相花(四红)”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373,659위안이였다.

수사 요원은 사건 장소에서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四红)”, “唯真” 상표가 인쇄된 화장품 포장상자와 화장품 병, 화장품 원료, 생산설비 등을 압수했다.

2. 등록 상표 라벨의 불법 제조 및 판매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양모씨(杨某甲)는 위조 인쇄된 “玫琳凯”、“宝相花” 상표의 화장품 포장상자를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에게 판매하였으며,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331,100위안이였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는 위조 인쇄된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唯真” 상표의 화장품 병을 생산하여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에게 판매하였으며,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441,000위안이였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는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위탁으로 위조 인쇄된 “玫琳凯” 상표의 화장품 병 30,000개를 전모씨1(田某甲)에게 판매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 요원이 광주시 미박성(美博城)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피고인 양모씨(杨某甲)와 장모씨1(张某甲)은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彭某甲)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으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양모씨(杨某甲), 장모씨1(张某甲)는 등록 상표를 위조해 판매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와 양모씨(杨某甲)의 범죄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의 행위는 심각하여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 제 215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범죄사실이 매우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1(彭某甲)에게는 등록 상표 도용죄로,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양모씨(杨某甲), 장모씨1(张某甲)는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로 형사 책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1(彭某甲)는

공동으로 위조 상표 도용 죄를 범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와 전모씨2(田某乙)는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기에 주범이며,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 팽모씨1(彭某甲)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기에 종범에 해당된다. 이에 공소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조 제 1항, 제 26조 제 1항, 제 27조 규정에 근거해,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 팽모씨1(彭某甲)에게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양모씨(杨某甲)와 장모씨1(张某甲)는 수사 요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진술했기에, 공소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해 자수에 해당하며, 가벼운 처벌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공소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2조의 규정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하며 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사실대로 주요 범죄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이는 법에서 규정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사실에 해당한다. (2)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과가 없고 품행이 좋다. (3) 본안의 감정 자료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국가 기관이 인정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하지 않았음에, 감정 자료에 하자가 존재한다. (4) 공안 기관이 압수한 물품의 가치는 37만 위안이며, 아직 판매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을 일으키지 않았다. (5)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이 불법으로 얻은 금액이 장부상으로는 30만 위안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점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일부 상품만 판매했으며, 전체 범죄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종범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2)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공안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감형을 해줘야 한다. (3)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가 판매한 것은 등록 상표를 위조한 상품이지 위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다. (4) 피고인 전모씨2(田某

乙)는 2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나이가 어리며 한 아이는 심장병이 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은 정신 분열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요청한다는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범죄에가끔 참여하였으며 중범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2)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는 자신의 범 죄를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3)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는 법적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4)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의 가정 환경이 어렵고, 아이의 심장병 수술을 위해 급히 돈을 구하려고 범 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요청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본안은 조직범죄에 해당하며, 이 사실은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의 형 팡모씨2(彭某丙)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과 연락한 것은 팡모씨2(彭某丙)이며,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은 팡모씨2(彭某丙)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대신해서 생산경영을 관리해온 것이다. 그렇기에 범 죄에 가담한 시간이 짧고 중범 중의 중범이다. (3)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이 팡모씨2(彭某丙)에게 송금한 기록 중, 9만 위안이 있는데, 이것은 팡모씨2(彭某丙)의 치료를 위한 돈이며, 불법 판매금액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공소 기관은 이 금액을 불법 판매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4)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은 공장에서 일한 시간이 짧고, 사건에 관련된 금액도 적고, 불법으로 얻은 금액이 적다. (5)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은 초범이며,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벌금을 납부하기 원한다. (6) 팡모씨2(彭某丙)가 병상에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어렵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를 요청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는 위조 상표 라벨을 불법 판매한 행위는 있으나, 위조 상표 라벨을 생산한 행위는 없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는 전모씨1(田某甲)의 위탁으로, 전모씨1(田某甲)가 제공한 화장품 진품 유리병 샘플을 타인에게 주어 생산하도록 했으며, 자신은 생산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의 불법 판매금액은 8.3만 위안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조 “玫琳凱” 화장품 병은 1위안/개*3만개=3만 위안, 위조 “克丽缇娜” 화장품 병은 3.3위안/개* 1만개=3만3천 위안, 위조 “金美沙龙” 화장품 병은 2.8위안/개* 4500개=1만2,600원 위안, 위조 “唯真”화장품 병은 2.7위안/개* 약2,600개=7,000위안 위안이다. (3)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고의성이 적고, 범죄 경위가 경미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 (4)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는 초범이다. (5)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좋고, 평소에 타인에게 충직하고 성실하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를 요청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양모씨(楊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장모씨1(張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재판을 걸쳐 밝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등록 상표 도용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陳某甲)와 함께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피고인 양모씨(楊某甲), 황모씨1(黃某甲), 장모씨1(張某甲)로부터 등록 상표가 위조 인쇄된 화장품 포장 상자, 화장품 병을 구입했다. 또한 이후에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과 팽모씨2(彭某丙)(다른 사건으로 처리됨)를 통해 또는 생산 조직을 구성하도록 해서 “玫琳凱”, “克丽缇娜”, “宝相花 (四红)”, “金美沙龙”, “唯真” 등록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으며,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이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은 3,864,472위안,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陳某甲)가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은 3,107,685위안, 피고인 팽모씨1(彭某甲)이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은 1,131,612위안이었다. 구체적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피고인 양모씨(楊某甲)와 황모씨1(黃某甲)로부터 “克丽缇娜”, “宝相花 (四红)”, “金美沙龙”, “唯真”

등록 상표가 위조 인쇄된 화장품 포장 상자와 화장품 병을 구매했다. 또한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과 팡모씨2(彭某丙)를 통해 앞서 말한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으며, 장모씨3(张某丙), 진모씨3(陈某丙), 송모씨(宋某), 장모씨4(张某丁), 곡모씨1(谷某甲) 등에게 판매하였다.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만 587,307위안이었다.

(2)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에게 “玫琳凯”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는 마킹기계, 포장기계, 주입기계 등 설비를 구입했고,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양모씨(杨某甲)와 황모씨1(黄某甲)로부터 위조 인쇄된 “玫琳凯” 상표의 화장품을 구매했다. 구매한 화장품을 장모씨3(张某丙), 송모씨(宋某), 계모씨(季某), 황모씨(黄俊), 경모씨(耿某), 왕모씨2(王某乙), 장모씨4(张某丁), 진모씨3(陈某丙), 진모씨4(陈某丁) 등에게 판매하였으며,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2,903,504위안이었다.

(3) 2014년 5월 16일 수사 요원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가 위조 화장품을 생산, 보관하는 장소에서 “玫琳凯” 상표의 화장품을 압수했으며, 화장품 가격만 204,180위안이었다. 또한 112,892위안 가량의 “克丽缇娜” 상표의 위조 화장품 압수했고, 22,952위안 가량의 “金美沙龙”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33,634위안 가량의 “宝相花(四红)”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고,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373,659위안이었다.

수사 요원은 사건 장소에서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四红)”, “唯真” 상표가 인쇄된 화장품 포장상자와 화장품 병, 화장품 원료, 생산설비 등을 압수했다.

2. 등록 상표 라벨의 불법 제조 및 판매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피고인 양모씨(杨某甲)는 위조 인쇄된 “玫琳凯”, “宝相花” 상표의 화장품 포장상자를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에게 판매하였으며,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331,100위안이었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는 위조 인쇄된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唯真” 상표의 화장품 병을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에게 판매하였으며,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441,000위안이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는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위탁으로 위조 인쇄된 “玫琳凯” 상표의 화장품

병 30,000개를 전모씨1(田某甲)에게 판매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 요원이 광주시 미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피고인 양모씨(杨某甲)와 장모씨1(张某甲)은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상 사실과 공개심리 및 반대신문을 거쳐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의 진술

(1) 2010년부터,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 전모씨2(田某乙) 등은 함께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 “金美沙龙” 등 브랜드의 위조 화장을 생산, 제조, 판매할 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이 판매한 화장품 금액은 몇 백만 위안이었으며, 그 중 이익 금액은 40만 위안 정도였다.(구체적인 금액은 은행 기록을 참고)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4개 브랜드의 화장품이 인터넷에서 잘 팔리는 것을 알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 “金美沙龙” 등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였고, 타인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그 중, “玫琳凯” 화장품은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와 함께 했으며, 다른 상품들은 모두 혼자 진행하였다.

(2) 판매한 “唯真” 위조 화장품의 포장 상자, 상표 라벨, 병은 모두 팡모씨2(彭某丙)가 생산한 것이며, 돈도 모두 팡모씨2(彭某丙)에게 주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을 못한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이 판매한 “宝相花” 화장품의 포장 상자는 모두 양모씨(杨某甲)에게서 구매한 것이다. 피고인 양모씨(杨某甲)는 위조 “宝相花” 에센스의 포장 상자 5,000여 개, 위조 “宝相花” 보습 크림과 미백 크림 포장 상자 각 4,500여 개를 생산했으며, 위조 “四红” 에센스 진공 포장 상자와 위조 “宝相花” 에센스 진공 포장 상자의 생산 개수는 기억을 못한다. 위조 “金美沙龙” 화장품 상자 또한 피고인 양모씨(杨某甲)가 생산한 것으로, 매 종류 상자마다 최소 3,000개를 생산했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전모씨1(田某甲)을 대신해 “宝相花” 화장품의 진공 포장 병을 구매했으나 구매 시점은 기억을 못한다. 기타 “宝相花” 화장품의 병은 팡모씨2(彭某丙)와 팡모씨1(彭某甲)에게 위탁 생산한 것이다. 창고에는 아직 생산하지 못한 것이 많다. “金美沙龙” 위조 화장품 병은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가 생산한 것으로, 매 종류마다 약 5,000여개 병과 1,000여개의 “金美沙龙” 보습 크림 병을 생산했다.

2012년, 피고인 양모씨(杨某甲)는 전모씨1(田某甲)을 대신해 “克丽缇娜”萃丽 스킨 상자 15,000개, “克丽缇娜”단백질 크림 10g 상자 15,000개, “克丽缇娜”梵诗 스킨 180ml 상자 10,000개, “克丽缇娜”폼클렌징 140g 상자 25,000개와 보습 스킨 상자 몇 천개를 생산했다. 대부분 상자는 염성시로 직송하였고, 일부분은 팡모씨2(彭某丙)에게 배송했다. 또한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에게 11,000여개의 “克丽缇娜” 위조 화장품 병, “克丽缇娜”萃丽 스킨 병 2,000개, “克丽缇娜”梵诗 장미 스킨 병 5,000개, “克丽缇娜”단백질 크림 병 2,000개, “克丽缇娜”폼클렌징 2,000개 등을 생산하게 했으며, 일부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배송하고, 일부는 팡모씨2(彭某丙)에게 배송했다. 고체형 원료는 팡모씨2(彭某丙)가 제공한 것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병에 주입하도록 하고, 포장 상자에 포장하여, 완성된 “克丽缇娜”상품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배송하였다. 팡모씨2(彭某丙)와 팡모씨1(彭某甲)는 “克丽缇娜”스킨을 생산하여,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에게 보내 직접 병에 주입하도록 했으며, 창고에는 대략 20kg의萃丽 스킨이 남아있다.

2010년 상반기,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金美沙龙”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먼저 “金美沙龙”의 보습 크림, 미백 크림, 에센스 진품을 상해 학씨(郝氏) 회사에서 구매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양모씨(杨某甲)에게 “金美沙龙” 위조 화장품의 포장 상자를 3,000개를 생산하도록 했으며, 상자 한개 당 1위안 정도로 계산해주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생산된 상자의 금액을 양모씨(杨某甲) 또는 임모씨(林孝发)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총 13,000위안을 송금했다. 이후에, 피고인 양모씨(杨某甲)는 팡모씨2(彭某丙)에게 포장 상자를 직접 배송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팡모씨2(彭某丙)에게 “金美沙龙”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고 포장하도록 하고, 포장비용을 지불했다. “金美沙龙”의 위조 화장품 병은 황모씨1(黄某甲)로부터 구매한 것이며, 3 종류의 “金美沙龙” 상표가 부착된 위조 화장품 병 총 4,500개를 구매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화장품 병 금액은 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황모씨1(黄某甲)에게 지불했으며, 총 12,600위안을 송금했다. 황모씨1(黄某甲)는 생산된 위조 화장품 병을 팡모씨2(彭某丙)의 공장에 직접 배송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상해

학씨(郝氏)에게서 구매한 고체형 원료와 에센스를 팡모씨2(彭某丙)에게 배송하고 주입과 포장을 시켰다. 포장 비용은 병 1개당 2위안으로, 팡모씨2(彭某丙)는 포장 완료된 화장품을 물류회사를 통해서 배송했다. 이후에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완성된 위조 화장품을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장모씨3(张某丙)에게 판매했고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모씨3(张某丙)는 총 30,000여 위안을 지불했다.

“玫琳凯”의 화장품 병을 황모씨1(黄某甲)로부터 구매한 것 이외에,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허모씨(许某)와 주모씨2(周某乙)등 에게도 생산을 위탁하였다. 생산된 화장품 병은 팡모씨2(彭某丙)의 공장으로 직접 배송하기도 했다. 피고인 팡모씨2(彭某丙)와 팡모씨1(彭某甲)은 고체형 원료를 병에 주입한 후, 물류회사를 통해서 전모씨1(田某甲)에게 배송하기도 했으며, 일부 원료는 병과 함께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에게 배송하였다. 창고내부에 있는 2호 오일 컨트롤 스킨과 1호 보습 스킨은 피고인 팡모씨2(彭某丙)가 전모씨1(田某甲)의 요구에 맞게 배합하여 배송해온 것으로, “玫琳凯” 위조 1호 스킨과 2호 스킨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생산된 위조 화장품은 물류 회사를 통해서 염성시로 배송됐으며, 염성대교 북쪽에 위치한 장소와 RED STAR MACALINE(红星美凯龙, 중국 대형 가구 업체)에 배송되었다.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는 전모씨1(田某甲)과 황모씨1(黄某甲), 양모씨(杨某甲), 팡모씨2(彭某丙)와 팡모씨1(彭某甲) 등 사람들과 연락한 것 외에도 광주의 주모씨2(周某乙) 고모씨(顾某乙), 무석시의 허모씨(许某)에게 연락해 “玫琳凯” 화장품 병을 구매했고, 상해의 곡모씨2(谷某乙)에게 연락해 “玫琳凯” 화장품 원료를 구매했다. 또한,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는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양모씨(杨某甲), 팡모씨2(彭某丙), 팡모씨1(彭某甲)과 연락했다.

일부 대금 지급은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의 카드에서 송금된 것이다.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상해의 곡모씨2(谷某乙)가 생산하는 화장품 원료가 팡모씨2(彭某丙)가 생산하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외에, 진모씨1(陈某甲), 전모씨2(田某乙), 왕모씨1(王某甲), 나모씨(罗某), 진모씨2(陈某乙)도 위조 화장품 생산에 참여했으며, 전모씨2(田某乙)는 주로 상품을 분류했고, 왕모씨1(王某甲)과 나모씨(罗某)는 가끔 일을 도왔으며, 진모씨2(陈某乙)

는 주로 위조 화장품 상자에 마킹을 했고, 작업 한번에 100위안 정도 받았다. 왕모씨1(王某某)와 나모씨(罗某)는 매달 월급을 나눠줬다.

(3) 은행 거래 상황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양모씨(杨某甲)에게 총 358,600위안을 지불했다. 2013년 설날 이후에, 양모씨(杨某甲)는 전모씨1(田某甲)를 대신하여 7,500여 위안의 화장품을 구매해줬으며, 20000위안의 수축팩을 구매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구매해준 것만 총 331,100위안이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황모씨1(黄某甲)에게 총 543,000위안을 지불했다. 2013년, 황모씨1(黄某甲)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20,000위안의 “宝相花” 위조 화장품 진공 포장 병을 구매해줬으며, 10,000위안의 팩 가루를 구매해주기도 했다. 또한, 전모씨1(田某甲)이 직접 사용할 화장품 5,000위안을 구매해줬으며, 모기장 3,000위안을 구매해주기도 했다. 2012년, 하얀색의 마스크팩을 구매해줬으며, 그 가격은 2만 위안이었다. 2013년 7월에는 진모씨1(陈某甲)를 시켜 9,000위안을 황모씨1(黄某甲)에게 송금했으며, 그 금액으로 황모씨1(黄某甲)에게 손목시계를 구매하도록 했다. 그 외에 476,000위안도 황모씨1(黄某甲)에게 송금했는데, 황모씨1(黄某甲)이 전모씨1(田某甲)를 대신해 생산한 위조 화장품 병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전모씨1(田某甲)은 화장품 브랜드 “嬌诗菲尔”를 출원하였고, 7-8개 종류의 병 값은 황모씨1(黄某甲)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팡모씨2(彭某丙)에게 총 1,188,200위안을 지불했다. 2013년 1월 31일 팡모씨2(彭某丙)에게 288위안을 송금해 고체 실험용품을 구매하게 한 것 외에도, 2013년 9월과 10월에 80,000위안을 “嬌诗菲尔” 화장품의 고체형 원료와 병에 주입하는 비용으로 지불했다. 팡모씨2(彭某丙)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치료비용으로 9만 위안을 빌리기도 했다. 그 외에 101,7912위안은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이 팡모씨2(彭某丙)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화장품 원료 생산과 병에 주입하는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다. 팡모씨1(彭某甲)에게 송금된 113,700위안은 “玫瑰琳凯”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비용으로 전모씨1(田某甲) 등이 지불한 것이며, 팡모씨1(彭某甲)에게 지불되도록 팡모씨2(彭某丙)가 요구한 것이다.

(6)판매 상황

장모씨3(張某丙)이 2013년 9월 24일 전에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구매한 “玫琳凱” 위조 화장품 금액은 약140만원이며, 2014년 9월 24일, 장모씨3(張某丙)이 위조 화장품 판매 죄로 수사를 받을 때, 추가로 구매한 “玫琳凱” 위조 화장품 금액 4만 위안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장모씨3(張某丙)가 구매한 “玫琳凱” 위조 화장품 금액은 총 144만 위안이다. 또한, 장모씨3(張某丙)가 구매한 “克麗緹娜” 위조 화장품 금액은 총 12만여 위안이고, 구매한 “宝相花” 위조 화장품 금액은 총 11만여 위안이며, 구매한 “金美沙龙” 위조 화장품 금액은 총 16만 위안으로, 장모씨3(張某丙)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아직 9만 위안을 지불하지 못했다. 구매한 “唯真” 위조 화장품 금액은 총 5만 위안으로, 장모씨3(張某丙)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3.5만 위안을 지불하지 못했다. 대부분은 현금으로 거래했으며, 일부는 알리페이로 거래했다.

2011년부터, 곡모씨1(谷某甲)은 “宝相花” 보습크림과 미백크림을 여러 차례 구매했다. 곡모씨1(谷某甲)은 3-4개월에 한번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한 번에 1만원 이상으로 구매했다. 2012년, 곡모씨1(谷某甲)은 “金美沙龙”의 위조 미백크림과 보습크림, 에센스를 구매했으며, 전모씨1(田某甲)은 구매한 상품을 정모씨(鄭恩)를 시켜 곡모씨1(谷某甲)에게 배송시켰다. 곡모씨1(谷某甲)이 구매한 “宝相花” 위조 화장품 금액은 5만 위안이며, “金美沙龙” 위조 화장품 금액은 15,000만 위안이었다.

2012년부터, 송모씨(宋某)는 “玫琳凱”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구매 금액은 약2만 위안이었다. 또한 구매한 “克麗緹娜” 위조 화장품 금액은 약5,000 위안이었다. 송모씨(宋某)가 구매한 위조 화장품 금액은 총 3만 위안이었다.

진모씨3(陳某丙)이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陳某甲)에게 송금한 금액만 631,040위안이며,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를 통해서 송금한 금액은 약 4만 위안이었다. 2010년 3월, 진모씨4(陳某丁)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雅芳” 화장품을 구매해준 비용으로 은행카드로 5만 위안을 송금해줬다. 2014년 3월 4일, 진모씨4(陳某丁)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방사선 방호복을 구매해준 비용으로 은행카드로 46,000위안을 송금했다. 또, 전모씨1(田某甲)에게 “玫琳凱”, “克麗緹娜” 위조 화장품 구매 비용으로 57만 위안을 지불했으며, 그 중, “玫琳凱” 비용만 52만 위안이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안휘성 무호시(安徽省芜湖市)의 황모씨2(黃某乙), 즉 계모씨(季某)의 남편에게도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의 인터넷 쇼핑몰 “贝可儿专卖”에는 “玫琳凯” 화장품이 없었고, 황모씨2(黃某乙)는 “金美沙龙”과 “宝相花” 화장품을 구매한 후, 알리페이로 “玫琳凯” 위조 화장품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했고, 총 지불한 금액은 430,121위안이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연운항(连云港)의 장모씨4(張某丁)에게 “克丽缇娜”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으며, 장모씨4(張某丁)는 주로 “克丽缇娜” 위조 화장품의 스킨을 구매했다. 장모씨4(張某丁)는 전모씨2(田某乙)가 소개한 사람으로, 장모씨4(張某丁)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알리페이로 화장품 비용을 지불했으며, 총 지불한 금액은 51,150위안이었다. 6,000위안과 3,300위안은 장모씨4(張某丁)가 전모씨2(田某乙)에게 알리페이로 지불하였는데,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구매한 금액으로 지불한 것이다.

2)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의 진술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던 것을 부인했다. 자신의 창고에서 압수된 “玫琳凯” 위조 화장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玫琳凯” 정품 화장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던 적이 있다고 했지만, 정품 화장품이 어디로부터 가지고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또한, “雅芳” 화장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으며, 이 화장품은 서주의 유형(刘恒)에게서 구매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3) 피고인 진모씨1(陳某甲)의 진술로써, 주로 본인과 전모씨2(田某乙)와 전모씨1(田某甲)이 함께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던 사실을 진술했다.

(1) 2012년, 남편 전모씨2(田某乙)와 남편의 누나인 전모씨1(田某甲)과 함께 “玫琳凯” 위조 화장품으로 돈을 벌자고 상의했다. 가정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전모씨2(田某乙)와 전모씨1(田某甲)은 위조 화장품을 판매할 것에 동의했다. 진모씨1(陳某甲)과 전모씨2(田某乙), 전모씨1(田某甲)은 함께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은 반반으로 나뉘어졌다.

일반적으로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가 원료와 포장 상자 생산자에게 연락을 했다. “玫琳凯”의 화장품 원료는 광주의 팡모씨2(彭某丙)와 팡모씨1(彭某甲)

에게서 구매했으나, 2013년부터는 상해의 곡모씨2(谷某乙)에게서 구매했다.

프라스틱 제품은 강음시(江阴市)의 허모씨(许某)에게서 구매한 것으로, 허모씨(许某)는 글씨가 인쇄되지 않은 공병을 생산했다. 생산된 공병은 광주시의 주모씨2(周某乙)에게 배송됐으며, 주모씨2(周某乙)는 공병에 상표와 숫자를 마킹하는 작업을 했다.

포장 상자는 광주시의 양모씨(杨某甲)에게서 구매한 것이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3대의 포장 기계를 구입했으며, 그 중 2대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전모씨1(田某甲)은 주입기계도 1대 구입했으며, 전모씨2(田某乙)는 마킹기계 1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후에 왕모씨1(王某甲)과 전모씨1(田某甲) 가정의 가정부에게 액체형 원료를 병에 주입하도록 했으며, 포장 상자를 이용해 포장하도록 시켰다. 또한 진모씨1(陈某甲)의 동생 진모씨2(陈某乙)에게 프라스틱 병과 상자에 생산일자를 마킹하도록 시켰으며, 가끔 진모씨1(陈某甲)도 병에 주입하고 포장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전모씨1(田某甲)은 화장품판매자에게 연락했으며, 전모씨2(田某乙), 전모씨1(田某甲), 진모씨1(陈某甲)가 함께 상품을 배송했다. 남양(南洋)의 창고, 절강방주(钱江方洲), 금수천지원차고(锦绣天地苑车库)에서 “玫琳凯” 위조 화장을 압수했으며, 위조 화장품은 모두 3명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주로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와 전모씨1(田某甲)가 구매자를 찾았다.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진모씨1(陈某甲)의 핸드폰으로 구매자와 연락을 했으며, 전모씨2(田某乙)가 집에 없을 경우, 진모씨1(陈某甲)이 전화를 대신 받기도 했다.

진모씨1(陈某甲)이 받은 구매자는 2명으로, 한명은 호북성의 진모씨3(陈某丙)이었고, 다른 한명은 상해의 소운(小云)이었다. 이들에게 “玫琳凯” 위조 화장을 판매했다. 2013년 하반기에 전모씨2(田某乙)는 진모씨3(陈某丙)의 연락을 받고, 진모씨1(陈某甲)에게 “玫琳凯” 위조 화장을 배송하도록 했다. 이후에 여러 번 진모씨3(陈某丙)의 연락을 받았고, 모두 진모씨1(陈某甲)이 화장을 배송했다.

가격과 대금은 모두 전모씨2(田某乙)가 진모씨3(陈某丙)와 연락해서 결정했으

며, 진모씨3(陈某丙)은 대금을 진모씨1(陈某甲)의 은행 카드로 송금해왔다. (은행 거래 기록을 참고). 상해의 소운(小云)도 전모씨2(田某乙)가 연락했다. 2013년 하반기에 진모씨1(陈某甲)이 소운(小云)의 연락을 받았고 소운(小云)은 전모씨2(田某乙)을 찾았다. 작년 연말, 소운(小云)은 진모씨1(陈某甲)에게 “玫琳凯”의 1호 스킨과 1호 로션 등 상품을 주문했다. 진모씨1(陈某甲)가 전모씨2(田某乙)에게 주문사실을 알리자, 전모씨2(田某乙)가 직접 소운(小云)과 연락했으며, 상품은 진모씨1(陈某甲)가 배송했다. 배송지는 무척시였다.

금년 4월, 송모씨(宋某)가 진모씨1(陈某甲)에게 연락했으며, “玫琳凯” 위조 스킨과 로션을 주문했다. 진모씨1(陈某甲)은 절강방주(钱江方洲)의 단지 앞에서 송모씨(宋某)에게 상품을 건내주었다. 송모씨(宋某)는 진모씨1(陈某甲)에게 500위안의 현금을 건내주었다. 진모씨1(陈某甲)은 건설은행 카드로 곡모씨2(谷某乙)에게 128,200위안을 송금했고, 팡모씨1(彭某甲)에게 113,700위안을 송금했고, 양모씨(杨某甲)과 임모씨(林孝发)에게 348,600위안을 송금했다(7,000위안 이하 금액 이외에도 327,000위안이 남았다.) 또 진모씨5(陈颜红)(허모씨(许某)씨의 아내)에게 8만 위안을 송금했으며, 주모씨2(周某乙)에게 24,900위안을 송금했고, 황모씨2(黄某乙)에게 514,000위안을 송금했다(5,000위안 이하 금액과 손목시계 9,000위안 외에도 498,1000위안이 남았다.) 또한 진모씨4(陈某丁)에게 266,640위안을 송금했고, 팡모씨2(彭某丙)에게 110,7912위안을 송금했다.

4)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의 진술

(1) 2012년 하반기, 구체적인 시간은 불확실하지만,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이 광주에 왔을 때, 팡모씨1(彭某甲)에게 “玫琳凯” 정품 화장품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도록 시켰다.

팡모씨2(彭某丙)와 전모씨1(田某甲)이 아는 사이기 때문에, 전모씨1(田某甲)은 팡모씨2(彭某丙)와 가격과 종류, 수량을 상의했다. 팡모씨1(彭某甲)은 전모씨1(田某甲)의 요구한 수량과 종류대로 위조 화장품을 생산했고, 이후에 전모씨1(田某甲)은 화장품이 필요할 경우 팡모씨1(彭某甲)에게 직접 연락했다. 생산된 화장품은 전모씨1(田某

甲)이 알려준 주소로 배송했고, 화장품 비용은 바로 팽모씨2(彭某丙)에게 송금했다. 전모씨1(田某甲)가 송금해준 비용 중, “玫琳凯” 화장품 생산 비용은 일부였고, 나머지는 운송비와 수고비였다.(운송비는 대략 6만여 위안이며, 일부는 수고비였다.) 전모씨1(田某甲)에게 생산해준 “玫琳凯” 위조 화장품의 원료는 회사 것으로, 화장품 병과 포장 상자는 전모씨1(田某甲)가 위탁 생산해서 회사로 보낸 것이다. 화장품 병과 포장 상자에는 “玫琳凯” 상표가 인쇄 되어있으며, 생산된 화장품 병과 포장 상자는 이미 사용 완료했고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전모씨1(田某甲)에게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생산 공급한 것은 2년 정도 됐다. 그 외에도 전모씨1(田某甲)에게 “金美沙龙”과 “克丽缇娜”, “宝相花” 위조 화장품도 생산해줬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嫣诗菲尔” 화장품 또한 생산해줬으며, 전모씨1(田某甲)는 자신의 브랜드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팽모씨2(彭某丙)는 전모씨1(田某甲)와 가격과 생산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상의했으며, 팽모씨1(彭某甲)은 생산과 배송을 주로 책임졌다고 한다. 전모씨2(田某乙)도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팽모씨1(彭某甲)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며, 진모씨1(陈某甲)도 주문으로 팽모씨1(彭某甲)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팽모씨1(彭某甲)은 전모씨2(田某乙)와 2012년 광주 미박성(美博城)에서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생산에 대해 상의했다고 한다.

(2) 2010년부터 “宝相花”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고체형 원료와 화장품 병, 포장 상자 모두 전모씨1(田某甲)가 공급한 것으로, 팽모씨1(彭某甲)과 팽모씨2(彭某丙)는 병에 주입하는 것을 전담했다. 또한, 2012년부터 “玫琳凯”, “克丽缇娜”, “唯真”, “雅芳”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宝相花” 위조 화장품은 3-4천 병을 생산했으며, 한 병당2-3 위안의 가격을 받았다. 종류는 보습크림과 미백크림이 있으며, 에센스를 생산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화장품 병은 황모씨1(黄某甲)의 것이었다.

전모씨2(田某乙)는 팽모씨1(彭某甲)과 “玫琳凯”, “雅芳” 위조 화장품 생산에 대해 상의했었다 2012년 12월 25일, 전모씨1(田某甲)은 운송비 약6만 위안을 제외하고 공상

은행 카드로 25,000위안을 팡모씨1(彭某甲)에게 송금해줬다. 2013년부터 팡모씨2(彭某丙)의 질병으로, 2014년 1월부터는 팡모씨1(彭某甲)이 공장 일과 전모씨1(田某甲)에게 위조 화장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모두 관리했다. 정리된 은행 거래 내역에 의하면,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는 팡모씨2(彭某丙)에게 1,188,200위안을 송금했으며, 팡모씨1(彭某甲)에게는 113,700위안을 송금했으며, 총 1,301,900위안을 송금해줬다. 그 중, 팡모씨2(彭某丙)는 약10만 위안을 벌었으며, 팡모씨1(彭某甲)은 5만 위안을 벌었다.

5)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진술

(1) 2012년, 전모씨1(田某甲)의 남편이 황모씨1(黄某甲)를 찾아와 “金美沙龙”의 위조 화장품 병을 생산해줄 것을 부탁했고, 가격 협상 후 전모씨1(田某甲)의 남편은 염성시(盐城)로 돌아갔다. 이후에는 전모씨1(田某甲)가 황모씨1(黄某甲)와 직접 연락했고, 위조 화장품 병 생산을 위탁했다. 전모씨1(田某甲)은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宝相花”, “雅芳” 등의 위조 화장품 병 샘플을 황모씨1(黄某甲)에게 보냈고, 황모씨1(黄某甲)는 공장에 생산을 위탁했다.

황모씨1(黄某甲)는 생산 완료된 화장품 병을 광주시의 팡모씨1(彭某甲)와 팡모씨2(彭某丙)에게 보냈으며, 이들이 병에 원료를 주입했다. 전모씨1(田某甲)은 황모씨1(黄某甲)에게 총 543,000위안을 송금했으며, 이 금액에는 2013년 3월에 황모씨1(黄某甲)의 매형 왕모씨4(王某丁)에게 송금한 29,000위안도 포함한다. 2010년부터, 황모씨1(黄某甲)는 전모씨1(田某甲)을 대신해 “宝相花” 위조 화장품 병 비용 20,000위안을 지불해 줬으며, 모기장 2장의 비용 3,000위안을 지불해줬다. 2012년에는 하얀색의 마스크팩 20,000위안을 구매해줬으며, “雅芳” 병 생산 비용으로 35,000위안을 지불해줬다. 또한, 손목시계 9,000위안을 대신 구매해줬고, 전모씨1(田某甲)이 사용할 화장품 5,000위안을 구매해줬다. 황모씨1(黄某甲)가 전모씨1(田某甲)에게 생산 공급해준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唯真” 위조 화장품 병의 가격은 총 441,000위안이며, 황모씨1(黄某甲)는 이를 통해 2-3만 위안을 벌었다.

(2) “玫琳凯” 위조 화장품의 병은 황모씨1(黄某甲)가 광주시의 사람에게 위탁 생산하기도 했으며, 또 고채 포장 회사(高彩包装公司)에게 위탁 생산시킨 것으로, 이 회사 사장은 장모씨1(张某甲)이다. 황모씨1(黄某甲)은 전모씨1(田某甲)이 보내준 병의 샘플

플을 장모씨1(张某甲)에게 주었다. “玫琳凯” 위조 화장품 100ml, 110ml 병 1만개 씩 생산했고, “玫琳凯” 위조 화장품 크림병 5,000개를 생산했고, 납작한 “玫琳凯” 위조 화장품 병 1만개를 생산했다. 그중 5,000개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주었고, 5,000개는 장모씨1(张某甲)한테 있으며, 나머지 병의 행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황모씨1(黄某甲)은 관련 수권서를 장모씨1(张某甲)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장모씨1(张某甲)는 생산하는 병이 모두 위조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모씨1(田某甲)에게 생산 공급한 “玫琳凯” 위조 화장품 병은 총 5만 개이며, 모두 “玫琳凯” 상표의 위조 화장품 병이다. 장모씨1(张某甲)가 생산한 위조 화장품 병은 총 3만개이며, 나머지는 광주시의 사람이 생산한 것이다. 광주시의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6) 피고인 양모씨(杨某甲)의 진술

주로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에게 공급한 “玫琳凯”, “宝相花” 위조 화장품의 포장 상자를 생산한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2010년 상반기, 양모씨(杨某甲)는 정가상(郑可相)이라는 이름으로 전모씨1(田某甲)과 “玫琳凯” 위조 화장품의 포장 상자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상의했다. 전모씨1(田某甲)은 은행카드로 비용을 송금한 이 후에, 핸드폰으로 양모씨(杨某甲)와 연락을 이어갔다.

전모씨1(田某甲)은 포장 상자가 필요할 경우, 양모씨(杨某甲)에게 전화로 주문했고, 비용은 정가상(郑可相)의 계좌 또는 임모씨(林孝发)의 계좌 또는 양모씨(杨某甲)의 계좌로 송금했다. 임모씨(林孝发)는 송금 받은 비용은 모두 다 양모씨(杨某甲)에게 넘겼다. 비용을 받은 후, 양모씨(杨某甲)는 생산된 포장 상자를 물류회사를 통해서 염성시의 광주 물류회사로 배송했고, 받는 사람 정보에는 전모씨1(田某甲)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진짜 정가상(郑可相)은 전모씨1(田某甲)을 모르지만, 양모씨(杨某甲)는 정가상(郑可相)이라는 이름으로 전모씨1(田某甲)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모씨1(田某甲)은 정가상(郑可相)에게 비용을 송금했으며, 정가상(郑可相)은 다시 양모씨(杨某甲)에게 송금하기도 했고, 현금으로 주기도 했으며, 양모씨(杨某甲) 대신 다른 비용을 지불해주기도 했다. 즉 정가상(郑可相)과 양모씨(杨某甲)사이에 경제적 거래가 존재했다. 전모씨1(田某甲)에게 생산 공급한 “玫琳凯” 위조 화장품 포장 상자 112,000개에 대한 기록이 없

으나, 대략 20만 위안을 송금한 것으로 나왔다. 생산된 “玫琳凯” 위조 화장품 포장상자에는 “玫琳凯” 상표와 “R”이 인쇄 돼있었다. 당시 전모씨1(田某甲)은 양모씨(杨某甲)에게 다른 요구사항 없이 똑같이 생산하도록 했다고 한다.

연마공구(磨具)는 광주시 주해구 역봉도 공장(广州市珠海区力锋刀模厂)에서 생산된 것이다. 금년 3,4월에 전모씨2(田某乙)는 양모씨(杨某甲)에게 “玫琳凯” 위조 화장품 포장 상자 2종류를 각 10,000개씩 주문하였는데, 비용이 송금되지 않자 양모씨(杨某甲)는 생산된 포장 상자를 소각시켜버렸다. 2010년부터 양모씨(杨某甲)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공급할 “宝相花” 세트 상자를 5,000여개 생산했으며, “宝相花” 미백크림 상자도 1,000여개 생산했다. “宝相花” 상자 뚜껑을 5,000개 생산했으며, 상자 뚜껑은 파란색으로 위에 “宝相花” 상표가 인쇄돼있다. 전모씨1(田某甲)은 총 10만 위안을 지불했으며, 전모씨1(田某甲)과 전모씨2(田某乙)가 구매한 “玫琳凯”, “宝相花” 화장품 상자는 총 331,600위안이었다. 이를 통해 양모씨(杨某甲)는 5만위안을 벌었다.

7)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의 진술

주로 황모씨1(黄某甲)를 대신해 “玫琳凯” 위조 화장품 병을 생산한 사실을 진술했다. 2012년 황모씨1(黄某甲)가 “雅芳” 상표가 인쇄된 검은색 병을 장모씨1(张某甲)에게 주면서 위탁 생산을 부탁했다. 장모씨1(张某甲)는 5,000개를 생산했고, 한 병당 1.8위안을 받았으며, 황모씨1(黄某甲)는 장모씨1(张某甲)에게 병 값으로 9,000위안의 현금을 주었다. 2013년 장모씨1(张某甲)은 황모씨1(黄某甲)를 대신해 “玫琳凯” 위조 화장품 병을 30,000개 생산했으며, 황모씨1(黄某甲)는 권한도 없이 장모씨1(张某甲)에게 화장품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도록 했다.

2. 증인의 증언

1) 증인 왕모씨1(王某甲)의 증언

2012년 여름,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가 함께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왕모씨1(王某甲)은 “玫琳凯”라는 브랜드를 알았고, 전모씨1(田某甲)가 불법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상적인 화장품 회사라면 전문적인 공장과 인부들이 있어야하고 기술도 알아

야 하지만,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는 비밀스럽게 화장품을 병에 주입했고, 상자를 접었다. 또한,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는 기술적인 지식도 없어서 술을 빚는 것처럼 화장품을 생산했다.

전모씨1(田某甲)은 왕모씨1(王某某)에게 포장 상자를 접고 병에 화장품을 주입 하라고 시켰다. 진모씨1(陈某甲)는 왕모씨1(王某某)에게 화장품을 주입하는 방법과 상자를 접는 방법을 알려줬다. 왕모씨1(王某某)은 포장 상자와 병에 “玫琳凯” 크림, 스킨이라는 글자와 다른 상표를 봤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공급된 것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왕모씨1(王某某)는 전모씨1(田某甲)의 집과 남양(南洋镇老十字路口)의 창고에서 화장품을 주입하고 상자를 접었다고 증언했다.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은 인터넷을 통해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으며, 장모씨(老张)는 상품 배송을 맡았고, 나모씨(罗某)와 왕모씨1(王某某)은 상자 접기와 화장품 주입을 맡았다고 했다.

2) 증인 나모씨(罗某)의 증언

2014년 2월부터 나모씨(罗某)는 전모씨1(田某甲)을 도와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병에 주입하는 작업을 했고, 작업한 화장품의 종류는 “玫琳凯” 1호 로션과 1호 스킨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작업은 진모씨1(陈某甲)가 남양(南洋)의 창고로 데리고 가서 진행했으며,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조 화장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후에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로션을 그대로 병에 주입하고 스킨을 그대로 병에 주입하는 것을 보고 위조 화장품인 것을 알게되었다고 했다. 나모씨(罗某)는 전모씨1(田某甲)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이외의 보수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나모씨(罗某)는 진모씨1(陈某甲)의 동생 진모씨2(陈某乙)가 “玫琳凯” 위조 화장품 상자에 가짜 생산 일자를 마킹했다고 증언했다.

3) 증인 진모씨2(陈某乙)의 증언

2013년 제대 후, 진모씨2(陈某乙)는 형부 전모씨2(田某乙)의 복권 가게에서 함께 일을 했다. 2014년 설날 무렵,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은 화장품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진모씨2(陈某乙)에게 마킹기계 사용법을 익혀서 포장 상자에 바코드와 생산일자를 마킹하도록 시켰다.

2-3일 후, 전모씨2(田某乙)는 진모씨2(陈某乙)를 남양(南洋)의 창고로 데리고 가서, 상주 흠미달 화사(常州鑫美达公司)의 바코드를 보여주면서 마킹기계 사용법을 익히도록 했다. 진모씨1(陈某甲)은 진모씨2(陈某乙)가 마킹기계 사용법을 익힌후에 다시 남양(南洋)의 창고로 데리고 가서 마킹 하도록 했다. 진모씨2(陈某乙)가 마킹한 브랜드는 “玫琳凯”였다. 진모씨2(陈某乙)는 전모씨1(田某甲)의 가정부도 창고에서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을 보았고, 전모씨1(田某甲) 등이 병에 원료를 주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진모씨2(陈某乙)는 생산하는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창고 안에는 각종 화장품의 원료들이 난잡하게 있었으며, “玫琳凯” 화장품의 포장 상자도 있었다고 했다. 진모씨2(陈某乙)는 마킹 작업마다 4-5백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4) 증인 장모씨2(张某乙)의 증언

2011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의 요구로 6-70차례 화장품 배송을 해왔다. 2013년부터, 심천시 용강구(龙岗)의 장사장(张老板)에게 배송했으며, 장사장(张老板)은 전모씨1(田某甲)는 대금을 장모씨2(张某乙)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장모씨2(张某乙)가 받은 현금은 보통 2만 위안이었으며, 적게는 2-3천 위안을 받았고, 많게는 5만 위안을 받았다. 금년에는 10차례 배송했는데, 4월에 배송했을 때, 장사장(张老板)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지급할 대금 2만 위안을 장모씨2(张某乙)에게 건내주었다. 장모씨2(张某乙)의 증언에 의하면, 남양(南洋) 창고와 신민(新民) 창고, 금수지원(锦绣地苑) 차고에는 위조 화장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진모씨1(陈某甲)는 장모씨2(张某乙)에게 운달물류회사(韵达物流公司)에서 상품을 배송하도록 시켰으며, 상품은 “司苏”에서 배송하는 것이라고 시켰다고 했다. 또한, 터미널에서 상품을 발송하도록 시키기도 했으며, 염성대교북쪽(盐城大桥北边)에 위치한 광주물류회사(广州物流公司)에서 상품을 찾아오도록 시켰다. 남양(南洋) 창고에는 전모씨1(田某甲)과 진모씨1(陈某甲)은 자주 왔으며, 진모씨1(陈某甲)의 동생 진모씨2(陈某乙)도 자주왔고, 전모씨1(田某甲)의 가정부 2명도 자주 왔으며, 전모씨1(田某甲)의 동생 전모씨2(田某乙)도 1-2번 왔었다고 진술했다.

5) 증언 송모씨(宋某)의 증언

송모씨(宋某)는 “宝相花”, “克丽缇娜”, “金美沙龙” 등 화장품을 중개 판매했다. 송모씨(宋某)는 타오바오 상점을 개설했으며(타오바오 계정은 qiqiqi 6), 전모씨1(田某甲)로부터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雅芳” 화장품을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 송모씨(宋某)는 “玫琳凯” 화장품을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했다.

진모씨3(陈某丙)과 진모씨4(陈某丁)는 먼저 송모씨(宋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송모씨(宋某)는 입금된 금액을 다시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했다. 진모씨3(陈某丙)과는 “雅芳” 화장품 거래만 했으며, 진모씨3(陈某丙)은 당모씨(唐兴钻)라는 이름으로 타오바오에서 거래를 진행했다. 진모씨3(陈某丙)은 또한 하모씨(何玲军)라는 이름도 사용했다. 송모씨(宋某)는 진모씨3(陈某丙)에게서 5,000위안을 수금했으며, 수금한 금액은 알리페이로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해주었다.

2013년 12월, 진모씨1(陈某甲)은 송모씨(宋某)에게 진모씨3(陈某丙)의 45,710 위안을 수금하도록 했으며, 송모씨(宋某)는 수금한 금액을 다시 진모씨1(陈某甲)에게 송금해주었다. 2014년 1월, 송모씨(宋某)는 수금한 7,500위안을 알리페이로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했다. 2014년 4월, 송모씨(宋某)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20,000위안을 송금했으며, 또한 전모씨1(田某甲)의 공상은행 계좌로 9,100위안을 송금했다. 송모씨(宋某)가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한 금액은 모두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었다.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 계좌로 전모씨1(田某甲)에게 총 41,600위안을 송금했으며, 진모씨1(陈某甲)과 전모씨2(田某乙)에게는 총 69,510위안을 송금했다. 이 금액은 진모씨3(陈某丙)가 진모씨1(陈某甲)과 전모씨2(田某乙)에게서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었다. 진모씨3(陈某丙)과 진모씨4(陈某丁)는 건설은행 계좌를 통해 2013년 8월 27일과 2013년 9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송모씨(宋某)에게 송금했다. 송모씨(宋某)가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한 금액은 화장품 구매 비용과 빌려간 돈 등이었다. 송모씨(宋某)가 진모씨1(陈某甲)에게 송금한 비용 일부는 복권 구매 비용이었고, 일부는 빌린 돈이었으며, 나머지는 수금한 비용이었다.

2012년부터, 송모씨(宋某)는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화장품 1만위안

을 구매했다. 구체적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38위안/병을 150병 구매했고, 아이크림 38위안/병을 100여병 구매했다. “克丽缇娜” 화장품 1만여 위안을 구매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오리지널 스킨 160위안/병을 60병 구매했고, 萃丽스킨 150위안/병을 20병 구매했다. “雅芳” 화장품은 오랫동안 구매해왔기 때문에, 구매한 수량이 매우 많다고 진술했다.

대금 지급은 주로 은행 카드, 알리페이, 현금으로 거래했으며, 보통 전모씨1(田某甲)가 화장품을 송모씨(宋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전모씨1(田某甲)은 송모씨(宋某)에게 빌린 4만위안을 아직 갚지 않았다. 송모씨(宋某)는 진모씨1(陈某甲)과 전모씨2(田某乙)에게서 “玫琳凯” 화장품 5,000위안을 구매하기도 했다.

6) 증인 장모씨3(张某丙)의 증언

장모씨3(张某丙)은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金美沙龙”, “克丽缇娜”, “唯真”, “宝相花” 위조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과 가게부 기록에 대해서 증언했다.

2012년 4-5월부터, 전모씨1(田某甲)은 장모씨3(张某丙)에게 화장품을 판매했고, 장모씨3(张某丙)은 “玫琳凯”, “金美沙龙”, “克丽缇娜”, “唯真”, “宝相花” 화장품을 구매했다. 장모씨3(张某丙)은 구매한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2013년 5-6월에 장모씨3(张某丙)은 포장 상자가 진품 같지 않고, 전모씨1(田某甲)가 판매하는 금액이 정품보다 저렴한 것을 보고 위조 화장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장모씨3(张某丙)은 총 100만 위안의 화장품을 구매했고, 5-60만 위안의 화장품을 판매했다. 장모씨3(张某丙)은 위조 화장품인 것을 알면서도, 2-30만 위안의 위조 화장품을 재구매했다.

장모씨3(张某丙)가 화장품을 구매하면 전모씨1(田某甲)은 장씨 운전기사를 시켜 가게까지 배송을 해주었고, 장모씨3(张某丙)이 대금을 운전기사에게 주면, 운전기사가 전모씨1(田某甲)에게 전달해 주었고, 2013년 7월과 9월에는 직접 송금해주었다. 2013년 9월, 공안에게 수사를 받은 뒤, 전모씨1(田某甲)은 장모씨3(张某丙)에게 3만 위안의 화장품을 배송시켜줬으며,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도록 했다.

장모씨3(张某丙)는 이후에도 전모씨1(田某甲)로부터 “玫琳凯” 위조 화장품 2만 위안을 구매했다.

2012년 7월 21일부터 장모씨3(张某丙)과 전모씨1(田某甲)가 위조 화장품을 거래한 사실은 근무수첩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공안은 가계부를 압수했고, 기록된 사실을 하나하나 대조 확인했다. “宝相花” 미백크림은 정품 가격과 별 차이 없었다. “宝相花” 에센스와 “四红” 진공 에센스는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판매했다. 장모씨3(张某丙)은 판매했던 “宝相花” 화장품 종류는 기억하지 못했으나, 최소 2,000여개를 구매한 것으로 기억한다.

구매한 “宝相花” 화장품의 가격은 총 11만 위안으로, 가계부 상의 102,950위안과 2013년 9월에 구매한 1만 위안이다. “金美沙龙” 판매 기록은 가계부 상에는 몇 종류의 화장품만 적혀 있을 뿐, 아이패치와 로션에 대한 기록은 적혀 있지 않았다. 장모씨3(张某丙)이 구매한 “金美沙龙” 화장품의 가격은 총 16만 위안이었다. 장모씨3(张某丙)은 주로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총 구매한 화장품의 가격은 143만 위안이었다. 장모씨3(张某丙)은 “克丽缇娜”萃丽스킨을 2012년에 구매한 것으로, 당시 가격은 110위안/병으로 총 80병을 구매했다. 2013년 9월 이후, 200여 병을 구매했으며,萃丽스킨은 총 300여 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보습스킨도 54병 구매했으며, 가격은 한 병당 130위안이었다. 2013년 9월 이후, 600여 병을 구매했으며, 보습스킨은 총 700여 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梵诗”장미스킨도 구매했으며, 100위안/병으로 5-60병을 구매했다. “梵诗” 폼클렌징 100위안/병으로 3-40개를 구매했으며, 단백질 크림 100위안/병으로 20여 개를 구매했다. 장모씨3(张某丙)가 구매한 “梵诗” 화장품의 총 가격만 12만 위안이었다. 장모씨3(张某丙)은 전모씨1(田某甲)로부터 “唯真” 화장품 1700개를 구매했으며, 보습크림과 미백크림이 있었으며, 총 가격은 59,500위안이었다. 장모씨3(张某丙)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2만여 위안을 주었다.

7) 증인 경모씨(耿某)의 증언

장모씨3(张某丙),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에게서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총 구매한 가격은 412,785위안이었다. 경모씨(耿某)는 2012년 염성시(盐城)의 장모씨3(张某丙)에게서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가격은 일반 회사의 것보다 저렴했다.

경모씨(耿某)는 주로 아이크림(총 4번 820개), 1호 스킨, 썬크림 등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다. 경모씨(耿某)는 구매한 화장품은 타오바오에서 판매했다. 경모씨(耿某)는 장모씨3(张某丙)에게 알리페이로 송금했으며, 4천위안, 1만 3천위안, 2만 7천위안, 1만 3천위안을 송금했으며,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모씨(耿某)는 품질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으로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2013년 하반기, 전모씨2(田某乙)는 QQ로 경모씨(耿某)에게 연락이 했으며, 전모씨2(田某乙)는 자신이 장모씨3(张某丙)와 아는 사이이며, 자신이 생산하는 “玫琳凯” 화장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얘기했다. 경모씨(耿某)는 전모씨2(田某乙)에게서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 진모씨1(陈某甲)은 경모씨(耿某)에게 연락을 했으며, 그 전에 그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며, 자신들의 상품은 모두 염성시(盐城)에서 발송되는 것이며, 염성 운달물류회사(盐城韵达快递)에서 배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모씨(耿某)는 그들이 염성시에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2013년 겨울, 경모씨(耿某)는 “玫琳凯” 아이크림, 폼클렌징, 마스크팩, 스킨, 로션, 파우더를 구매했고, 대금은 알리페이를 통해 진모씨1(陈某甲)의 공상은행 카드로 송금했다. 금년 2월, 경모씨(耿某)는 다시 4만 위안의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고, 알리페이로 대금을 지급했다. 경모씨(耿某)는 때로는 알리페이로 송금을 했고, 때로는 진모씨1(陈某甲)의 계좌로 입금해주기도 했다.

4월 5일, 전모씨2(田某乙)는 다시 경모씨(耿某)에게 연락을 했고, “玫琳凯” 파우더를 저렴하게 판매할테니, 12,000위안을 원모씨(袁某)의 건설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모씨(耿某)는 전모씨2(田某乙)로부터 화장품을 받지 못했다. 5월 2일, 진모씨1(陈某甲)은 경모씨(耿某)에게 “玫琳凯” 화장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은 우이현(盱眙)으로 배송되었다. 경모씨(耿某)는 대금 22,500위안을 진모씨1(陈某甲)의 계좌로 송금했다.

경모씨(耿某)는 전모씨2(田某乙)이 이전에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적게 송금했다. 또한, 화장품이 진품이 아니라고 고객이 반품을 신청했고, 경모

씨(耿某)는 상품을 염성시로 반품시켰다. 경모씨(耿某)는 받는 사람을 “司苏”라고 작성해서 보냈다. 경모씨(耿某)는 2013년 연말부터 금년 5월까지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에게 총 10차례 송금을 했으며, 송금 금액은 약40만 위안이었다. 경모씨(耿某)는 구매한 “玫琳凯” 위조 화장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경모씨(耿某)는 왕모씨3(王某丙)을 통해서 화장을 대량 구매하기도 했으며, 최소 5만 위안의 화장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8) 증인 왕모씨2(王某乙)의 증언

왕모씨2(王某乙)는 타오바오 상점 “似水流情88”에서 “玫琳凯” 위조 화장을 구매한 사실을 진술했다. 왕모씨2(王某乙)는 2011년 인터넷 상점 “花间舞步”를 통해서 “雅芳”, “宣琪” 브랜드의 화장을 주로 판매했다. 2012년 상반기, 왕모씨2(王某乙)는 타오바오 상점 “似水流情88”(로그인명 담모씨(覃思念)) 관리자와 채팅을 통해 이 관리자도 “雅芳”을 판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모씨2(王某乙)는 “玫琳凯”을 “似水流情88”에서 구매했다. 배송은 운달물류회사(盐城韵达快递)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강소성 염성시 운달회사(江苏盐城韵达公司) “司苏”에게 반품했다. 왕모씨2(王某乙)는 “玫琳凯” 화장을 정가에서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고, 인터넷 상점으로 판매할 때는 정가가격의 6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왕모씨2(王某乙)가 구매한 “玫琳凯” 위조 화장품 가격은 최소 7만 위안이었다.

9) 증인 진모씨3(陈某丙)의 증언

진모씨3(陈某丙)은 전모씨1(田某甲) 또는 타오바오 상점 “似水流情88”, “爱我雅芳”에서 “玫琳凯”등 위조 화장을 구매한 사실과 거래 기록에 대해 진술했다. 진모씨3(陈某丙)은 2010년부터 타오바오에 “美丽俏佳人2011”과 “索菲雅-2008”상점을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玫琳凯”등 위조 화장품과 아동복을 판매했다.

진모씨3(陈某丙)은 화장품들을 전모씨1(田某甲)의 인터넷 상점에서 구매했으며, 이는 다른 상점보다 3-5%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이었다. 진모씨3(陈某丙)은 2012년 상반기부터 전모씨1(田某甲)으로부터 “宝相花”, “金美沙龙” 화장을 구매했다. 2012년 하반기에는 “玫琳凯” 화장을 구매했으며, 처음에는 타오바오를 통해 거래하다가 이후에는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대금은 은행을 통해서 지급했고, 진모씨3

(陈某丙)는 남편 진모씨4(陈某丁)의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ATM기계로 전모씨1(田某甲) 또는 진모씨1(陈某甲)에게 송금했다. 때로 진모씨3(陈某丙)는 시어머니 하모씨(何玲军)와 친구 당모씨(唐兴钻)의 알리페이로 전모씨1(田某甲) 또는 진모씨1(陈某甲)에게 송금했고, 때로는 염성시의 송모씨(宋某)에게 송금해 전모씨1(田某甲) 또는 진모씨1(陈某甲)에게 넘기도록 했다.

진모씨3(陈某丙)이 구매한 화장품 가격은 다른 인터넷 상점보다 저렴했다. 진모씨3(陈某丙)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玫琳凯” 화장품 비용을 지급한 것외에, 다른 화장품 비용도 지급했으며, 구매한 “玫琳凯” 화장품 비용은 대략 40만 위안이었다.

(진모씨4(陈某丁)의 계좌 62XXX71에서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된 내역) 지급된 비용은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구매한 화장품 비용 외에, 전모씨1(田某甲)에게 빌려준 10만 위안도 있으며, 전모씨1(田某甲)가 이미 갚았다. 이외에도 진모씨3(陈某丙)은 자외선 차단 제품이 출시된다는 전모씨1(田某甲)의 말에, 4.6만위안을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송금했다. 진모씨3(陈某丙)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총 671,040위안을 송금했으며, 갚은 돈과 관련 비용을 제하면 525,040위안이다.

(전모씨1(田某甲)의 6227001329010154396, 진모씨1(陈某甲)의 6227001328130346536, 62270011328260051237 등 은행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리된 내역서) 2010년 3월 9일 진모씨1(陈某甲)에게 송금한 5만 위안은 “雅芳” 화장품 구매 비용이었다. 2013년 3월 2일 전모씨1(田某甲)에게 송금한 5만 위안은 진모씨3(陈某丙)가 전모씨1(田某甲)에게 빌려준 돈이다. 이후에 전모씨1(田某甲)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를 통해 진모씨3(陈某丙)에게 갚았다. 2014년 3월 4일 진모씨1(陈某甲)에게 송금한 4.6만 위안은 진모씨3(陈某丙)이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구매한 자외선 차단 제품 비용이다. 그 외에 485,040위안은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宝相花” 등 화장품 구매 비용이었으며, 일부분은 “雅芳” 화장품 구매 비용이다. “玫琳凯” 화장품은 221,740위안으로, 2013년 1월 4일 114,100위안, 2013년 3월 19일 122,700위안, 2014년 3월 14일 22,000위안을 송금했다.

(담모씨(覃思念), 진모씨1(陈某甲)과 하모씨(何玲军)의 타오바오 거래 내역) 타오바오 상점 “似水流情88”, “爱我雅芳”은 모두 진모씨1(陈某甲)이 개설한 것이다. 2012년 6월 26일 29,799위안은 진모씨1(陈某甲)에게서 구매한 “雅芳” 화장품 구매 비용이며, 2013년 5월 9일 30,000위안은 진모씨1(陈某甲)가 빌린 돈으로,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를 통해 진모씨3(陈某丙)에게 갚았다. 2013년 7월 18일 4000위안은 진모씨1(陈某甲)이 빌린 돈이며, 나머지 72,600위안은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다.

(당모씨(唐兴钻)와 전모씨1(田某甲)의 알리페이 거래 내역) 이 거래 내역은 전모씨1(田某甲)가 빌린 돈으로, 이후에 전모씨1(田某甲)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를 통해 진모씨3(陈某丙)에게 갚았다.

(송모씨(宋某)와 하모씨(何玲军)의 알리페이 거래 내역) 이 중, 몇 백위안은 진모씨3(陈某丙)이 전모씨1(田某甲)를 대신해서 물품을 구매한 비용이다. 2013년 12월 17일 거래한 5,000위안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지급된 “克丽缇娜” 화장품 구매 비용으로,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를 통해서 전모씨1(田某甲)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2013년 12월 17일 거래한 45,710위안은 진모씨1(陈某甲)에게 지급된 “玫琳凯” 화장품 구매 비용으로,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를 통해서 진모씨1(陈某甲)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2014년 1월 23일 거래한 7,500위안은 전모씨1(田某甲)이 진모씨3(陈某丙)에게서 빌린 돈으로,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로 송금한 후, 전모씨1(田某甲)에게 다시 송금하도록 했다. 2014년 1월 23일 거래한 23,800위안은 진모씨1(陈某甲)에게 지급된 “雅芳” 화장품 구매 비용으로,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로 송금한 후, 진모씨1(陈某甲)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2014년 4월 거래한 20,000위안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지급된 “雅芳” 화장품 구매 비용으로,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로 송금한 후, 전모씨1(田某甲)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2014년 4월 5일 거래한 91,00위안은 전모씨1(田某甲)에게 지급된 “克丽缇娜” 스킨 구매 비용으로, 진모씨3(陈某丙)은 송모씨(宋某)의 알리페이로 송금한 후, 전모씨1(田某甲)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10) 증인 진모씨4(陈某丁)의 증언으로 진모씨4(陈某丁)는 아내 진모씨3(陈某丙)이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을 통해 화장품 판매를 한 사실을 입증했다.

11) 증인 계모씨(季某)의 증언으로 계모씨(季某)는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했다.

2013년 11월 11일 이전, 계모씨(季某)는 강소성 염성시(江苏盐城)에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해서 판매하였고, 판매자의 타오바오 상점의 명칭은 “qiqiqi6”(전모씨1(田某甲))이었다. 계모씨(季某)가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전모씨1(田某甲)의 타오바오 상점에는 “玫琳凯” 화장품이 올라와 있지 않았고, 계모씨(季某)가 전모씨1(田某甲)에게 전화로 필요한 종류와 수량을 주문하면, 전모씨1(田某甲)가 가격을 알려줬다. 이후에, 계모씨(季某)는 전모씨1(田某甲)의 타오바오 상점에 올라온 화장품을 구매했고, 가격은 “玫琳凯” 화장품의 가격과 비슷했다. 계모씨(季某)는 택배로 화장품을 받아본 후, 알리페이로 전모씨1(田某甲)에게 화장품 비용을 송금했다. 계모씨(季某)가 알리페이로 “qiqiqi6”에게 송금한 비용은 주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었으며, 계모씨(季某)가 알리페이로 “贝可儿专卖”에게 송금한 비용은 “宝相花”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었다. 계모씨(季某)가 구매한 “玫琳凯” 화장품의 종류는 200개였으며, 총 가격은 8,000위안이었다.

12) 증인 황모씨2(黄某乙)의 증언으로 황모씨2(黄某乙)는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했다.

2013년 9월부터, 황모씨2(黄某乙)가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전모씨1(田某甲)가 개설한 타오바오 상점 “贝可儿专卖”에서 “宝相花” 화장품과 “金美沙龙” 화장품을 구매했다. 고객이 품질에 이상을 얘기하자, 10월쯤 황모씨2(黄某乙)는 전모씨1(田某甲)에게 이에 대해 얘기했다. 전모씨1(田某甲)는 위조 화장품이라고 얘기했지만, 황모씨2(黄某乙)는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화장품을 구매했다.

(전모씨1(田某甲)와 황모씨2(黄某乙)의 알리페이 거래 내역) 황모씨2(黄某乙)는 2013년 9월전에는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雅芳” 화장품을 구매했고, 2013년 9월후에는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했다. 황모씨2(黄某乙)가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구매한 “玫琳凯” 화장품 가격은 총 430,121위안이었다.

13) 증인 장모씨4(张某丁)의 증언으로 장모씨4(张某丁)는 타오바오 상점 “似水流情88”과 “爱我雅芳”에서 “玫琳凯”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고, 전모씨1(田某甲)에게서 “克丽缇娜” 위조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했다.

장모씨4(张某丁)는 타오바오 상점 “雨嫣童装”을 개설했고, 닉네임은 “zhangyaowei1029”를 사용했으며, 배송 시에는 “小雅”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또한 남편의 닉네임 “子嫣0969”와 “子嫣2325”를 사용하기도 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司苏”라는 염성시(盐城)의 남자를 알게 되었고, “司苏”에게서 여러차례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했다. 구매한 총 가격은 203,903위안이었다. “司苏”의 타오바오 상점 명칭은 “似水流情88”과 “爱我雅芳”이었으며, 그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모두 정품이라고 말했으며 가격도 저렴했다.

(“子嫣0969, 子嫣2325”과 전모씨1(田某甲)의 “贝可儿专卖”의 거래 내역과 “zhangyaowei1029”와 “似水流情88”, “爱我雅芳”의 거래 내역을 제시했다. 거래된 “玫琳凯” 화장품 가격은 총 203,903위안이다. 거래된 “克丽缇娜” 화장품 가격은 총 55,051위안이나, 전모씨2(田某乙)에게서 구매한 “玫琳凯” 화장품 3,900위안을 제하면, 거래된 “克丽缇娜” 화장품 가격은 51,151위안이다.) 장모씨4(张某丁)가 “似水流情88”, “爱我雅芳”과 거래된 비용은 모두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며, 전모씨1(田某甲)은 “司苏”가 소개해줘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2013년 상반기에 거래된 비용은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이며, 장모씨4(张某丁)가 “司苏”와 거래한 비용이다. “司苏”는 장모씨4(张某丁)에게 전모씨1(田某甲)에게 3,900위안을 지급하도록 했다. “司苏”는 전모씨1(田某甲)와 함께 일하는 사이며 친구이기 때문에 전모씨1(田某甲)에게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2013년 하반기에 장모씨4(张某丁)와 전모씨1(田某甲)의 거래는, “司苏”가 장모씨4(张某丁)에게 전모씨1(田某甲)을 연결시켜줬으며, 장모씨4(张某丁)와 전모씨1은 “克丽缇娜” 스킨을 거래했다. “玫琳凯” 화장품은 운달물류회사(韵达快寄公司)를 통해서 배송했다. “克丽缇娜” 스킨은 직접 배송한 것으로, 총 거래된 가격은 51,151위안이었다.

14) 증인 곡모씨1(谷某甲)의 증언으로 곡모씨1(谷某甲)은 2011년부터 전모씨

1(田某甲)에게서 7만 위안의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그 중 “宝相花” 화장품은 450,000 위안(2013년 연말에 위조 화장품인 것을 발견함), “金美沙龙” 화장품은 15,000위안(2013년 연말에 위조 화장품인 것을 발견함), “雅芳” 화장품은 1만 위안(위조 화장품 인지 몰랐음)인 사실을 입증했다. 첫 번째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전모씨1(田某甲)은 영녕사(永宁寺)까지 배송해주었고, 곡모씨1(谷某甲)은 영녕사(永宁寺)로 가서 화장품을 받았고, 대금은 전모씨1(田某甲) 또는 운전기사에게 건내주었다. 곡모씨1(谷某甲)은 “玫琳凯” 화장품과 “唯真” 화장품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5) 증인 반모씨(潘某)의 증언으로 반모씨(潘某)는 인터넷 상점 “似水流情88”에서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인터넷 상점 사장의 은행카드로 송금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2012년과 2013년, 반모씨(潘某)는 인터넷 상점 “似水流情88”에서 115,670위안의 “雅芳” 화장품을 구매했다. 반모씨(潘某)는 대부분 알리페이를 통해서 송금했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기도 했다.

16) 증인 주모씨(朱某甲)의 증언으로 주모씨(朱某甲)는 전모씨2(田某乙)가 핸드폰 비용을 여러 차례 충전해준 사실을 입증했다. 전모씨2(田某乙)는 주모씨(朱某甲)의 사촌 형으로, 2012년부터 주모씨(朱某甲)는 전모씨2(田某乙)에게 핸드폰 비용 충전을 부탁했고, 매번 전모씨2(田某乙)가 주모씨(朱某甲)의 핸드폰 비용을 충전해주었다. “似水流情88”의 핸드폰 비용 충전 내역에 의하면, 총 7번을 전모씨2(田某乙)가 대신 충전해준 것을 알 수 있다. 주모씨(朱某甲)는 담모씨(覃思念)를 모르지만, 전모씨1(田某甲)은 알고, 전모씨1(田某甲)이 남양(南洋)의 진모씨5(陈某戊)의 창고를 임대해 화장품을 보관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주모씨(朱某甲)는 전모씨1(田某甲)과 용강(龙冈)에 화장품을 배송하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17) 증인 고모씨(高某)의 증언으로 고모씨(高某)는 인터넷으로 “雅芳” 화장품을 전모씨2(田某乙)에게 판매했으며, 전모씨2(田某乙)의 인터넷 상점 명칭은 “似水流情88”이고, 닉네임은 “覃思念”이며, 처음에는 전모씨2(田某乙)를 “司苏”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모씨(高某)는 인터넷 상점 “雅芳”을 개설하고, “雅芳” 화장품을 판매했다. 전모씨2(田某乙)는 고모씨(高某)에게서 “雅芳”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주로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했다. 고모씨(高某)는 운달물류회사(韵达快递)를 통해서 상품을 배송했으며, 받는 사람에는 “司苏”라고 적었다. 고모씨(高某)는 전모씨2(田某乙)로부터 “雅芳” 화장품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주로 전모씨2(田某乙)가 개설한 타오바오 상점 “似水流情88”에서 구매했다. 고모씨(高某)는 “似水流情88”에서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전모씨1(田某甲)의 은행 거래 내역에 근거해 정리된 내역서) 전모씨2(田某乙)가 고모씨(高某)에게서 “雅芳”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으로 37,400위안을 송금했다. 전모씨1(田某甲)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타오바오가 제공한 거래 내역: 고모씨(高某)와 담모씨(覃思念)) 고모씨(高某)가 전모씨2(田某乙)로부터 “雅芳” 화장품을 구매한 내역으로, 고모씨(高某)가 “玫琳凯” 화장품을 구매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실제로 “玫琳凯” 화장품을 배송하지는 않았다.

18) 증인 왕모씨3(王某丙)의 증언으로 왕모씨3(王某丙)은 장모씨3(张某丙)에게서 구매한 “玫琳凯”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인 것을 입증했다. 2011년, 왕모씨3(王某丙)은 장모씨3(张某丙)로부터 “玫琳凯” 화장품을 5번 구매했고, 매번 가격은 2,000위안이었다. 초기에는 위조 화장품인지 몰랐으나, 이후에 품질에 이상을 느꼈고, 진품과 비교를 해서 위조 화장품인 것을 발견했다.

19) 증인 주모씨(朱某甲)의 증언으로 주모씨(朱某甲)는 진모씨1(陈某甲)이 여러 차례 주모씨(朱某甲)의 물류회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했으며, “司苏”라는 계정을 이용한 사실을 입증했다.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은 부부이며, 전모씨2(田某乙)는 자신의 이름으로 배송을 하지 않았으며, 진모씨1(陈某甲)은 물류회사에서 “司苏”라는 계정을 이용했다. “司苏”라는 계정을 통해 이 기업이 배송을 몇 번했는지 검색할 수 있었다. 전모씨1(田某甲)도 배송했으며, 모두 안휘성 무호시 구강구(安徽芜湖鸠江区信德化附中通速递)으로 배송했으며, 다시 180XXXX0744 사람에게 보냈다. 또한 무석시(无锡)의

“小云”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으며, 주소는 석산구 안진화하명도 단지(锡山区安镇华夏名都小区)이며, 핸드폰 번호는 138XXXX6930이다. 현재 “小云”의 주소는 회안시 우이현 말패진(淮安市盱眙县马坝镇申通网点)이다.

20) 증인 예모씨(倪某)의 증언으로 예모씨(倪某)는 염성시(盐城)의 한 남자에게 마킹기계 한 대를 판매한 사실을 입증했다. 2012년 11월, 염성시(盐城)의 전모씨2(田某乙)가 예모씨(倪某)에게 마킹기계를 주문했고, 전모씨2(田某乙)는 상주 흠미달(常州鑫美达) 마킹설비 유한공사에 직접 왔었다. 2012년 10월 10일, 회사의 엔지니어 양모씨2(杨某乙)가 염성시에 기계를 설치하러 갔고 전모씨2(田某乙)와 계약을 맺었다. 또한 전모씨2(田某乙)는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회사에는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대금 지급 방식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21) 증인 양모씨2(杨某乙)의 증언으로 양모씨2(杨某乙)는 2012년 12월 10일 염성시(盐城)에 S58 마킹기계를 설치하러 갔으며, 구매자의 성은 전(田)이며, 계약서상의 이름이 전굉군(田宏军)인 사실을 입증했다.

22) 증인 진모씨5(陈某戊)의 증언으로 진모씨5(陈某戊)는 2013년 9월 남양진 신양촌(南洋镇新洋村四组一靠路边的房子)의 한 장소를 한 여자에게 임대해준 사실을 입증했다.

23) 증인 고모씨1(顾某甲)의 증언으로 고모씨1(顾某甲)는 2013년 5월 정호구(亭湖区) 전강방주(钱江方舟) 단지의 15동 901호 차고를 진모씨1(陈某甲)에게 임대해준 사실을 입증했다.

24) 증인 주모씨2(朱某乙)의 증언으로 주모씨2(朱某乙)는 염성시 성남신구 금수천지(盐城城南新区锦绣天地)의 10동 차고를 전모씨1(田某甲)에게 임대했고, 2012년에는 남양 교사 아파트(南洋教师公寓)를 임대해줬고, 전모씨1(田某甲)이 이곳에 위조화장품을 보관한 사실을 입증했다.

25) 증인 고모씨2(顾某乙)의 증언으로 고모씨2(顾某乙)는 “남경진(南京陈)”이라

는 남자를 도와 공병을 생산한 사실을 입증했다. 고모씨2(顾某乙)는 “남경진(南京陈)” (남자, 핸드폰 번호: 159XXXX4583)(이후에 그가 염성시에서 보내온 택배에 진모씨1(陈某甲)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에게 10만개의 플라스틱 병을 생산해줬으며, 모두 공병으로 상표가 인쇄 되어있지 않았다. 고모씨2(顾某乙)는 공장이 없어서, 타인에게 위탁 생산했으며, 생산되면 다시 고모씨2(顾某乙)에게 보내왔다.

26) 증인 주모씨2(周某乙)의 증언으로 주모씨2(周某乙)는 진모씨1(陈某甲)의 주문으로 공병에 “玫琳凯” 상표를 인쇄한 사실을 입증했다. 주모씨2(周某乙)의 공장은 주로 병과 병뚜껑에 상표를 인쇄하는 작업을 한다. 주모씨2(周某乙)와 진모씨1(陈某甲)는 3번 거래를 했으며, 고모씨2(顾某乙)가 공병을 주모씨2(周某乙)에게 보내면, 주모씨2(周某乙)는 병에 “玫琳凯” 상표를 인쇄했다. 주모씨2(周某乙)는 인쇄된 병을 염성시(盐城)의 진모씨1(陈某甲)에게 보냈고, 진모씨1(陈某甲)는 비용을 주모씨2(周某乙)의 은행카드로 송금했다. 주모씨2(周某乙)는 총 15,000개 병에 인쇄했으며, 받은 비용은 가 공비와 운송비였다. 각각 5,150위안, 12,700위안, 7,050위안을 받았고, 운송비를 제 하면 23,000위안이다.

27) 증인 허모씨(许某)의 증언

허모씨(许某)는 진선생(陈先生)이라는 남자에게 공병을 생산해준 사실을 진술했다. 2013년 3월부터, 염성시(盐城)의 진선생(陈先生)이라는 남자와 거래를 했으며, 첫 거래는 4,000개를 생산해줬으며, 이후에 6-7,000개 플라스틱 병을 생산해줬다. 진선생(陈先生)은 3만 위안을 허모씨(许某)의 아내 진염홍(陈艳红)의 공상은행 카드로 송금했다. 허모씨(许某)는 생산된 병뚜껑을 신방물류(新邦物流)를 통해서 광주시 백운구(广州白云区)의 주국화(周国华)에게 배송했다. 병은 몇 차례로 나눠서 진선생(陈先生)에게 보냈으며, 받는 사람 이름은 “司苏”라고 썼다. 허모씨(许某)는 하반기에 공병을 3천 개 생산했고, 생산된 공병의 가격은 총 2만 위안이었다. 병뚜껑은 주모씨2(周某乙)에게 보냈고, 병은 염성시(盐城)의 “司苏” 또는 진선생(陈先生)에게 보냈다. 허모씨(许某)가 생산한 공병에는 모두 상표가 없었다.

(진염홍(陈艳红)과 진선생(陈先生)(진모씨1(陈某甲))의 은행 거래 내역) 허모씨(许某)와 진선생(陈先生)의 은행 거래 내역으로, 대부분 진선생(陈先生)이 허모씨(许某)

에게 화장품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생산된 병의 비용은 총 52,000위안이며, 나머지는 금형틀의 비용이다.

28) 증인 곡모씨2(谷某乙)의 증언으로 곡모씨2(谷某乙)는 전모씨2(田某乙)(“司苏”)와 진모씨1(陈某甲)에게 화장품 원료를 공급한 사실을 입증했다. 전모씨2(田某乙)(“司苏”)는 곡모씨2(谷某乙)에게 화장품 원료를 요구했으며, 곡모씨2(谷某乙)는 전모씨2(田某乙)에게 화장품 원료를 판매했다. 곡모씨2(谷某乙)는 2014년 2월까지 총 13만 위안의 화장품 원료를 공급했으며, 매 kg당 70위안으로 총 1,200kg을 공급했다. 전모씨2(田某乙)(“司苏”)의 아내가 진모씨1(陈某甲)이다.

29) 증인 팽모씨2(彭某乙)의 증언으로 광주시 금오화장품회사(广州市金奥化妆品有限公司)의 법인 대표는 팽모씨3(彭某丙)이고, 팽모씨1(彭某甲)은 예전에 공장에서 생산을 관리하던 사람인 것을 입증했다.

30) 증인 왕모씨(王某丁)의 증언으로 왕모씨(王某丁)는 2013년 3월 황모씨1(黄某甲)이 타인을 시켜 자신의 건설은행 카드로 29,000위안을 송금했고, 다시 황모씨1(黄某甲)에게 송금한 사실을 입증했다.

31) 증인 장모씨5(张某戊)의 증언으로 장모씨5(张某戊)는 쌍원서로(双元西路)에 복권가게를 열었고, 2011년 엄모씨(严某)가 장모씨5(张某戊)에게 양도한 것이며, 2013년 7월에 전모씨2(田某乙)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했다.

32) 증인 엄모씨(严某)의 증언으로 엄모씨(严某)는 2010년 자신의 복권가게를 장모씨5(张某戊)에게 양도한 사실과 자신의 건설은행 카드(436742132812011932)를 장모씨5(张某戊)에게 준 사실을 입증했다.

33) 증인 진모씨(秦某)의 증언으로, 진모씨(秦某)는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를 모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진모씨(秦某)는 판매한 “玫瑰凯” 화장품은 회사가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며, 때로 회사가 판촉상품으로 작은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으나, 회사는 25% 이상으로는 할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4) 증인 팽모씨(彭某)의 증언으로 팽모씨(彭某某)는 자신이 광주시 금오화장품회사(广州市金奥化妆品有限公司)의 법인 대표이며, 간 질환을 앓은 사실이 입증되었다. 동생 팽모씨1(彭某甲)은 회사에서 생산 작업을 관리하며, 원료 구매와 생산 판매의 모든 일을 팽모씨1(彭某甲) 대신 맡아 하고 있다고 했다. 팽모씨(彭某)는 전모씨1(田某甲)을 모르고, 전모씨1(田某甲)이 진모씨(秦某)의 은행카드로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못했다.

3. 서증

1) 공안 기관이 제출한 상주하는 인구의 기본 정보로 각각 피고인이 범죄시형사책임을 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을 입증했다.

2) 사건 등기표와 입안결정서, 송치된 사건 상황, 사건 이송 기록, 체포 경위

3) 관련 등록 상표의 증거 자료

(1) “金美沙龙” 화장품 허가 갱신 등록증명서, 상표 등록증, 상표 갱신 등록증명서 등 관련 자료로 “金美沙龙”이 등록 상표임을 증명했다.

(2) “玫琳凯” 화장품 기업 법인 등록증, 수권서, 상표 등록증, 화장품 허가 갱신 등록증명서, 가격 평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로 “玫琳凯”, “MARYKAY”이 저명 상표임을 증명했다.

(3) “克丽缇娜” 화장품 수권서, 기업 법인 등록증, 상표 등록증, 가격 평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로 “CHLITINA”가 등록 상표임을 증명했다.

(4) “四红”, “宝相花” 화장품 상표 등록증, 기업 법인 등록증으로 “四红”, “宝相花”가 등록 상표임을 증명했다.

(5) “唯真” 상표 등록증, 기업 법인 등록증, 수권서 등 관련 자료로 “唯真”이 등록 상표임을 증명했다.

4) 피고인과 관련 증인의 은행 거래 내역으로 경모씨(耿加成), 한모씨(韩月丽), 왕모씨(王成军), 담모씨(覃思念), 송모씨(宋某), 진모씨4(陈某丁) 등 여러 사람에게 비용이 입금된 사실이 입증 되었고 또한 피고인들의 계좌와 건설은행 카드에서 정가상(郑可相), 임모씨(林孝发)[양모씨(杨某甲)가 두 사람에게 송금함], 경모씨(耿加成), 한모씨(韩月丽), 왕모씨(王成军), 담모씨(覃思念), 송모씨(宋某), 진모씨4(陈某丁), 황모씨1(黄某甲) 등 여러 사람에게 송금된 사실이 입증 되었다.

- (1)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2)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의 남편 등모씨(邓可民)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3) 담모씨(覃思念)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4) 송모씨(宋某), 곡모씨1(谷某甲), 이모씨(李万芹)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5) 양모씨(杨某甲)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6) 황모씨1(黄某甲)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7) 임모씨(林孝发)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8) 정가상(郑可相)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9) 팡모씨3(彭某丙)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10) 팡모씨1(彭某甲)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
- (11) 진모씨1(陈某甲)의 은행카드 입출금 거래 내역

5)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과 관련된 거래 내역으로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이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으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했다.

(1) 공안 기관이 해당 기관에 관련 피고인의 알리페이 거래 내역을 위탁한 절차

- (2) 인터넷 상점 “贝可儿”의 판매 기록
- (3) 인터넷 상점 “爱我雅芳”의 판매 기록
- (4) 인터넷 상점 “似水流情88”의 판매 기록
- (5) 제모씨(季某)가 제공한 타오바오 거래 기록

(6) 인터넷 상점 “似水流情88”의 충전 기록으로 주모씨(朱某甲) 등에게 핸드폰 비용을 충전해준 사실을 입증했다.

6) 압수 물품 목록 및 사진

(1) 공안 기관이 금수천지(锦绣天地) 10동 창고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6일) : “玫琳凯”, “宝相花”, “克丽缇娜”, “嫣诗菲尔”, “金美沙龙” 화장품 등 여러 개를 압수했다. “玫琳凯” 화장품 총 924병, 아이크림 포장 박스 156개, 병뚜껑 350개와 “克丽缇娜”의 각종 화장품 총 158병; “宝相花”의 각종 화장품 총 286병, 공병 1200개; “金美沙龙”의 각종 화장품 총 1303병; “嫣诗菲尔”의 각종 화장

품 총 4895병, 라벨지 55160장, 공병 722개, 사용설명서 1상자, 광고지 3박스 600장; “唯真” 화장품 박스 1000개와 마스크팩 156장, V-라인 마스크팩 63박스, 투명 마스크팩 4박스, CHOISKYCN 마스크팩 68박스, 마스크팩 24박스.

(2)公安 기관이 남양 교사 아파트 2차(南洋镇教师公寓二期) 동측 창고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7일) : 대량의 “玫琳凯” 화장품 완성품, 포장 박스, 공병; 소량의 “克丽缇娜” 화장품 라벨지; “雅芳” 스킨, 분무마개, 포장 박스, 마킹기계 1대, 포장 기계 3대, 분할포장 기계 2대, 바인더 1대, 주입 기계 1대; “玫琳凯”의 각종 화장품 총 3,758병, 포장 박스 88,028개, 공병 22,191개, 병뚜껑 9,548개, 분무마개 1,750개, 내부 용기 6,962개, 작은 병 5,620개, 커버 4,229개, 병마개 6,000개, 손잡이 달린 뚜껑 5,100개; 바코드지 1박스, 가격표 1박스; 2호 오일컨트롤 스킨 3통, 1호 보습 스킨 8통; “克丽缇娜”의 각종 화장품 완성품 20병, 공병 2,688개, 작은 분무마개 2,500개; “宝相花” 공병 4,884개; 아이크림 5포대; “雅芳” 화장품 여러개.

(3)公安 기관이 전강방주(钱江方舟) 16동 346 차고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7일) : 종이 박스로 포장된 “玫琳凯”, “雅芳” 화장품 및 병뚜껑 등 물품. “玫琳凯”의 각종 화장품 총 4,093병, “雅芳”의 각종 화장품 총 80병, 549개, 샴푸 1,370봉지, 병뚜껑 2,520개.

(4)公安 기관이 전강방주(钱江方舟) 16동 268 차고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6일) : 대량의 “玫琳凯”, “雅芳” 화장품을 압수했다. “玫琳凯”의 각종 화장품 총 32병, 세트 50개; “雅芳”의 각종 화장품 여러 개.

(5)公安 기관이 전강방주(钱江方舟) 16동 1102호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6일) : Lenovo 노트북, Sony 컴퓨터 각 1대.

(6)公安 기관이 정호구(亭湖区) 염동개발구(盐东开发区) 신양합작사(新洋合作社) 진모씨5(陈某戌)의 집 차고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6일) : “玫琳凯”, “宝相花”(공병 7,430개, 박스 11,240개), “克丽缇娜”(공병 4170개), “四红” 진공 시리즈(공병 4800개, 박스 4,100개), “雅芳” 화장품 완성품 및 미완성품을 압수했다.

(7)公安 기관이 정호구(亭湖区) 성남인상단지(城南印象小区) 송모씨(宋某)의 집을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7일).

(8)公安 기관이 정호구(亭湖区) 다채프린팅(多彩印务)을 수사한 기록 및 압

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21일) : “宝相花” 포장 박스 2개, “玫琳凯” 포장 박스 1개, 영수증 테이프 2개, 수기 영수증 1권, 컴퓨터 본체 1대, 핸드폰 1대 등.

(9) 공안 기관이 황모씨1(黄某甲)의 거처 등을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28일) :顺丰택배(顺丰速运快寄)운송장 25장, 카드 명세서 1장, 납품서 9장, 강소 통주시(江苏通州市) 광명포리제품공장(光明包里制品厂) 영수증 2장(전모씨1(田某甲)이라는 글씨가 있었음), 포장 박스 3개, 공상은행 카드 1장, 농업은행 카드와 판매 명세서 2권.

(10) 공안 기관이 양모씨(杨某甲)가 경영하는 장소를 수사한 기록 및 압수한 물품 목록(2014년 5월 28일) : 핸드폰 1대, 컴퓨터 본체 1대, 납품서 2권 총 9장(수령인은 宏祥, 상품은 “玫琳凯” 포장 박스), 납품서 영수증 4장(“玫琳凯”), 세금 영수증 6장, 대금 영수증 1장(“玫琳凯”), 포장 박스 1개(“玫琳凯”).

(11) 공안 기관이 장모씨3(张某丙)에게서 압수한 물품 목록 및 감정서(2013년 9월 24일) : 컴퓨터 본체 2대, 공책 4권, 근무수첩1권, “玫琳凯”, “宝相花”, “金美沙龙”, “唯真” 화장품 여러 개(압수한 화장품들 모두 위조 화장품이었다.)

(12) 공안 기관이 장모씨3(张某丙)에게서 압수한 장부 복사본 및 전모씨1(田某甲)과 장모씨3(张某丙)의 거래 내역으로 2012년-2013년에 전모씨1(田某甲)과 장모씨3(张某丙)이 위조 화장품을 거래한 사실을 입증했다. “宝相花” 거래 금액은 102,950위안이고, “金美沙龙” 거래 금액은 162,847위안이며, “玫琳凯” 거래 금액은 1,408,645위안이었다.

(13) 공안 기관이 왕모씨2(王某乙)에게서 압수한 물품 목록 및 감정서(2013년 9월 24일) : “玫琳凯” 화장품 여러 개, 압수한 화장품 모두 위조 화장품이었다.

(14) 공안 기관이 황모씨1(黄某甲)에게서 압수한 전모씨1(田某甲)의 주문서,顺丰택배(顺丰快递)운송장, 물증 사진.

(15) 공안 기관이 양모씨(杨某甲)에게서 압수한 물증 사진,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

(16) 공안 기관이 장모씨1(张某甲)에게서 압수한 물증 사진 : 장숙평(张淑萍)이 제공한 “玫琳凯” 화장품 병 사진.

(17) 현장 사진 : 남양 교사 아파트(南洋教师公寓) 창고 내외(기계, 현장 생산 사진, 상품 사진); 남양진 교사 아파트 2차(南洋镇教师公寓二期) 창고의 위조 화장품, 2호 오일 컨트롤 스킨, 1호 보습 스킨, “玫琳凯” 위조 화장품, 포장 박스, 공병,

분무마개, 분할포장 기계, 주입 기계, 마킹 기계, 바인더; 신민(新民)창고 화장품 현장 사진, “玫琳凯” 위조 화장품, “克丽缇娜”, “宝相花”, “四红”화장품; 금수천지원(锦绣天地苑)의 전모씨1(田某甲)이 임대한 차고 외부, 창고 내 상품이 놓여있는 사진, “玫琳凯”, “克丽缇娜”, “金美沙龙”, “宝相花”, “唯真” 등 화장품; 전모씨2(田某乙)와 진모씨1(陈某甲)의 전강방주(钱江方舟)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 “玫琳凯” 위조 화장품; 전모씨2(田某乙)에게서 압수한 운송장 등; 송모씨(宋某) 집 사진, 집 안에 압수한 화장품 사진, 운송장 등.

7) 마킹 기계 구매 계약서로 상주흥미달(常州鑫美达) 마킹기계 설비 유한공사가 2012년 12월 10일 마킹기계 1대를 전굉군(田宏军)에게 판매한 사실을 증명했다.

8) 사건과 관련된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 등 각 브랜드 화장품의 정품 가격 등.

9) 광주시 금오화장품회사(广州市金奥化妆品有限公司)의 관련 자료와 생산물품 목록으로 2012년 광주시 금오화장품회사(广州市金奥化妆品有限公司)가 “金美沙龙” 화장품을 생산한 사실을 증명했다.

10) 염도구(盐都区)公安국의 수사 요원 서홍호(徐洪浩)와 진인명(陈仁明)이 제출한 상황 설명

4. 물증

수사 요원이 압수한 “玫琳凯”, “克丽缇娜”, “宝相花”, “金美沙龙” 등 위조 화장품의 완성품, 미완성품, 병, 포장 박스, 생산 설비 등은 현재 수사 기관이 압수한 상태이다.

5. 감정 의견

1) 상해 여달일화 유한공사(上海丽达日化有限公司)가 제출한 감정서와 염도구(盐都区)公安국의 감정 요청서에 의해서 김준(金俊)이 상표 등록번호 175193호 “金美沙龙” 상표의 권리자인 것을 증명했다. 이 상표는 3류: 화장품, 샴푸, 폼클렌징, 샤워

용 화장품, 립스틱, 향수, 미백크림, 마스크팩, 염색약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김준(金俊)은 중국에서 상해 여달일화 유한공사(上海丽达日化有限公司)의 수권을 받아 생산, 포장, 판매를 했다.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이 압수한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등이 생산한 상품은 “金美沙龙” 등록 상표의 위조 상품이며, 총 금액은 229,524위안이다.

2) 심천 아특률(亚特律) 상표대리 유한공사가 제출한 감정서와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의 감정 요청서에 의해서 “玫琳凯” 회사가 상표 등록번호 1380186호 “玫琳凯”, 1275186호 “MARYKAY” 상표의 권리자인 것을 증명했다.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이 압수한 “玫琳凯” 상표 라벨지는 “玫琳凯”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玫琳凯”, “MARYKAY” 위조 화장품이다. 압수한 목록에 의하면, 공병은 23,811개, 포장 박스는 109,928개, 완성품의 가격은 2,031,804위안이다.

3) “克丽缇娜” (상해) 무역유한공사가 제출한 감정서와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의 감정 요청서에 의해서 “克丽缇娜” 지식재산권 유한공사가 “克丽缇娜”(중문, 영문, 간체자, 번체자) 등록 상표(상품류 및 서비스류 포함)의 권리자이며, “克丽缇娜” (상해) 무역유한공사는 국제저명 미용 화장품 “克丽缇娜” 상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회사이며, “克丽缇娜”(중문, 영문, 간체자, 번체자) 등록 상표(상품류 및 서비스류 포함)의 유일한 권리자임을 증명했다.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이 압수한 물품 중 전모씨1(田某甲)의 물품은 “克丽缇娜” 등록 상표의 위조 상품이다. 압수한 목록에 의하면, 공병은 6,858개, 포장 박스 59,120개, 완성품의 가격은 1,128,923위안이다.

4) 북경 모니춘천 과기발전 유한공사(慕妮春天科技发展有限公司)가 제출한 감정서와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의 감정 요청서에 의해서 북경 모니춘천 과기발전 유한공사(慕妮春天科技发展有限公司)가 “宝相花”, “四红”상표의 권리자임을 증명했다.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이 압수한 “宝相花”, “四红” 화장품은 위조 화장품이다. 압수한 목록에 의하면, 공병은 18,314개, 포장 박스는 15,340개, 완성품의 가격은 336,345위안이다.

5) 雅芳 (중국) 유한공사가 제출한 감정서와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의 감정 요

청서에 의해서 雅芳 (중국) 유한공사가 상표 등록번호 1544233호 “雅芳 AVON” 상표 등 권리자임을 증명했다.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이 압수한 “雅芳” 상표 라벨지는 雅芳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위조 상표 라벨지이다. 압수한 목록도 제출했다

6) 상해 보진(宝臻) 미용과기발전 유한공사가 제출한 감정서와 염도구(盐都区) 공안국의 감정 요청서에 의해서 상해 보진(宝臻) 미용과기발전 유한공사(원 상해唯真 화장품유한공사)가 2005년부터 “고보습 영양크림”의 생산과 상품 업그레이드를 중단 했음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압수한 상품은 위조 화장품이라고 감정했다.

6. 수사 기록

1) 제출한 기록(2013년 10월 22일)으로 왕모씨2(王某乙)의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 “花间舞步”와 “似水流情88”(등록자 覃思念), qiqiqi 6(등록자 송모씨(宋某))의 거래 기록; 왕모씨2(王某乙)가 알리페이 18355682231@163.com을 통해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9월 21일 사이에 “似水流情88”(등록자 覃思念)의 상품을 구매한 기록; 왕모씨2(王某乙)가 알리페이 18355682231@163.com을 통해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의 수입 기록 및 “玫琳凯” 화장품 판매 기록을 증명했다.

2) 전자 증거 수사 기록으로 공안 기관이 수사한 진모씨1(陈某甲)과 전모씨2(田某乙)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에서 발견한 알리바바 채팅 기록 등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증명했다.

3) 식별기록을 통해 예모씨(倪某)는 전모씨2(田某乙)가 마킹기계를 구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사실; 양모씨(杨某甲)는 전모씨2(田某乙)가 마킹기계를 구매한 사람이며, 계약 당시 전굉군(田宏军)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실; 고모씨2(顾某乙)는 전모씨2(田某乙)가 “남경진(南京陈)이라는 것을 안 사실; 전모씨1(田某甲)이 양모씨(杨某甲)가 “정가상(郑可相)이라는 것을 안 사실; 팡모씨1(彭某甲)는 전모씨2(田某乙)가 자신과 광주에서 “玫琳凯” 위조 화장품 사업에 대해 상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사실; 양모씨(杨某甲)는 전모씨2(田某乙)가 자신과 광주에서 “玫琳凯” 위조 화장품 사업에 대해 상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사실을 증명했다.

7. 데이터

절강 타오바오 인터넷 유한공사(浙江淘网络有限公司), 알리페이 (중국) 인터넷 기술 유한공사(支付宝 (中国) 网络技术有限公司)는 관련된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의 상품 거래 내역 및 알리페이의 데이터를 조사했다.

본안의 상술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고 대질 심문을 통해, 출처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사실이며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법원은 상술한 증거를 채택한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의 변호인은, 관련 상표권자가 감정 보고서를 조작했고, 감정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는 변호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본 법원은 본안의 감정 사항은 주로 침해 의심상품이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행한 감정으로써, 상표권자가 감정을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제출한 감정 의견을 판결 근거로써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의 변호인은 단체 범죄 사실에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팡모씨3(彭某丙)은 광주시 금오화장품회사(广州市金奥化妆品有限公司)의 법정 대표인이고, 팡모씨1(彭某甲)은 부사장이었다. 본 법원은 공소 기관이 팡모씨1(彭某甲)을 기소하고, 팡모씨3(彭某丙)은 다른 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단체 범죄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처리 가능하며,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의 형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의 변호인은 9만 위안이 삭감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公安 기관의 심문과 본안 법정 심문 중, 9만 위안은 팡모씨3(彭某丙)의 치료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 판매 금액에서 삭감해야 한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변호인은 황모씨1(黄某甲)은 등록 상표 라벨을 불법 제조하지 않았다는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전모씨1(田某甲)이 자신에게 상품 샘플을 제공하며, “玫瑰琳凯”, “克丽缇娜”등 라벨이 포함된

병을 생산하라고 시켰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샘플을 받은 후, 제조상에게 위조 화장품 병을 생산하도록 위탁했고, 관련 상품의 샘플을 제조상에게 보냈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금형 틀의 비용을 직접 부담했고, 전모씨1(田某甲)의 요구에 따라 생산된 병을 화장품 주입 공장에 보냈다. 본 법원은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주관적으로는 위조 생산자의 제작에 공동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위조 생산자에게 상표 샘플과 병 금형 틀을 제공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의 변호인은 불법 판매한 금액이 8.3만 위안이어야 한다는 변호 의견을 제출하였다. 본 법원은 불법 판매 금액은 병의 가격 ×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해야 하며, 병의 가격과 수량이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하는데, 그러나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황모씨1(黃某甲)의 진술에 의하면, 병의 수량은 모두 “대략”,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병의 수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본 법원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陳某甲), 팡모씨1(彭某甲)은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동일 상품에 동일 상표를 사용 했고,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는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 양모씨(楊某甲), 장모씨1(張某甲)은 등록상표 라벨을 위조 생산 및 판매하였다. 그 중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 양모씨(楊某甲)의 행위는 매우 심각하며, 장모씨1(張某甲)의 행위는 심각하며, 그 행위가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陳某甲), 팡모씨1(彭某甲)은 등록 상표 도용 죄를 범했고,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 양모씨(楊某甲), 장모씨1(張某甲)은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를 범한 사실을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고, 죄상에 대한 성질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陳某甲), 팡모씨1(彭某甲)은 등록 상표 도용 행위에서 공동 범 죄를 범했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은 공동 범 죄에서 주된 역할을 했기에, 주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1(彭某甲)은 공동 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기에, 중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 전모씨2(田某乙),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1(彭某甲), 황모씨1(黄某甲)은 사건이 송치된 후, 사실대로 범죄 사실을 진술했기에 가벼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피고인 양모씨(杨某甲), 장모씨1(张某甲)은 수사 요원이 심문할 때,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진술했기에, 자수에 해당하며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을 가할 수 있다.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 팡모씨1(彭某甲), 황모씨1(黄某甲), 양모씨(杨某甲), 장모씨1(张某甲)은 초범이며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 제 215조, 제 25조 제 1항, 제 26조 제 1항 및 4항, 제 27조, 제 67조 제 1항 및 3항, 제 72조, 제 73조, 제 74조,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 3조,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

1. 피고인 전모씨1(田某甲)은 등록 상표 도용 죄로,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40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4년 5월 7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에 해당된다.)

2. 피고인 전모씨2(田某乙)는 등록 상표 도용 죄로, 유기징역 3년, 벌금 25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4년 5월 7일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에 해당된다.)

3. 피고인 진모씨1(陈某甲)은 등록 상표 도용 죄로,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4. 피고인 팡모씨1(彭某甲)는 등록 상표 도용 죄로,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5.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로,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월,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6. 피고인 양모씨(楊某甲)는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로,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7. 피고인 장모씨1(張某甲)은 등록 상표 라벨 불법 제조 및 판매 죄로, 단기징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8. 공안 기관이 압수한 “玫琳凱”, “克丽缇娜”, “宝相花”(四红), “唯真” 등 위조 화장품 및 “玫琳凱”, “克丽缇娜”, “宝相花”(四红), “唯真” 상표가 인쇄된 포장 박스, 화장품 병과 화장품, 생산설비 등 물품은 몰수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강소성 고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8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서춘하 (徐春霞)

인민배심원 가 연 (贾 娟)

인민배심원 이 연 (李 砚)

2015년 1월 28일

서기원 서영정(徐颖婷)

나. 백운구 균화가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6) 월 0111 형초 251호

공소 기관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수운검공소형소 (2016) 110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를 등록상표 도용 죄로 기소하였으며, 2016년 1월 11일 본 법원에 공소 제기했다. 본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소속검사 정아(丁亚)를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도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석하였다. 현재 본안은 심리가 종결되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 신모씨(申某), 증모씨2(曾某乙), 마모씨(马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가 증모씨3(曾某丙)과 “欧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에게 고용되어, 2014년 10월부터 광주시 백운구 균화가 석마촌 소마남1로 4층에 위치한 화장품공장에서 “DIOR” 및 “CHANEL” 등 등록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한 사실을 기소하였다.

2015년 7월 20일 12시경,公安요원은 상기 주소에서 피고인 및 이와 관련된 3명을 모두 체포하였고 2,288,100위안에 상당하는 “DIOR”등록상표의 위조 립스틱 등 화장품과 뚜껑, 컬러케이스, 재료 혼합기, 포장기계 등을 압수하였다. 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소기관은 증인의 증언, 서면자료, 감정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공소기관은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등록상표 도용 죄로 판단되기에, 본 법원에 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은 공소기관의 기소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아래와 같다. 2014년 10월부터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 신모씨(申某), 증모씨2(曾某乙), 마모씨(马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는 증모씨3(曾某丙)과 “欧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에게 고용되었으며, 광주시 백운구 군화가 석마촌 소마남1로 4층에 위치한 화장품공장에서 “DIOR” 및 “CHANEL” 등 등록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2015년 7월 20일 12시경, 공안당국은 상기 주소에서 피고인 및 이와 관련된 3명을 모두 체포하였고 2,288,100위안에 상당하는 “DIOR”등록상표의 위조 립스틱 등 화장품과 뚜껑, 컬러케이스, 재료 혼합기, 포장기계 등을 압수하였다.

상술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는 재판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증인 원모씨(袁某), 이모씨(李某), 신모씨(申某), 증모씨2(曾某乙), 마모씨(马某)의 증언 및 피고인의 변론, 사안과 관련된 현장사진, 압수한 위조 화장품 사진, 제조기계, 포장재료, 생산원료 사진,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의 핸드폰에 저장된 캡처사진, 출근기록 사진, 증거목록, 광주시 공안국식약품 조사원들이 제출한 수사 상황 설명, MAC화장품유한공사, MAKEUPFOREVER 회사, CHANEL유한공사(프랑스), DIOR회사의 상표 등록 자료, 대리위탁서, 감정보고서, 가격증명서, 미수권증명 등, 공안기관이 제출한 압류 결정서 및 압류한 물품 목록, 광주시 물가국 가격인증증심에서 발행한 수가인검(2015)1315호 사진 관련 재산 가격 감정결론서 및 사진 관련 재산 가격 감정명세서표, 광주시 물가국 가격인증증심에서 발행한 수가인검(2015)84,124호 복사본, 피고인의 출두 경위 등 증거가 확인 되었으며,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

본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등록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의 혐의는 심각하며 그 행위는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의 등록상표 도용 죄는 해당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범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은 해당 범행에서 종범이므로 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은 재판에 회부된 후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으므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 제27조, 제67조3항, 제52조, 제53조, 제 64조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1. 피고인 증모씨1(曾某甲)은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므로 8개월의 유기징역과 5천위안의 벌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에 해당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압수한 위조 화장품 립스틱, 제작기계 등의 물건은 모두 몰수하여 폐기한다. (광주시 공안국에서 집행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둥성 광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왕 문(王文)
인민배심원 진수아(陈秀娥)
인민배심원 여 진(黎珍)

2016년 01월 27일
서기원 방새경(方赛卿)

다. 백운구 가화가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6) 월 0111 형초 998호

공소 기관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유모씨(刘某), 출생지 광동성 산둥시 조양구, 현재 광둥시 산둥시 조양구 거주(해당 개인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확보된 것임). 본 사건으로 2015년 11월 10일 구속되어 같은 날 형사 구금 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제3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양수홍(杨秀宏), 광둥 국휘변호사사무소(国晖律师事务所) 변호사.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수운검공소형소 (2016) 893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유모씨(刘某)를 등록상표 도용 죄로 기소하였으며, 2016년 3월 31일에 본 법원에 공소 제기했다. 본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장정(张静)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유모씨(刘某) 및 변호인 양수홍(杨秀宏)도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석하였다. 본 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유모씨(刘某)가 장모씨(张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에게 고용되어, 2015년 5월부터 백운구 가화가 학태로87-89호 혜신공업구 F동 4층에서 임모씨(林某), 허모씨(许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와 함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메이블린”, “MAXFACTOR” 등 등록상표의 마스크라, BB크림 등의 위조 화장품을 가공 및 생산한 사실에 대해 기소하였다. 2015년 11월 10일,公安요원은 상기 주소지에서 유모씨(刘某), 임모씨(林某), 허모씨(许某)를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메이블린”, “MAXFACTOR” 등 등록상표의 마스크라, BB크림의 위조 상품 20,540개와 “欧某”, “완메이(完美)”, “메이지MG(美即)”, “니베아” 등 등록상표의 각종 위조 화장품, 생산원재료, 생산기계, 매출전표를 압수하였다. 압수한 “메이블린”, “MAXFACTOR” 등 등록상표의 마스크라, BB크림의 위조 상품 20,540개는 78,783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5월부터 상기 압수한 마스크라, BB크림의 판매를 통해 10,947위안을 부당이득 취하였다.

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소기관은 법정심리 시 증인의 증언, 서면자료, 감정의견, 피고인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상술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공소기관은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 피고인 유모씨(刘某)의 행위는 심각하며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등록상표 도용 죄로 형사책임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공동범죄를 행하는데 있어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종범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범죄 후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공소기관은 본 법원에 법에 근거해 판결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기소된 범죄사실과 범죄 성질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인 역시 공소기관의 기소의견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며,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형량을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기소에서 지정한 위조 화장품 판매액 78,783위안은 잘못되었으며, 78,515 위안이다. 2. 사건과 관련된 위조 상품은 현장에서 압수됨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가볍다. 3. 피고인은 종범이며 범죄에 가담한 시간이 짧고 그 역할도 미미하므로 형량을 감형하거나 혹은 처벌을 면해줘야 한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으므로 법에 의거해 형량을 감형 해줘야 한다. 5. 피고인은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참작하여 형량을 감형해줘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본 법원에 피고인에게 형량감형 혹은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심리결과 : 피고인 유모씨(刘某)가 장모씨(张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에게 고용되어, 2015년 5월부터 백운구 가화가 학태로87-89호 혜신공업구 F동 4층에서 임모씨(林某), 허모씨(许某)(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와 함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메이블린”, “MAXFACTOR” 등 등록상표의 마스크라, BB크림 등의 위조 화장품을 가공 및 생산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2015년 11월 10일,公安요원은 상기 주소지에서 유모씨(刘某), 임모씨(林某), 허모씨(许某)를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메이블린”, “MAXFACTOR” 등 등

룩상표의 마스크라, BB크림의 위조 상품 20,540개와 “欧某”, “완메이(完美)”, “메이지 MG(美即)”, “니베아” 등 등록상표의 각종 위조 화장품, 생산원재료, 생산기계, 매출전표를 압수하였다. 압수한 “메이블린”, “MAXFACTOR” 등 등록상표의 마스크라, BB크림의 위조 상품 20,540개는 78,783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5월부터 상기 압수한 마스크라, BB크림의 판매를 통해 10,947위안을 부당이득으로 취하였다.

상술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 대질을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였다 : 광동 대동 사법 회계검증사소에서 발급한 검증보고서, 증인 유모씨(廖某), 하모씨(何某)의 증언, 현장 사진, 압수수색 목록, 압수한 위조 화장품 사진, 생산기계 사진, 압수한 매출전표 사진, 상표등록 자료와 더불어 欧某(중국)유한공사, 광주 P&G유한공사, 광주메이지(MG)유한공사 등 피침해 기업이 제출한 상표등록증 등 관련된 증명 서류, 압수목록, 임모씨(林某), 허모씨(许某)의 진술과 출두 경위, 피고인 유모씨(刘某)의 진술.

본 법원은 유모씨(刘某)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유모씨(刘某)의 행위는 심각하며 그 행위는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된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유모씨(刘某)가 등록상표 도용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죄목이 성립되기에 기소하였다.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공동범죄를 행하는데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종범이기 때문에 형량을 감해야 한다.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범죄 후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기에 형량을 감해야 한다. 변호인은 해당 위조 상품 판매 수익이 78,515위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출전표 및 압수한 목록을 통해 계산한 결과, : “메이블린” 마스크라의 판매가는 개당 45위안으로 총 615개를 압수하였으며 총 27,675위안이다. “메이블린” BB크림의 판매가는 개당 48위안으로 총 496개를 압수하였으며 총 23,808위안이다. “MAXFACTOR” 마스크라 판매가는 개당 45.5위안으로 총 600개를 압수하였으며 총 27,300위안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화장품은 총 20,540개이며, 이는 모두 78,783위안이다. 이들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판매가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였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금액은 정확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상술 의견과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 외의 변호의견은 타당하기 때문에 본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형하기로 한다. 본 사건의 정황, 결과의 위해성 및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태도,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 제27조,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 및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1조, 제12조 및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2)〉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

피고인 유모씨(刘某)는 등록상표 도용 죄로 6개월의 유기징역과 3천위안의 벌금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5월 9일까지에 해당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둥성 광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 상소일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오운산(吴云山)
인민배심원 진 민(陈敏华)
인민배심원 광건흔(广健欣)

2016년 04월 14일
서기원 증페문(曾佩雯)

라. 백운구 동화가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5) 수운법형초자 제2528호

공소기관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종모씨(钟某),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호적지 산두시 조남구. 본 사건으로 2015년 6월 2일 구속되어 같은 날 형사 구금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제3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진표(陈彪), 광동 월통변호사사무소(广东粤通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호적지 산두시 조남구. 본 사건으로 2015년 6월 2일 구속되어 같은 날 형사 구금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제3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이대군(李待君), 광동 남방복서덕변호사사무소(广东南方福瑞德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호적지 산두시 조남구. 본 사건으로 2015년 6월 2일 구속되었으며 같은 날 형사 구금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제3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피고인 가모씨(柯某),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호적지 산두시 조남구. 본 사건으로 2015년 6월 2일 구속되어 같은 날 형사 구금되었으며, 2015년 7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수운검공소형소(2015)2482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종모씨, 황모씨1(黄某甲),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柯某)를 등록상표 도용 죄로 기소하였으며, 2015년 9월 23일 본 법원에 공소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의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주산천(朱山川)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종모씨

(钟某) 및 변호인 진표(陈彪),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및 변호인 이대군(李待君),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柯某)도 법정에 출두해 공소에 참석하였다. 현재 심리는 종결되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 2014년 말부터 피고인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은 백운구 동화가 운상로 취죽원 21동 4층(생산공장), 백운구 가화가 팽서화연공업구 2호 창고(보관장소), 백운구 흥발광장이기흥유대가 12호 화장품 매장(판매장소)에서 타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하여 생산 및 판매하였다. 종모씨(钟某)는 주로 생산공장에 원료 제공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황모씨1(黄某甲)은 주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모씨1(黄某甲)은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와 가모씨(柯某) 및 황모씨3(黄某丙/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을 고용하여 생산하도록 하였다. 2015년 6월 2일, 4 명의 피고인 및 황모씨3은 상술한 장소에서 체포되었으며, 해당 장소에서 “妮某”, “欧某” 등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 총 34,283개와 원료, 생산설비 1대를 압수했다. 압수한 상기 제품 중 “妮某”, “欧某”, “美某”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은 총 25,651개였으며 이들의 정품가치는 2,579,650위안에 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 사실에 근거해 공소기관은 피고인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柯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위 사안은 엄중하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등록상표 도용 죄로 형사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은 해당 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기에 주범이고, 황모씨2(黄某乙) 및 가모씨(柯某)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여 종범이기에 처벌을 감형 받아야 할 것을 본 법원에 요청하였다.

피고인 종모씨(钟某)는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과는 동업 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생산을 위탁한 것이며, 자신은 생산 공장과 무관할 뿐 아니라 “美某” 상품은 그곳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종모씨(钟某)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광주시 백운구 동화가 운상로 취죽원 21동 4층(생산공장)은 종모씨(钟某)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 종모씨(钟某)는 생산 공장의 책임을 맡고 있지 않다. 2. 실제 판매가격과 감정가격은 많은 차이가 나며, 실제 판매된 가격의 제품가로 불법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피고인 종모씨(钟某)는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대부분의 위조 화장품은 판매되지 않았기에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4. 피고인 종모씨(钟某)는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으로 범죄 전과가 없다. 변호인은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종모씨(钟某)의 형량을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단순히 고용주를 돕기 위하여 일을 한 것이며, 포장하는 제품이 위조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으며 가정생계가 어려우므로 형량을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변호하였다 :

1. 본 사건의 고용주는 종모씨(钟某)이며,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적은 월급을 받고 해당 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범죄 행위는 중대하지 않다.

2. 위조 화장품의 가격은 실제 판매가로 계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진술하였으며 초범으로 우발적 범행이다.

4. 위조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에 판매된 수량도 적으며 대부분의 위조 화장품은 현장에서 압수되었다. 변호인은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의 형량을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는 기소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는 뉘우치고 있고, 가정생계가 어려우므로 형량을 감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가모씨(柯某)는 기소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2014년 말부터 피고인 종모씨(钟某)는 백운구 동화가 운상로 취죽원 21동 4층(생산공장)에 원료를 제공하고 생산된 위조

화장품은 백운구 가화가 팽서화연공업구 2호 창고(보관장소)에 보관, 광주시 백운구 가화가 팽서화연 공업구 2호 창고 및 광주시 백운구 흥발광장 2기흥대가 12호 화장품 상점에서 판매했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해당 생산 공장에서 위조 화장품 생산 업무를 주로 맡았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피고인 황모씨2(黃某乙)와 가모씨(柯某) 및 황모씨3(黃某丁傑/별도 사안으로 기소됨)을 고용하여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2015년 6월 2일 4명의 피고인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해당 사건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동일 장소에서 “妮某”, “欧某” 등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 총 34,283개와 생산원료 및 생산설비 1대를 압수하였다.

해당 생산공장에서 피고인 종모씨(鍾某)는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에게 “妮某”, “欧某”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하여 5,155개를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모두 914,282위안의 가치에 상응한다. 해당 생산공장에서 압수한 “美某”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은 총 680개이며 이는 모두 80,920위안 가치에 상응한다. 해당 창고에서 압수한 妮某、欧某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은 총 17,584개이며 정품가치로 환산하면 1,513,456위안이다. 해당 화장품 상점에서 압수한 “妮某”, “欧某”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은 총 696개이며, 정품 가치로 환산하면 26,448위안이다.

상술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거, 반대신문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본 법원에서 확인한 증거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종모씨(鍾某), 황모씨1(黃某甲), 황모씨2(黃某乙), 가모씨(柯某)의 진술 및 증인 원모씨2(阮某乙), 진모씨(陳某), 양모씨(梁某)의 증언 및 관련자료, 현장사진, 수사기록, 장물사진, 검증의견, 보고기록, 압수목록, 피고인 종모씨(鍾某), 황모씨1(黃某甲), 황모씨2(黃某乙), 가모씨(柯某)의 신분증, 출두 경위.

피고인 종모씨(鍾某)와 변호인은 사건에 연관된 생산공장과 피고인이 관련없다는 주장과 변호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 종모씨(鍾某)는 “妮某”, “欧某” 브랜드의 원재료를 해당 생산공장에 제공하였음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모씨1(黃某甲)은 피고인 종모씨(鍾某)의 지시에 따라 생산한 것이며 피고인 종모씨(鍾某)가 위조 화장품의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압수물품 목록, 현장사진 등의 증거는 사건에 연관된 생산공장에서 압수한 위조 화장품이 피고인 종모씨(鍾某)가 생산한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종모씨(鍾某)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

은 본 법원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인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의 변호인이 해당 위조 화장품의 가치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변호 의견에 대하여, 법원은 현재 해당 위조 화장품에 가격표도 붙어있지 않고 실제 판매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피침해 상품의 시장 중간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시 백운구 가격인증증심은 시장 중간가격을 관련 상품의 감정 단가로 보는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법원은 피고인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다. .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자신은 고용주가 아니라는 해명과,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중범이라는 변호 의견에 대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생산에 대한 댓가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후 종모씨(钟某)를 도와 생산공장을 관리하고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가모씨(柯某)는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가 사장 종모씨(钟某)의 위탁을 받아 가공하였으며 황모씨1(黄某甲)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고,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는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는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가 사건과 관련된 생산공장의 책임자이며,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여 돈을 벌었다고 지목하였다.

증인 양모씨(梁某)는 생산공장의 월세는 평소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상술한 증거들을 볼때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이 본 사건에 있어 단순히 돕는 부차적인 역할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되었고,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 및 변호인의 변론의견은 본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본 법원은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柯某)가 국가법률을 위반하고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의 저명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위 사안은 엄중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柯某)가 등록상표 도용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기에 죄목이 성립된다고 기소하

였다. 피고인 종모씨(钟某), 황모씨1(黄某甲)는 본 사건에서 동일하게 주된 역할을 하였기에 주범이며,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는 본 사건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종범으로 형량이 감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 가모씨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상 참작하여 형량을 감한다. 본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기타 다른 변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하기로 한다.

본 사안의 정황,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태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 제26조제1항 4호, 제27조, 제72조, 제73조, 제52조, 제53조, 제64조 및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1조, 제12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2)〉 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다 :

1. 피고인 종모씨(钟某)는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므로 3년 4개월의 유기징역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5년 6월 2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에 해당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피고인 황모씨1(黄某甲)은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므로 3년 유기징역과 벌금 8만 위안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5년 6월 2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에 해당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3. 피고인 황모씨2(黄某乙)는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므로 8개월의 유기징역과 벌금 8천 위안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5년 6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에 해당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4. 피고인 가모씨(柯某)는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므로 8개월의 유기징역과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8천 위안을 선고한다.(집행유예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다음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5. 압수된 위조 화장품과 원재료, 생산설비 1대는 몰수한다(광주시 공안국에서 집행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둥성 광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역세교(易细姣)
인민배심원 채옥림(蔡玉林)
인민배심원 원오관(员吴冠)

2015년 11월 11일
서기원 우효효(尤晓晓)

마. 상해 푸둥

상해 푸둥 신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5) 포형(지)초자 제3호

공소기관 상해 푸둥신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남성, 1977년 6월 10일 출생, 한족, 출생지 절강성 원주시 문성현, 중졸(初中文化), 농민, 호적지 절강성 원주시, 현재 상해 푸둥 신구에 거주. 2001년 12월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황포분국으로부터 해당 위조상품은 몰수되어 소각되었으며, 1,000위안의 행정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2005년 10월 위조 상품을 판매한 죄로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황포분국으로부터 해당 위조상품은 몰수되었으며 10만 위안의 행정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2008년 5월 도박죄로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황포분국으로부터 구류 5일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본 사건으로 2014년 12월 6일 형사구금 되었으며, 현재는 상해시 푸둥신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육위강(陆卫钢), 상해시 호남변호사사무소(上海市沪南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안영매(颜迎梅), 여성, 1986년 9월 30일 출생, 한족, 출생지 강소성 흥화시, 중졸, 농민, 호적지 강소성 흥화시, 현재 상해시 푸둥 신구에 거주. 본 사건으로 2014년 12월 6일 형사구금 되었다가 2015년 3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호인 장만운(蒋万云), 상해 푸둥변호사사무소(上海浦虹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만모씨1(满某), 여성, 1992년 8월 30일 출생, 한족, 출생지 하남성 진평현, 중졸, 농민, 호적지 하남성 진평현, 현재상해시 푸둥 신구에 거주. 본 사건으로 2014년 12월 6일 형사구금되어 현재는 상해시 푸둥신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오추란(吴秋兰), 상해 국년변호사사무소(上海国年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만모씨2(满某), 남성, 1989년 8월 15일 출생, 한족, 출생지 하남성 진평현, 중졸, 호적지 하남성 진평현, 현재 상해시 푸둥 신구에 거주. 본 사건으로 2014년 12월 6일 형사구금 되어 현재는 상해시푸둥신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가요리(贾耀利), 상해 국년변호사사무소(上海国年律师事务所) 변호사.

상해시 푸둥 신구 인민검찰원은 호포금융형소 (2015) 444호에서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를 등록상표 도용 죄로 기소하여 2015년 6월 11일 본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본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상해시 푸둥 신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찰원 원염풍(员闫枫)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및 변호인 육위강(陆卫钢), 피고인 안영매(颜迎梅) 및 변호인 장만운(蒋万云), 피고인 만모씨1(满某某) 및 변호인 오추란(吴秋兰), 피고인 만모씨2(满某) 및 변호인 가요리(贾耀利)는 법정에 출두하였다. 공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리가 1회 연기되었으나 현재는 심리가 종결되었다.

상해시 푸둥 신구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소하였다. “L’OREAL”상표는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으로부터 등록받았으며, 지정상품은 제3류 화장품, 로션 등이고 현재 유효하다. 2014년 6월부터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는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상해시 푸둥 신구 고동진초고로 958호의 창고를 임대하여 위조품을 생산하였다.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화장품 원료를 구입하였으며 “L’OREAL” 상표 라벨, 포장 용기 및 라벨지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 등을 고용해 “L’OREAL” 위조 화장품을 만들게 하였으며, 화장품 원료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병에 주입하여 직접 포장,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9,090위안의 부당 판매액을 남겼다.

2014년 12월 5일 공안당국은 상기 생산공장에서 “L’OREAL” 위조 화장품 9,316개 및 대량의 반제품, 상표라벨, 라벨지, 펌프, 금박기계 등의 제조기구를 압수하였다. 상술한 “L’OREAL” 위조 화장품의 총 가치는 309,208위안으로 확인되었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소기관에서는 법정심리 시 상표등록 증명 자료, 화장품 갱신 인증서, 로레알주식유한공사의 위임장, 중국 로레알유한공사의 감정증명서류, 미승인 증명서류, 가격 증명, 공안기관의 기록, 압수결정서, 압수목록, 압수 현

장 사진, 증인 만모씨1(满某某) 및 도모씨의 증언, 상해시 푸둥 신구가격 인증중심의 가격감정서, 행정처벌결정서 3부, 과태료 납부 통지서, 행정처벌고지서, 납품 증명서, 사건 경위서, 상주 주민의 기본정보 및 피고인의 진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공소기관은 이에 따라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를 모방하였으며, 해당 사안은 엄중하기에 등록상표 도용 죄로 형사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및 안영매(颜迎梅)는 본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기에 주범이며, 피고인 만모씨1(满某某) 및 만모씨2(满某)는 본 범행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종범이기에 형량이 감형되어야 한다. 4 명의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형량이 감형되어야 한다고 공소기관은 주장하였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비록 위조한 로레알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 법정에서 모두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진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는 공소기관의 공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유일명(刘一明)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즉, 공안기관이 압수한 제품 중 남성 전용 영양크림,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오일컨트롤 3종 화장품만 해당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였다. 복합 주름 보습 로션, 포도씨 크림, 보습로션 3종은 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직접 배송하였으며 배송된 제품은 완제품이다(즉, 자신이 생산한 것이 아님을 주장). 압수한 라벨 등 물품 중, 포도씨 크림 포장 박스 및 사용설명서는 다른 곳에서 생산해서 보내온 것으로, 유일명(刘一明)은 주문하지 않았으며, 상품에 부착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성 주름 보습크림 라벨의 인쇄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또한 상품에 부착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조상품의 행정 처벌 결정서 등 관련 자료 2부에 대해서는 누구의 서명인지 확실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의 변호인은 공소기관의 죄목과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변론의견을 제출하였다 :

1.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자백하였다. 비록 법정에서의 자백과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지만 이는 기억력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감형하

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유일명(劉一明)은 가계생계 곤란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도 많지 않으며, 상표권자의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는 태도를 보이며, 죄를 뉘우치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3. 위조 화장품 판매의 행정처벌결정과 관련된 자료 2부는 유일명(劉一明)의 서명과 불일치한다. 따라서 본 판결의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안영매(顏迎梅)의 변호인은 공소기관의 죄목과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변론의견을 제시하였다 :

1. 안영매(顏迎梅)는 유일명(劉一明)으로 하여금 위조 상품을 생산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고, 피동적으로 본 범행에 가담하여 검찰에 사안이 송치된 후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였기에 주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정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사건과 관련된 금액은 25만원이 초과되었지만 이는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사건과 관련된 위조 화장품은 시장에 많이 유통되지 않았다.

3. 안영매(顏迎梅)의 가정생계는 어려우며, 1세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므로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위조 화장품 판매의 행정처벌결정과 관련된 자료 2부는 유일명(劉一明)의 서명과 불일치한다.

피고인 만모씨1(滿某某)의 변호인은 공소기관의 죄목과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변론의견을 제시하였다 :

1. 만모씨1(滿某某)는 주로 위조 화장품의 포장을 담당하였으며, 그 외의 제조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비록 제조를 담당하였으나 전체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나아가 매달 1,000위안에 불과한 생활비를 받았기에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만모씨1(滿某某)는 검찰에 사안이 넘겨진 후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였기에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만모씨1(滿某某)의 가정생계는 어려우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만모씨2(满某)의 변호인은 공소기관의 죄목과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변론의견을 제시하였다 :

1. 만모씨2(满某)는 중범이며 범행을 자백하였다.
2. 만모씨2(满某)는 임시로 일하였으며 상표의 부착과 코팅만 맡고 밀봉 및 그 이후의 판매는 관여하지 않았기에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지 않다.
3.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기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 또한 검찰에 사안이 넘겨진 후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에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리를 거쳐 밝혀진 결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1981년 7월 30일 L'OREAL회사의 제148647호 “L'OREAL”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해당 상표는 화장품 등의 상품분류 제3류에 등록되어 권리 존속기간은 2021년 7월 29일까지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는 부부관계이다. 2014년 6월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는 상해시 푸둥 친구 고동진초고로 958호의 창고를 임대하여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그곳에서 화장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유일명(刘一明)은 다른 곳으로부터 화장품 원료, “L'OREAL” 상표 라벨, 포장 용기, 라벨기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화장품 원료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 고용한 피고인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를 해당 창고에서 “L'OREAL”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유일명(刘一明)은 주로 원료구입, 화장품을 병에 주입하는 작업, 상품 판매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안영매(颜迎梅)는 직원들에게 생활비 지급과 가끔씩 상표를 부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만모씨1(满某某) 및 만모씨2(满某)는 병에 주입된 화장품에 라벨 부착, 포장을 담당했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이 생산한 “L'OREAL” 위조 화장품은 병당 30위안의 가격으로 본 사건과 무관한 도모씨에게 판매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 총 9,090위안 금액을 벌었다. 위 금액에는 L'OREAL의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100병, 남성 전용 영양크림 100병,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100병과 보습로션 3병이 판매된 금액이 포함되었다.

2014년 12월 5일 공안은 해당 창고에서 4명의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L’OREAL”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반제품, 라벨, 화장품 용기, 설명서 및 라벨기, 펌프, 금박기계 등의 제조기구를 발견하였다.

(1) “L’OREAL” 남성 전용 영양크림 6,150병 (이 중 840병은 용기에는 라벨이 미부착되었으나, 용기 뚜껑에는 라벨이 부착되었다),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2,912병,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686병 (이 중 230병은 뚜껑이 부착되지 않았다), 보습로션 370병 (이 중 82병은 뚜껑이 부착되지 않았다), 주름개선 보습로션 17병, 포도씨 보습 크림 21병 및 제품명이 불확실한 반제품 224병

(2) “L’OREAL” 남성 전용 영양크림에 상표가 부착된 917병,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에 상표가 부착된 4,578병 및 포장용기 722개, 남성 주름 방지 로션에 상표가 부착된 587병, 포도씨 보습 크림 포장용기 150개 및 설명서 500장, 외부 포장 바코드 스티커 115장, 화장품 병 용기 1,700개

(3) 외장필름 5,000장, 라벨기 1대, 펌프 2대, 금박기계 2대.

4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상표권자 대리인의 검증에 따르면 창고에서 찾아낸 “L’OREAL” 화장품은 위조 화장품임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L’OREAL”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전용 영양크림,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및 보습로션은 실제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303,540위안이다.

심리과정 중, 아래의 증거에 대해 확인하였다.

1. 공안의 수사기록, 압류결정서, 압류물품 목록, 압류 기록, 압류 현장 사진 및 압류물품사진으로 공안기관이 현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압류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2. 상표등록증, 화장품 갱신등록증, 로레알주식유한공사의 위임장, 로레알(중국)유한공사의 감정 증명서류, 미승인 증명서류, 가격 증명으로 관련 상표의 등록 현황 및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조 화장품 및 해당 위조 화장품의 시장가격이 입증되었다.

3. 증인 만모씨(满某某)의 증언, 임대계약 및 상해성봉물류유한공사의 영업허가증으로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및 안영매(颜迎梅)가 해당 창고를 임대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4. 증인 도모씨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이 위조 판매한

“L'OREAL”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전용 영양크림, 보습크림의 가격은 병당 30위안으로 확인되었다.

5. 상해시 푸둥 신구 가격인증증심에서 제출한 가격 감정서를 통해 “L'OREAL” 복합 주름 보습 로션, 포도씨 보습 크림 의 시장 중간가격이 입증되었다.

6.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 황포분국의 행정처벌결정서 2부 및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벌고지서, 과태료 납부통지서, 납품증명서, 상해시 공안국황포분국이 2005년 4월 7일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문기록 1부, 압수물품목록 1부를 통해 2001년 12월 11일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이 복민빌딩 11C-003호에서 중국 마스크팩 브랜드 켈츠리(可采)의 마스크팩을 위조판매하여 2001년 12월 12일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5년 4월 7일 상해시 공안국황포분국은 상기 언급한 복민빌딩 11C-003호에서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으로부터 SK II , SHISEIDO 등 브랜드의 화장품을 압수했으며, 유일명(刘一明)은 심문 과정에서 2000년경 형제 유모씨(刘某某)로부터 해당 복민빌딩 11C-003호를 인수하여 화장품 판매업무를 맡았으며, 2004년 6월 광둥 소재의 업체로부터 SK II , SHISEIDO 등 브랜드의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하였다. 본 사안으로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 황포분국은 유일명(刘一明)에게 2005년 10월 24일 행정처벌결정서를 내렸다.

7. 상해시 공안국황포분국 행정처벌결정서 1부를 통해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이 2008년 5월 도박 혐의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8. 사건 발생과 체포경위를 통해 4명의 피고인에 대해 사건의 상황이 확인되었다.

9. 상주 주민의 기본정보를 통해 4명의 피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었다.

10.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L'OREAL”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천진시에 거주하는 도모씨도 함께 판매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2014년 12월 5일 피고인들을 체포하여 확보한 진술을 통해 판매된 “L'OREAL” 위조 화장품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총 5개 종류로,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전용 영양크림”,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보습크림” 및 “재생크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화장품은 2014년 12월 6일 “L'OREAL”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생산한 것으로 피고 유일명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OLAY화장품을 판매대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4년 12월 26일 진술을 통해 주로 생산한 “L'OREAL” 위조 화장품 종류는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전용 영양크림”,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3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제품은 완제품으로 들어 오거나, 반제품으로 들어온 후 가공하였으나 제품의 질이 좋지 않기에 판매망을 찾지 못해 계속해서 보관되고 있었다. 생산된 “L’OREAL” 위조 화장품은 상기 언급한 남성 제품 3가지밖에 없으며, 그 외의 제품은 라벨 부착, 용기 포장, 설명서가 이미 갖춰진 완제품 상태로 들어왔기에 판매만 담당하였으며 이를 생산하지는 않았다고 2015년 7월 10일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안영매(顔迎梅), 만모씨1(滿某某), 만모씨2(滿某)는 “L’OREAL”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생산 및 판매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안영매(顔迎梅)는 피고인 유일명(劉一明)이 2005년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1) 유모씨(劉某某)에 의하면 2005년 복민빌딩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 공상기관 및 공안기관이 동 매장을 단속하면서 동생 유일명(劉一明)을 체포하였는데, 해당 매장은 유일명(劉一明)과 무관하다.

(2) 황모씨(黃某某) 및 유모씨(劉某某)는 임대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다.

(3) 유모씨(劉某某)의 개인사업허가증 1부는 2012년 8월 30일에 발행되었다.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술한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유일명(劉一明)이 체포되었을 때 해당 매장은 본인이 경영하고 있었으며, 그의 형 유모씨(劉某某)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며, 해당 사실은 2001년 행정처벌의 상황과 부합하기에 공소기관은 안영매(顔迎梅)가 제출한 해당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소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유일명(劉一明)이 2000년쯤 유모씨로부터 복민빌딩 11C-003 매장을 인수받아 화장품 판매를 해온 것으로 2005년 심문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유일명(劉一明)은 20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매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해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안영매(顔迎梅)가 제출한 증거는 단순히 유모씨(劉某某)가 해당 매장을

임대한 사실 및 개인사업허가증을 신청한 사실만을 입증하였는데, 이를 통해 위조 화장을 판매했던 행위가 유모씨(刘某某)의 범행이라고 증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본 법원은 안영매(颜迎梅)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

본 법원은 “L'OREAL”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으며 권리 존속기간이 유효하므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기에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의 위조 화장품 종류에 대한 해명의견에 대해서는 본 법원은 주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상황을 결합해 실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의 종류를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의 몇 차례의 진술을 통해 그가 생산한 위조 화장품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제품이었으나, 그러나 공안기관이 압수한 물품의 종류를 생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그는 몇번의 진술을 번복하다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품만 생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현장에서는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전용 영양크림,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포도씨 보습 크림, 보습크림 및 주름개선 보습로션 등 6개 종류의 제품을 발견하였다. 그중 주름개선 보습로션을 제외한 5개 종류의 제품은 반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한 제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생산한 적어도 해당 5개 종류의 제품은 본 사안과 관련된 상품으로 판단된다. 주름개선 보습로션은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이 그동안의 진술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생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에서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물품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완제품으로 들어와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진술은 번복되나 현장에서의 압수 정황은 피고인이 해당 제품을 위조생산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으므로, 본 법원에서는 4 명의 피고인이 남성 재생 8종 기능 화장품, 남성 전용 영양크림, 남성 오일컨트롤 제품, 포도씨 보습 크림, 보습크림 총 5개 종류의 제품을 위조생산하여 불법적으로 315,255위안의 이익을 얻었기에 해당 사안은 엄중하고 등록상표 도용 죄에 해당되기에 공소기관에서는 죄목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4명의 피고인은 공동범행이며, 그 중 피고인 유일명(刘一明) 및 안영매(颜迎梅)는 고용주로서 범죄행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주범이다. 다만 안영매(颜迎梅)는 화장품 원료 구입, 위조 화장품 판매 등의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및 라벨 부착 업무만 맡았으므로 유일명(刘一明)과 비교하였을 때 그 죄는 비교적 가벼우므로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는 유일명(刘一明)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유일명(刘一明)의 지시에 따라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고 고정 월급을 받았으므로 본 범행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종범이므로 감형하여야 한다. 피고인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는 사건 이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으므로 감형해야 한다. 비록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위조 화장품 종류에 대해 완전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감형해야 한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위조 화장품 판매죄로 두 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행정처벌결정서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유일명(刘一明)과 변호인의 변론의견에 대해서는 본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위조 화장품 판매죄로 인한 두 차례의 행정처벌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일명(刘一明)은 위조 화장품 판매행위를 또 저질렀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피고인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某), 만모씨2(满某)의 범행사실 및 죄를 닦우치는 태도로 보아 사건이 발생된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피고인 3 명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였다.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본 사안에 있어 주범이며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 법률, 시장경제질서의 규범, 지식재산권리 보호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범행 정황, 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죄를 닦우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67조제3항, 제72조, 제73조, 제53조제1항, 제64조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1조제2항1호, 제12조제

1항 및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2)〉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다 :

1. 피고인 유일명(刘一明)은 위조 화장품 판매죄로 3년 6개월의 유기징역과 벌금 9만 위안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을 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4년 12월 5일부터 2018년 6월 4일까지에 해당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피고인 안영매(颜迎梅)는 위조 화장품 판매죄로 3년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7만위안을 선고한다.(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 피고인 만모씨1(满某)는 위조 화장품 판매죄로 1년 6개월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1만위안을 선고한다.(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 피고인 만모씨2(满某)는 위조 화장품 판매죄로 1년 6개월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1만위안을 선고한다.(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5.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 추정한다.

6. 위조 화장품, 상표 라벨, 포장용기, 설명서, 제조기계는 압수한다.

피고인 안영매(颜迎梅), 만모씨1(满某), 만모씨2(满某)는 사회로 복귀하면 마땅히 법률을 준수하고 감독관리 절차에 따라 건전한 사회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법원 혹은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예홍하(倪红霞)
인민배심원 험국분(叶菊芬)
인민배심원 손보상(孙宝祥)

2015년 11월 17일
서기원 상청원(桑清圆)

바. LANEIGE, IOPE

광동성 광주시 여만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4) 수여법지형초자 제5호

공소 기관 광주시 여만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 남, 1982년 11월 23일 출생, 한족, 중졸, 호적지는 광동성 산둥시 조양구, 현재 광주시 백운구 거주.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2014년 5월 26일 구속되어 다음날 형사 구금되었으며. 2014년 7월 3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호인 정진무(郑镇茂), 광동월통변호사사무소(广东粤通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 여, 1983년 7월 8일 출생, 한족, 중졸, 호적지는 광동성 산둥시 조양구, 현재 광주시 백운구 거주.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2014년 5월 26일 구금되어 다음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호인 이금굉(李金宏), 광동월통변호사사무소(广东粤通律师事务所) 변호사.

광주시 여만구 인민검찰원은 수여검 공형소 (2014) 912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를 위조 상품 판매 죄로 기소했으며, 2014년 10월 16일에 본 법원에 공소 제기했다. 본 법원은 법에 근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여만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황소괴(黄小瑰)를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변호인 정진무(郑镇茂),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와 변호인 이금굉(李金宏)은 법정에 출두하였다. 본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광주시 여만구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다: 2014년 5월,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이 경영하는 광주시 백운구 공향로 이발국제 C구역 134호에서, “LANEIGE”와 “IOPE” 상표의 에어쿠션을 개당 22위안과 21위안의 가격으로 불법 판매하였다. 2014년 5월 26일,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은 광주시 여만구 장제가 15번문 앞에서, 타인에게 “LANEIGE”와 “IOPE” 상표의 에어쿠션을 건네줄 때, 현장에서 공안요원에게 붙잡혔다. 현장에서 “LANEIGE”상표의 에어쿠션 3,024통과 “IOPE”상표의 에어쿠

선 400통을 압수했다. 감정 결과, 이 상품들은 모두 위조 상품이며, 총 가치는 74,928 위안이었다. 같은 날,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도公安요원에게 체포되어 재판으로 넘겨졌다.

공소 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기소한 사실에 대해 증명하였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위조 상품 인지 명백히 알면서 공모하여 판매하였으며,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크고, 그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 214조의 규정에 위반되었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기에, 위조 상품 판매죄로 그 형사 책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소기관은 본 법원에게 법에 근거해 판결해주기를 요청했다.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공소기관이 위조 상품 판매죄로 기소한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으며 처벌을 감해주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론의견을 제출했다: 기소장에 열거된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죄명에 대한 성격 규정은 정확하다;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는 본안에서 도와주는 부차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는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고의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의 처벌을 감하고 집행 유예를 적용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재판을 거쳐 밝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4년 5월,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그들이 경영하는 광주시 백운구 공향로 이발국제 C구역 134호에서 “LANEIGE”와 “IOPE” 상표의 에어쿠션을 개당 22위안과 21위안에 불법으로 판매하였다. 2014년 5월 26일,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은 광주시 여만구 장제가 15번문 앞에서, 타인에게 “LANEIGE”와 “IOPE” 상표의 에어쿠션을 건네줄 때,公安요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公安요원은 현장에서 “LANEIGE”상표의 에어쿠션 3,024통과 “IOPE” 상표의 에어쿠션 400통을 압수했다. 감정 결과, 이 상품들은 모두 위조 상품이었으며, 총 가치는 74,928 위안이었다. 같은 날,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도公安요원에게 붙잡혀 재판으로 넘겨졌다.

상술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공개심리 시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공소기관은 입안결정서, 사건에 연루된 장물, 범죄에 사용된 공구 사진 및 현장 사진, 광주 뉴휘상품정보컨설팅유한공사(广州纽汇商品信息咨询有限公司)가 발급한 기업법인 사업자 등록증, 수권위임장, “LANEIGE”와 “IOPE” 상표 등록증, 기소장, 감정서, 증인 양모씨(杨某), 이모씨(李某), 진모씨(陈某), 여모씨(吕某)의 증언, 수사기록, 압류물품 목록, 영수증, 운송장, 물증 검사 업무 기록 파일 및 CD, 광주시 여만구 가격인증 중심 (2014) 579호 불수리통지서를 제출했고, 공간기관은 체포 과정, 해결 과정,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의 신분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본안에 대해 입증했고,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

본 법원은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은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명백히 위조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크고, 그 행위가 위조 상품 판매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처벌하기로 결정한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의 위조 상품 판매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하였고, 본 법원은 이에 동의한다.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해 처벌을 감형할 수 있다.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의 범죄 경위와 죄를 뉘우치는 태도에 근거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론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법원은 그 의견을 채택한다.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과 마모씨2(马某乙)는 공동범죄를 하면서 양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주객의 구분이 없고 이미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범죄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두 피고인은 미수범이며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는 중범이라는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본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4조, 제 25조, 제 52조, 제 53조, 제 72조, 제 73조 2항 및 3항, 제 64조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제 2조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1. 피고인 마모씨1(马某甲)는 위조 상품 판매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에 본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그 벌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피고인 마모씨2(马某乙)는 위조 상품 판매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에 본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그 벌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3. 본안과 관련해서 압수한 장물 및 범죄에 사용된 공구들(압류물품 목록 참조)은 몰수한다.(광주시 공안국 여만구 분국에서 집행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둥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요추평(廖秋平)
인민배심원 등개아(邓凯儿)
인민배심원 장소웅(蒋绍雄)

2014년 12월 3일
서기원 이시운(李诗云)
서기원 진인란(陈仁兰)

사. INNISFREE

강소성 서주시 중급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6) 소 03 형초 74호

공소 기관 강소성 서주시 인민검찰원.

피고인 조모씨(曹景亮), 남, 1991년 8월 21일 출생, 한족, 대학 졸업, 무직, 현재 산둥성 청도시 황도구 정가하 단지 36동 2단원 101호 거주, 호적지는 산둥성 은리현.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2016년 1월 21일 서주시 공안국 천산분국에 형사 구금되었다.

피고인 장모씨(张文利), 여, 1991년 9월 18일 출생, 한족, 대학 졸업, 무직, 호적지는 강소성 사흥현.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2016년 1월 8일 서주시 공안국 천산분국에 형사 구금되었다.

변호인 호건국(胡建国), 강소성등택변호사사무소(江苏腾泽律师事务所) 변호사.

변호인 왕툼(王闯), 강소성등택변호사사무소(江苏腾泽律师事务所) 변호사.

강소성 서주시 인민검찰원은 서검소 형소 (2016) 63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조모씨(曹景亮)와 장모씨(张文利)를 위조 상품 판매 죄로 기소하였다. 본 법원은 사건을 2016년 9월 1일 접수하였고, 법에 근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 2016년 10월19일과 12월 12일 공개 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였다. 서주시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왕정정(王晶晶)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조모씨(曹景亮)와 장모씨(张文利) 및 변호인도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에 참가하였다. 본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공소 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외국에 있는 가호(贾虎)와 이국군(李国军)(다른 사건으로 처리됨)에게 고용되어, 산둥성 청도시의 창고를 임대하고 인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아는 상황 하에, 가호(贾虎)가 광둥의 모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파우더, 마스크

카라, 립스틱과 “ETUDEHOUSE” 상표의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받았다. 피고인 장모씨(张文利)는 앞서 말한 상품이 위조 상품인 것을 명백히 아는 상황 하에, 위챗을 통해 화장품 주문을 받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인 조모씨(曹景亮)에게 주문내용을 전달했다.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가호(贾虎)로부터 받은 상품을 바로 위챗 구매자에게 발송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해온 금액만 820여만 위안이었다.

2016년 1월 7일, 피고인 장모씨(张文利)는 강소성 사흥현에서 공안 인민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으로 넘겨졌고; 2016년 1월 21일,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산둥성 청도시에서 공안 인민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으로 넘겨졌다.

2016년 1월 21일, 공안 인민경찰은 피고인 조모씨(曹景亮)가 임대한 청도시 황도구 란동교구 C구역 3동 1단원 201호를 수사했고,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19개, 파우더 536개, 립스틱 100개, 마스크라 5개를 압수했다.

2016년 1월 24일, 공안 인민경찰은 피고인 조모씨(曹景亮)가 임대한 청도시 황도구 벽해화원 제1창고를 수사했고,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8,985개, 파우더 39,060통, “ETUDEHOUSE”상표의 아이브로우 7개를 압수했다.

2016년 1월 17일과 1월 28일에 공안 인민경찰은 산둥성 동영시 호주로 성운물류회사와 청도시 황도구 오동원교구 제1창고를 수사했다. 해당 장소에서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1,095개, 파우더 28,832통, 립스틱 26,990개, 마스크라 53,216개, “ETUDEHOUSE” 상표의 아이브로우 12,480개, 리퀴드 아이라이너 26,208개; “innisfree” 상표의 립스틱 포장 박스 77,000개와 파우더 라벨지 50,000개, “ETUDEHOUSE” 상표의 리퀴드 아이라이너 포장박스 72,450개를 압수했다. 앞서 말한 상품들의 가치는 380여만 위안이었다.

공소 기관은 앞서 말한 사실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는 <중화

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 규정에 위반되며, 범죄사실이 매우 확실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등록 상표 도용 죄로 형사 책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죄를 인정했으며, 처벌을 감해주기를 요청했다.

피고인 장모씨(张文利)의 변호인은 장모씨(张文利)는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으며, 학생이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였기에, 처벌을 감해주기를 요청했다.

재판을 거쳐 밝혀진 결과: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외국에 있는 가호(贾虎)와 이국군(李国军)(다른 사건으로 처리됨)에게 고용되어, 산둥성 청도시의 창고를 임대하고 인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게 아는 상황 하에, 가호(贾虎)가 광동의 모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파우더, 마스크라, 립스틱과 “ETUDEHOUSE” 상표의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받았다. 피고인 장모씨(张文利)는 앞서 말한 상품이 위조 상품인 것을 명백히 아는 상황 하에, 위챗을 통해 화장품 주문을 받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인 조모씨(曹景亮)에게 주문을 넣었다.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가호(贾虎)로부터 받은 상품을 바로 위챗 구매자에게 발송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경영해온 금액만 820여만 위안이었다.

2016년 1월 21일,公安 인민경찰은 피고인 조모씨(曹景亮)가 임대한 청도시 황도구 란동교구 C구역 3동 1단원 201호를 수사했고,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19개, 파우더 536개, 립스틱 100개, 마스크라 5개를 압수했다.

2016년 1월 24일,公安 인민경찰은 피고인 조모씨(曹景亮)가 임대한 청도시 황도구 벽해화원 제1창고를 수사했고,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8,985개, 파우더 39,060통, “ETUDEHOUSE”상표의 아이브로우 7개를 압수했다.

2016년 1월 17일과 1월 28일에公安 인민경찰은 산둥성 동영시 호주로 성운물류회사와 청도시 황도구 오동원교구 제1창고를 수사했다. 해당 장소에서

“innisfree” 상표의 폼클렌징 1,095개, 파우더 28,832통, 립스틱 26,990개, 마스크라 53,216개, “ETUDEHOUSE” 상표의 아이브로우 12,480개, 리퀴드 아이라이너 26,208개; “innisfree” 상표의 립스틱 포장 박스 77,000개와 파우더 라벨지 50,000개, “ETUDEHOUSE” 상표의 리퀴드 아이라이너 포장박스 72,450개를 압수했다. 앞서 말한 상품들의 가치는 380여만 위안이었다.

2016년 1월 7일, 피고인 장모씨(张文利)는 강소성 사흥현에서 공안 인민경찰에게 불잡혀 재판으로 넘겨졌고; 2016년 1월 21일,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산둥성 청도시에서 공안 인민경찰에게 불잡혀 재판으로 넘겨졌다.

본 법원은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고, 그 경위가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는 등록 상표 도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장모씨(张文利)는 사리를 목적으로, 위조 상품 인지 알고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이 매우 크며, 그 행위는 위조 상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본 법원은 공소 기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며, 증거도 충분하기에 이를 인정한다. 두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처벌을 감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제 213조, 제 214조, 제 64조, 제 67조 제 3항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의 제 1조 제 2항, 제 2조 제 2항과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와 해석(2)>의 제 4조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1. 피고인 조모씨(曹景亮)는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4년, 벌금 700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6년 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에 해당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 피고인 장모씨(张文利)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4년,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

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6년 1월 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에 해당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 압수한 위조 상품들은 몰수하며, 피고인 장모씨(张文利)가 불법으로 챙긴 25만 위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는 공안 기관이 압류한 것으로,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강소성 고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안무소(颜茂苏)

대리심판원 이위범(李为帆)

대리심판원 왕월휘(王月辉)

2016년 12월 23일

서기원 고연(顾娟)

아. LANEIGE, HERA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5) 수운법지형초자 제17호

공소 기관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최모씨(崔某甲), 남, 출생지 산서성 예성현, 현재 산서성 예성현 거주. 본안으로 2014년 7월 16일 구속되어 같은 날 형사 구금 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백운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황예(黄锐), 광동합방변호사사무소(广东合邦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낙모씨(骆某), 남, 출생지 산서성 예성현, 현재 산서성 예성현 거주. 본안으로 2014년 7월 16일 구속되어 같은 날 형사 구금 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백운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사신용(谢燊勇), 광동합방변호사사무소(广东合邦律师事务所) 변호사.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수운검공소형소 (2014) 3097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를 등록 상표 도용 죄로 기소했으며, 2014년 12월 22일 본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법원은 일반법 절차를 적용했고, 법에 근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하혜연(夏慧娟)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 및 변호인 황예(黄锐)와 사신용(谢燊勇)도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에 참가하였다. 본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다: 2013년 5월 8일부터,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는 광주시 백운구 시내 한 장소(판결문 원문에는 백운구 모*등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음)를 공장과 창고로 쓰면서 “LANEIGE”, “PUPA” 등 등록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공장과 창고를 임대하고, 고용 인원들의 월급과 생산 및 관리를 책임졌으며,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이를 보조하였다. 2014년 7월 16일 10시경,公安 요원은 앞서

말한 장소에서 두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LANEIGE”, “PUPA”, “MAC”, “IOPE”, “HERA” 등 등록 상표의 화장품과 포장 박스 및 기계 2대를 압수했다. 감정 결과, 압수한 화장품 중 “LANEIGE” 상표의 에어쿠션 8,300통, “PUPA” 상표의 파우더 1,324개는 위조된 상품이었고, 그 가치는 2,908,281 위안이었다.

공소 기관은 앞서 말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면 자료, 물증, 현장 검증 자료, 신분 증명기록, 감정 의견서, 증인의 증언, 피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소 기관은 증거들에 근거해서,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가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고,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등록 상표 도용죄로 형사 책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공동범죄를 행하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공동범죄를 행하는데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조의 규정에 근거해 종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 법원에는 법에 근거해 판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의 변호인은 기소된 최모씨(崔某甲)의 범죄 사실과 죄명에는 이의가 없으며, 형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변론 의견을 제출했다: (1)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자수한 사실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公安 요원의 검문에서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公安 요원들의 심문에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알렸다. 그렇기에 자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다. (3)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일반적인 관리직이었으며, 전체적인 범행 과정 중 역할이 적었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사실상 유성(刘姓)사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으며, 유성(刘姓)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고, 생산된 위조 화장품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전혀 모른다. (4)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범행의 고의성이 적다. 그는 매달 월급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었고,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의 범행 행위는 손해를 끼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으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다. (5)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떠한

범행 전과가 없다. (6)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가정생계가 어려우며, 연로한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본 법원에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에게 감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낙모씨(骆某)의 변호인은 기소된 최모씨(崔某甲)의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1)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자수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도주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두해서는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생산한 상품이 위조 상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자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2)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범행 경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적고, 범행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적다.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공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길지 않고, 파우더 압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월급이 2,500위안이다; 피고인 낙모씨(骆某)의 문화 수준이 높지 않고, 법률지식도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위조 상품을 생산해온 범죄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사건과 관련된 상품들은 공안 기관이 이미 압수하여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고, 관련 상품들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중범이고, 단지 파우더 압축 작업만 전담했다. 에어쿠션 생산에 관계하지 않았고, 생산과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낙모씨(骆某)의 범죄 금액 계산 시 에어쿠션의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본 법원에 피고인 낙모씨(骆某)에게 가벼운 처벌 또는 3년 이하의 형량과 집행유예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을 걸쳐 밝혀진 결과: 2013년 5월 8일부터,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는 광주시 백운구 시내 한 장소(판결문 원문에는 백운구 모* 등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음)를 공장과 창고로 사용하면서 “LANEIGE”, “PUPA” 등 등록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공장과 창고를 임대하고, 고용 인원들에게 월급과 생산 및 관리를 책임졌으며,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파우더 압축 작업과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4년 7월 16일 10시경, 공안 요원은 앞서 말

한 장소에서 두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LANEIGE”, “PUPA”, “MAC”, “IOPE”, “HERA” 등 등록 상표의 화장품과 포장 박스 및 기계 2대를 압수했다. 감정 결과, 압수한 화장품 중 “LANEIGE” 상표의 에어쿠션 8,300통, “PUPA” 상표의 파우더 1,324통은 위조 상품이었고, 그 가치만 2,908,281 위안이었다.

법원은 이상 사실과 공개심리 및 반대신문을 거쳐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현장 검증 자료, 수사 기록, 현장 사진, 장물 사진, 생산 공구 사진,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가격, 감정 의견서, 사건 현장 임대 계약서, 상표등록증 및 감정보고서, 가격증명서 등, 광주시 공안국 백운구 분국의 압류결정서, 압류물품 목록,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의 출두한 경위 및 신분증 자료, 증인 최모씨1(崔某乙), 최모씨2(崔某丙), 우모씨(牛某), 잠모씨(岑某)의 증언 및 신분증 자료,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의 진술 및 해명자료.

피고인 낙모씨(骆某) 및 변호인은 피고인 낙모씨(骆某)가 공장에서 파우더 압축을 전담했고,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를 도와 생산과 관리를 하지 않았고, 에어쿠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가하면 안 된다는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결과, 증인 최모씨1(崔某乙)와 최모씨2(崔某丙), 우모씨(牛某)는 증언에서, 평소에 작업을 분배하는 사람은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骆某)이며, 낙모씨(骆某)는 공장에서 반장 역할과 파우더를 압축하는 일을 하는 남자라고 증언했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낙모씨(骆某)가 자신을 도와 공장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수사과정에서 최모씨(崔某甲)가 없을 때, 자신이 작업을 분배하긴 했으나, 자신은 관리 요원이 아닌 최모씨(崔某甲)의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낙모씨(骆某)가 공장에서 파우더를 압축하는 일과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를 도우는 업무를 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본안은 공동범죄이며, 공동범죄에서 부분행위는 전체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근거해,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본안의 범죄 전부의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법원은 피고인 낙모씨(骆某)와 변호인이 주장한 파우더에 대한 형사 책임만을 져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본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공동범죄 중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駱某)의 변호인이 제출한 두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있다는 변호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駱某)는 공안 요원이 관례적으로 등록 상표 도용 범죄 행위를 검문하는 도중, 범죄 현장에서 잡혔지만 자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 피고인은 본안이 재판으로 넘겨진 후, 자신들이 생산한 화장품이 위조 상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두 피고인은 법에 근거해 자수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변호 의견에 대해 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 법원은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駱某)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고,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는 등록 상표 도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駱某)의 등록 상표 도용 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하였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했고 주범이다. 피고인 낙모씨(駱某)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종범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가벼운 처벌 혹은 감형 되어야 한다는 낙모씨(駱某)의 변호인의 의견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본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인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정상 참작해 죄를 줄일 수 있다.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駱某)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변호 의견은 타당하며 본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본 법원은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와 낙모씨(駱某)의 범죄 행위의 성질과 경위, 결과 및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최모씨(崔某甲)에게 가벼운 처벌을, 피고인 낙모씨(駱某)에게 감형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 제 26조, 제 27조, 제 52조, 제 53조, 제 64조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1. 피고인 최모씨(崔某甲)는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3년3개

월, 벌금 9만 위안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4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5일까지에 해당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 피고인 낙모씨(骆某)는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7개월,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4년 7월 1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에 해당한다. 벌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 압수한 위조 화장품과 포장 박스들은 몰수한다. (광주시 공안국 백운구 분국에서 집행한다.)

4. 압수한 범행에 사용된 제조 기계 2대는 몰수한다. (광주시 공안국 백운구 분국에서 집행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둥성 광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황려나 (黄丽娜)
인민배심원 호사미 (胡丝媚)
인민배심원 광건흔 (广健欣)

2015년 1월 22일
서기원 용소신 (龙筱晨)

자. LANEIGE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5) 수운법지형초자 제3319호

공소 기관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현재 광동성 산두시 조양구에 거주.

변호인 방충곤(方忠坤), 광동금해변호사사무소(广东金解律师事务所) 변호사.

피고인 곽모씨2(郭某乙),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현재 광동성 산두시 조양구에 거주.

피고인 곽모씨3(郭某丙),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현재 광동성 산두시 조양구에 거주.

피고인 홍모씨(洪某), 출생지 광동성 산두시, 현재 광동성 산두시 조양구에 거주.

상기 4명의 피고인은 본안으로 2015년 8월 12일 구속되어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15년 9월 16일 체포되었다. 현재 광주시 제3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수운검공소형소 (2015) 3388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를 등록 상표 도용죄로 기소했으며, 2015년 12월 11일에 본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법원은 법에 근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주산천(朱山川)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과 변호인 방충곤(方忠坤), 피고인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도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에 참가하였다. 본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다: 2014년부터,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는 광주시 백운구 군화가 쌍화공업구 1동 아보 가죽공장 4층 공장(均禾街双和工业区一楼雅宝皮具厂四楼工场)에 자주 방문했다. 이들은 등록 상표권자의 위임과 허가 없이, “LANEIGE”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가공 생산했다.

또한 군화가 장밤신촌 3가 1호(均禾街长湓新村三街1号)와 군화가 취화서가 4길 2호 1층(均禾街聚和西街四巷2号一楼) 두 창고에 위조 화장품을 보관했다. 2015년 8월 12일, 인민경찰이 앞서 말한 공장과 창고에서 4명의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현장에서 4명의 피고인이 생산한 “LANEIGE”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감정 결과, 앞서 말한 위조 화장품의 가치는 3,526,660위안이었다. 기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소 기관은 서면 자료, 증인의 증언, 피고인 진술, 감정의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에 근거해 공소기관은 아래와 같이 본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는 등록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제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으며,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록 상표 도용 죄로 형사 책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相)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중범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는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줄 것을 본 법원에는 법에 근거해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은 공소 기관이 기소한 주요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으며,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가격이 비교적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중범이다; 사건과 관련된 상품은 아직 유통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작다;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가격이 비교적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곽모씨2(郭某乙)는 공소 기관이 기소한 주요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으며,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가격이 비교적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곽모씨3(郭某丙)은 공소 기관이 기소한 주요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으며,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가격이 비교적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홍모씨(洪某)는 공소 기관이 기소한 주요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으며,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가격이 비교적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걸쳐 밝혀진 결과: 2014년부터,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는 타인에게 고용되어 광주시 백운구 군화가 쌍화공업구 1동 아보 가죽공장 4층 공장(均禾街双和工业区一楼雅宝皮具厂四楼工场)에서, 등록 상표권자의 위임과 허가 없이, “LANEIGE”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가공 생산했다. 또한 군화가 장밤신촌 3가 1호(均禾街长湍新村三街1号)와 군화가 취화서가 4길 2호 1층(均禾街聚和西街四巷2号一楼) 두 창고에 위조 화장품을 보관했다. 2015년 8월 12일, 인민경찰이 앞서 말한 공장과 창고에서 4명의 피고인을 잡았고, 현장에서 4명의 피고인이 생산한 “LANEIGE”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감정 결과, 앞서 말한 위조 화장품의 가치는 3,526,660위안이었다.

법원은 이상 사실과 공개심리 및 반대신문을 거쳐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의 진술, 피해기업 대표자 양모씨(杨某某)의 진술, 증인 왕모씨(王某乙), 주모씨(周某乙)의 진술, 가격감정결정서, 압류물품 목록, 압류결정서, 상표등록증, 감정서, 현장 검증 자료, 수사 기록, 현장 사진, 가격 증명서, 임대 계약서, 상황 설명, 출두 경위, 사건에 관련된 장물 사진.

4명의 피고인들은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가격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위조 상품에 가격도 표기되지 않았고, 실제 판매 금액도 알 수 없으며, 침해 상품은 법에 근거해서 시장 중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 가격 감정 기관도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감정 단가를 법률 규정에 부합되게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감정가격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법원은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는 등록 상표권자의 위임과 허가 없이, 동일한 제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으며,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그 행위가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의 등록 상표 도용 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 곽모씨2(郭某乙), 곽모씨3(郭某丙), 홍모씨(洪某)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종범이다. 또한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변호 의견을 본 법원은 받아들인다. 본안의 범죄 행위의 성질과 경위, 결과 및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3조, 제 27조, 제 67조 제 3항, 제 52조, 제 53조, 제 64조, 제 72조, 제 73조와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 1조, 제 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1.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은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피고인 곽모씨1(郭某甲)로부터 압수한 5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2. 피고인 곽모씨2(郭某乙)는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피고인 곽모씨2(郭某乙)로부터 압수한 3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3. 피고인 곽모씨3(郭某丙)은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피고인 곽모씨3(郭某丙)으로부터 압수한 3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4. 피고인 홍모씨(洪某)는 등록 상표 도용 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7개월, 집

행유예 1년, 벌금 2천 위안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피고인 홍모씨(洪某)로부터 압수한 2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5. 압수한 범죄에 사용된 공구, 원료 및 “LANEIGE” 상표 위조 화장품은 몰수한다. (광주시 공안국에서 집행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동성 광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위 쟁 (魏 峥)
인민배심원 유계영 (刘桂英)
인민배심원 하려화 (何丽和)

2015년 12월 29일
서기원 진쇠기 (陈钊琦)

차. LANEIGE, HERA, IOPE, Sulwhasoo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6) 월 0111 형초 1375호

공소 기관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별명 “영가”, 호적지 광동성 산두시 조남구.

피고인 장모씨2(张某乙), 별명 “아지”, 호적지 광동성 산두시 조남구.

피고인 유모씨(刘某甲), 별명 “감충”, “대립”, 호적지 광동성 산두시 조남구.

피고인 채모씨(蔡某), 별명 “아도”, 호적지 광동성 산두시 조남구.

상기 4명의 피고인은 2016년 1월 7일 본안으로 구속되어 다음날 형사 구금 되었으며 현재 광주시 제3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수운검공소형소 (2016) 1257호 기소장으로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를 위조 상품 판매죄로 기소하였고, 2016년 5월 18일 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법에 근거해 합의 법정을 구성했고, 공개 재판으로 본안을 심리했다. 광주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은 소속 검사 황류형(黄留珩)을 법정에 출두시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도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에 참가하였다. 본안은 현재 심리가 종결되었다.

2015년 11월부터,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장모씨1(张某甲)이 임대한 광주시 **구 **가 **화원의 (판결문 원문에는 광주시 * 등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음) 뒷 건물과 앞 건물의 장소를 임대해 각각 창고와 상점으로 이용하여, HERA, IOPE, LANEIGE, Sulwhasoo, 黛莱美, 天使之魅 상표의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공소기관은 기소했다.

2016년 1월 7일 17시경,公安 요원은 앞서 말한 장소에서 4명의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앞서 말한 상표의 비비크림, 마스크팩, 아이크림 등 위조 화장품을 압류했다.

감정 결과, 앞서 말한 화장품들의 총 가치는 772875위안이었다. 앞서 말한 사실에 근거해, 공소 기관은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가 위조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도 매우 크며, 그 행위가 <중화 인민공화국 형법> 제 214조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조 상품 판매 죄로 형사 책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미수범이기 때문에, 기수범에 비해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은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했기에 주범이고, 피고인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종범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 되어야 한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사실대로 범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줄 것을 본 법원에 법에 근거해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은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은 부친이 폐암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가정을 위해서 형법을 어겼으며,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가벼운 처벌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장모씨2(张某乙)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벼운 처벌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유모씨(刘某甲)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채모씨(蔡某)는 기소된 사실과 죄명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가벼운 처벌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을 걸쳐 밝혀진 결과: 2015년 2월부터,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은 광주시 **구 **가 **화원의 (판결문 원문에는 광주시 * 등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음) 앞 건물의 장소를 임대해 상점으로 이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016년 11

월부터,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은 피고인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를 고용해서 앞서 말한 장소의 뒷 건물을 임대해 창고로 사용했고, HERA, IOPE, LANEIGE, Sulwhasoo, 黛莱美, 天使之魅의 위조 화장품을 판매했다. 2016년 1월 7일 17시경,公安 요원은 앞서 말한 장소에서 4명의 피고인을 잡았고, 앞서 말한 상표의 BB크림, 마스크팩, 아이크림 등 위조 화장품을 압류했다. 감정 결과, 앞서 말한 화장품들의 정품 가격 총 가치는 772,875위안이었다.

법원은 이상 사실과 공개심리 및 반대신문을 거쳐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의 진술, 증인 동모씨(董某乙), 진모씨(陈某乙)의 증언, 신분증 자료, 현장 사진, 현장 검증 기록, 수사 기록, 압수한 위조 상품 사진, 피침해 상표 권리자가 제출한 상표등록증, 감정보고서 및 위탁자료, 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 사건에 연루된 재산 가격 감정서 및 상세내역,公安 기관이 제출한 상황 설명, 압류물품 목록, 출두 경위.

본 법원은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위조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했고, 그 판매 금액이 크고, 그 행위가 위조 상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공소 기관은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가 위조 상품을 판매한 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미수범이기 때문에, 기수범에 비해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은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했기에 주범이고, 피고인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종범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 되어야 한다.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는 사실대로 범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안의 성질과 경위, 결과 및 피고인의 가정 상황, 회개하는 태도 등에 근거해, 피고인 장모씨1(张某甲), 장모씨2(张某乙), 유모씨(刘某甲), 채모씨(蔡某)에게 감형할 것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4조, 제 23조, 제 26조 제 1항, 제 27조, 제 67조 제 3항, 제 52조, 제 53조, 제 64조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1. 피고인 장모씨1(張某甲)은 위조 상품 판매 죄에 해당하며, 유기 징역 1년 2개월,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6년 1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에 해당한다. 피고인 장모씨1(張某甲)로부터 압수한 5만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2. 피고인 장모씨2(張某乙)는 위조 상품 판매죄에 해당하며, 유기 징역 6개월,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에 해당한다. 피고인 장모씨2(張某乙)로부터 압수한 3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3. 피고인 유모씨(劉某甲)는 위조 상품 판매죄에 해당하며, 유기 징역 6개월,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에 해당한다. 피고인 유모씨(劉某甲)로부터 압수한 3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4. 피고인 채모씨(蔡某)는 위조 상품 판매죄에 해당하며, 유기 징역 6개월,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일에 앞서 구금된 경우, 구금일은 형기일에 포함된다. 즉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에 해당한다. 피고인 채모씨(蔡某)로부터 압수한 3천 위안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벌금으로 환산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5. 압수한 위조 화장품(압류물품 목록 참조)은 몰수한다. (광주시 공안국에서 집행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서 혹은 광동성 광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면 된다. 서면으로 항소할 경우, 항소장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 판 장 위정정(魏晶晶)
인민배심원 유입평(刘立平)
인민배심원 부은하(付银霞)

2016년 6월 14일
서기원 방새경(方赛卿)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화장품편—

발행인 | 김 재 흥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7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연구기관 | GNL국제지적재산권경영연구소

ISBN 979-11-6097-381-5 (93320)
979-11-6097-382-2 (95320) (PDF)